

家譜 家牒 等 이 있다.

(一) 家 乘 家乘은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편찬된 始祖 로부터 시작하여 자기의 直系尊屬과 直系卑屬 에 이르기까지의 名諱字와 事蹟을 기록한 것 으로서, 譜牒을 편찬함에 있어 그 기본이 되 는 文獻이다.

어떠한 사람은 中始祖로부터 시작하기도 하 며, 또는 한 部分만을 기록하기도 하는데, 事蹟을 기록하는 그것을 傍書 또는 傍註라고 일컫는다.

(二) 派 譜 派譜는 始祖로부터 시작하여 어느 한 派屬만 을 名諱字와 事蹟(傍書)을 收錄한 譜牒이다.

(三) 世 譜 世譜는 宗派이상이 同譜(合譜)로 편찬되었 거나, 어느 한 派屬만이 收錄되었을 경우라도 派譜라는 文句를 피하기 위하여 世譜라고 表 現하는 수도 있으며, 世譜라는 말도 이와 같 은 것이다.

(四) 系 譜 系譜는 한 가문의 血統관계를 表示하기 위하 여 名諱字만을 系統的으로 나타낸 圖表로서, 宗族 전체가 收錄되었거나 어느 한 部分만이 表示되었다 할지라도 이는 系譜에 속하는 것 이다.

(五) 族 譜 族譜는 貫鄉의 근위로 같은 氏族의 世系를 收 錄한 譜牒으로서, 한 가문의 歷史를 表示하고 家系의 連續을 實證한 것이다. 또 族譜라는 말은 모든 譜牒의 代名詞같이 사용되기도 한 다.

(六) 大同譜 大同譜란 같은 鼻祖 밑의 中始祖마다 각각 다 른 派를 가지고 있는 氏族간에 同譜로 종합 편 찬된 族譜를 일컫는 것이니, 바꾸어 말하면 鼻祖가 같은 여러 宗族이 함께 통합해서 同譜 하였을 경우에 이를 大同譜라 한다.

(七) 家牒 家牒나 家牒이란 말은 그 편찬된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작자 집안에 所藏되어 있는 譜牒이란 말이다.

三、縱譜와 橫間譜

譜牒을 편찬하는 法式에 있어 크게 나뉘면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세상에서 傳譜라고 일컫는 縱譜인 것이요, 또 하나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橫間譜(間譜)인 것이다. 아직까지 橫書로 된 譜牒은 극히 稀少하며, 거의가 縱書 로 꾸며져 있는데, 傳譜는 대개 家乘에 그칠 뿐이며, 일반 적인 譜牒은 주로 橫間譜 방식에 의하여 꾸며졌다 하겠다.

그러나 때로는 傳譜식의 譜牒을 볼 수 있는데, 이는 傳譜 로 된 家乘을 그대로 종합 편찬한 것으로서, 편찬자가 橫間 譜式으로 정리하는 노고를 아짐으로써 열람자의 불편은 고 사하고, 寸수를 불간하기조차 힘을 뻔만 아니라, 印刷과 정 에 있어서도 애로가 적지 않다.

그리고 橫間譜 방식의 譜牒에 있어서 五代를 한 침(疊)으 로 하는 것이 예로부터 견해 내려오는 법시일 뿐만 아니라 代수를 계산하는데도 매우 편리하며, 열람자에게도 도움이 크기 때문에 紙面을 六間(段)式으로 취하는 것이 가장 이상

적이라 하겠다.

그러나 요즘에는 紙面의 절약에 이우로 七~八間式을 취한 譜牒을 가끔 보였으나, 이는 부장하기만 할 뿐이며, 실제로는 紙面도 크게 절약되지 않으므로 이는 피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四、譜牒의 術語

(一) 始祖와 鼻祖 始祖는 제일 初代의 先祖로서, 즉 첫번 째의 조상이며, 鼻祖는 始祖 이전의 先系 조 상자가 장 높은 사람을 일컫는 말인데, 始祖 이전의 先系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始祖를 정 중하게 表現하기 위해서 이를 鼻祖라고 말하 는 수도 있다.

(二) 中始祖 始祖 이후에 의뢰하였던 가문을 다시 일으킨 조상, 즉 의뢰한 가문을 中興시킨 조상을 中始 祖로 혹은(追尊)하는 것인데, 이는 宗中의 公孫(公孫)에 따라 設定하게 되는 것이며, 自 派 단위의 주장으로 成立되는 것은 아니다.

(三) 先系 先系라 함은 始祖 이전, 또는 中始祖 이전의 조상을 일컫는 말이다.

(四) 世系 世系란 始祖로부터 代代 이어가는 系統(血 統)의 차례를 말하는 것이다.

(五) 世와 代 世와 代의 차례대로 따져서 정하는 것이世이며, 자기를 뱀 나머지를 차례로 따 지는 것이代이다.

예컨대 父子의 사이가 세로는二世이지만

대로는一代이다. 始祖로부터 十四세가 되 는 사람은 始祖가 十三代이며, 始祖에게는 十三代孫에 該當하는 것이다.

(六) 先代와 末孫 先代란 말은 조상의 여러 代를 통 려 일컫는 말이나, 譜牒에 있어서의 先代라 함은 始祖 이후 上系の 조상을 총괄적으로 말 하는 것인데, 이를 先系라고 일컫는 사람이 더러 있는 듯하나, 이는 잘못이다.

그리고 先代라는 말에 반(反)하여 後代 즉 下系의 子孫들을 末孫이라고 하며, 이들에 대 한 譜牒의 부본을 孫錄이라 한다.

(七) 卍字와 諱字 卍字란 韓國사람의 이름은 대개 戶籍 名 하나로써 모든 것에 통용하고 있으나, 우 리 나라의 예전 풍습에 의하면 人名을 삼퍼보면 어렸을 때에 부르는 兒名, 그리고 冠禮를 거 행하면 冠名 즉 字, 다음에는 諱에 응하는 行名(항명) 그 밖에 따로 행세하는 別號等 이 있다.

그런데 冠名(字)은 冠禮(成年式) 때에 미리 實(主權者)을 選定하여 예식의 주체를 전라하 면 주례자는 예식을 지배함과 아울러 字를 지 어주는 것이다. 그 예를 들면 字를 記述하면 다음과 같 은다. 兒名: 孝孫, 冠名(字): 丕禮, 行名: 鴻根, 別號: 荀軒·樂天

그리고 웃이른의 名字를 말할 때에 생존한 분에 대하여는 卽字(당자)라고 하며, 이미 작고한 분의 대하여는 諱字라고 하니와, 名字를 보를 때에도 웃이른의 名字의 대하여는 卽字이건 諱字이건 글자 사이마다 「字」字를 넣어 부르거나, 글자를 붙여 읽어서 말하는도 한다.

例.. 舜龍, 舜字龍字, 尊翁(尊翁)字尊, 尊字은리가 다른 사람을 높여서 존대할 경우에는 아부氏, 아부先生 혹은 尊翁 尊翁의 尊稱語를 쓰는데, 이는 그 경위를 따라서 쓰이는 것이 다음과 같이 각각 다르다.

先生.. 姓 姓名 또는 雅號 밑에 붙인다.
公.. 男子의 姓 雅號 諡號 또는 官爵 밑에 붙인다.
翁.. 男子 老人의 姓 또는 姓名 밑에 붙인다
大.. 男子의 職 卽이나 雅號 밑에 붙여서 이른이란 뜻을 나타내는 말인데, 老人大 尊大 兄弟 등으로도 쓰인다.

(八) 行列(행렬)은 같은 血族 사이에 世系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이는 門中의 禮法의 하나이다.
行列字(들림字)는 가문마다 각각 달라서 甲乙丙丁의 十干順에 의하여 정한 가문도 있고

子丑寅卯의 十二支順으로 정한 가문도 있고(子丑寅卯의 數字順으로 정한 가문도 있으나, 金木水火土의 五行順에 따라 시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行列字를 몰라서 이에 따르지 못한 사람은 말할 바 못되거니와 行列字를 변연의 알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제각기 마음대로 이름을 짓는 일이 적지 않은데 이는 門中의 禮法을 어겼음은 물론이며, 가문의 正統을 문란케 하는 亂宗행위이니라, 자신을 위해서도 좋지 않은 일이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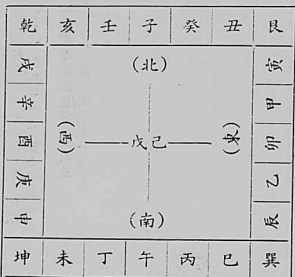
만약 行列字를 떠나서 이름을 짓게 되면, 첫째로 世代를 분간하기 어렵고, 둘째로 門中의 禮法을 배반하고 독자적(獨自的)인 행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를 대하는 사람들의 禮상 그의 신의(信義)를 정하게 되며, 셋째로 門中의 禮法이 없는 가문의 子孫으로 인식하게 되기 때문에, 자신의 발전과 영달(榮達)을 위하여 매우 不利하므로 行列字를 벗어난 作名은 필히 삼가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 하겠다.

(九) 生 卒 禮法에는 生·卒을 반드시 기록하게 마련인데, 生은 出生을 말하는 것이요, 卒은 死亡을 말하는 것이며, 弱冠(二十歲) 이전에 死亡하게 되면 夭折(早死)이라 하여 「早夭」로 표시하고 말거니와, 七十歲 未滿에 死亡하게 되면 享年

(十) 配 匹 配匹이라 함은 公 配位(配偶者)를 말하는 것인데, 그 표시는 「配」字만을 기록한다. 그의 생존한 配位에 있어서는 室人이란 「室」字를 기록하며, 死後에 있어서는 「配」字를 표시하는 門中도 있다.

(十一) 墓 所 墓所란 墳墓의 소재지를 말하는 것인데, 譜牒에는 「墓」字만을 기록하고, 반드시 坐向(方位)과 石物(表石, 床石, 將軍石, 碑石 등)의 있는 경유에 이를 표시하며, 그리고 合葬의 與否(附合葬 雙墳 등)도 기록한다.

「方位圖」



(十二) 墓碑의 碑銘 墓碑라 함은 죽은 사람의 事蹟을 새겨서 墓앞에 세우는 碑石의 總稱이며, 碑銘이란 碑에 새긴 글로서, 이를 銘文 또는 碑文이라고

도 하는데, 죽은 사람의 姓名 原籍 性行 經歷 등의 事蹟을 詩賦의 形式으로 韻文을 붙여 叙述한 것이다.

(十三) 神道碑와 墓碣 神道碑는 從二品以上 官員의 墳墓가 있는 近處路邊에 세우는 碑石으로서, 특히 碑銘은 通政大夫(堂上官)以上の 벼슬을 지낸 사람이 撰述하게 마련이다. 그리고 墓碣은 正三品이하의 벼슬을 지낸 이는 墓앞에 세우는 것인데, 事蹟을 正三品가 神道碑와 같이, 제재와 규모가 작고 碑文의 體가 다르다.

(十四) 墓表와 墓誌 墓表를 보통 表石이라고 하는데 죽은 사람의 官職 名號를 前面에 새기고 後面에는 事蹟을 叙述하여 새기는데, 이後面에 새긴 글을 陰記라고 하며, 表石에는 韻文을 쓰지 않는다. 그리고 墓誌는 誌石이라고도 하는데, 죽은 사람의 原籍 姓名 事蹟 등을 돌에 새기거나 陶板에 새겨서 그 돌앞에 붙이는 것이다.

歷代王朝の王系 (韓國史大系別 依據)

檀君 (諱王儉 都平壤 唐藏京 今文化) 紀元及辰 (唐堯二十五年) 傳世四十七 歷年十四十八

箕子 (姓子諱齊餘 都平壤 紀元己卯 周武王元年) 傳世四十一 歷年九百二十九

衛滿朝鮮

衛滿王 (B.C.一九四?) — 右渠王 (?B.C.一〇〇)

夫餘

解慕漱 (B.C.五九?) — 夫妻王 — 金蛙王 (B.C.三七頃) — 帶素王 (?A.D.二二) — 始王 (A.D.三一頃) — 尉仇台王

□ (A.D.二二?) (曷思王)

簡位居王 (二四四頃) — 麻余王 — 依慮王 (?二八五) — 依羅王 (二八六?) — 玄王 (三四六頃)

餘蔚氏 (三八四頃) — 屏王 (?四九四)

駕洛 金官加耶

(金氏)

①首露王 (四二?一九九) — ②居登王 (一九九?二五三) — ③麻品王 (二五三?二九一) (馬品) — ④居叱彌王 (二九一?三四五) (今勿) — ⑤伊品王 (三四五?四〇七) (伊品)

⑥坐知王 (四〇七?四二二) (金叱) — ⑦吹希王 (四二二?四五二) (叱嘉) — ⑧銓知王 (四五二?四九二) (金銓) — ⑨鉗知王 (四九二?五二二) (金鉗) — ⑩仇衡王 (五二二?五六二) (仇亥·仇次休)

世宗 — 茂得 — 茂力 — 舒玄 — 庾信

大伽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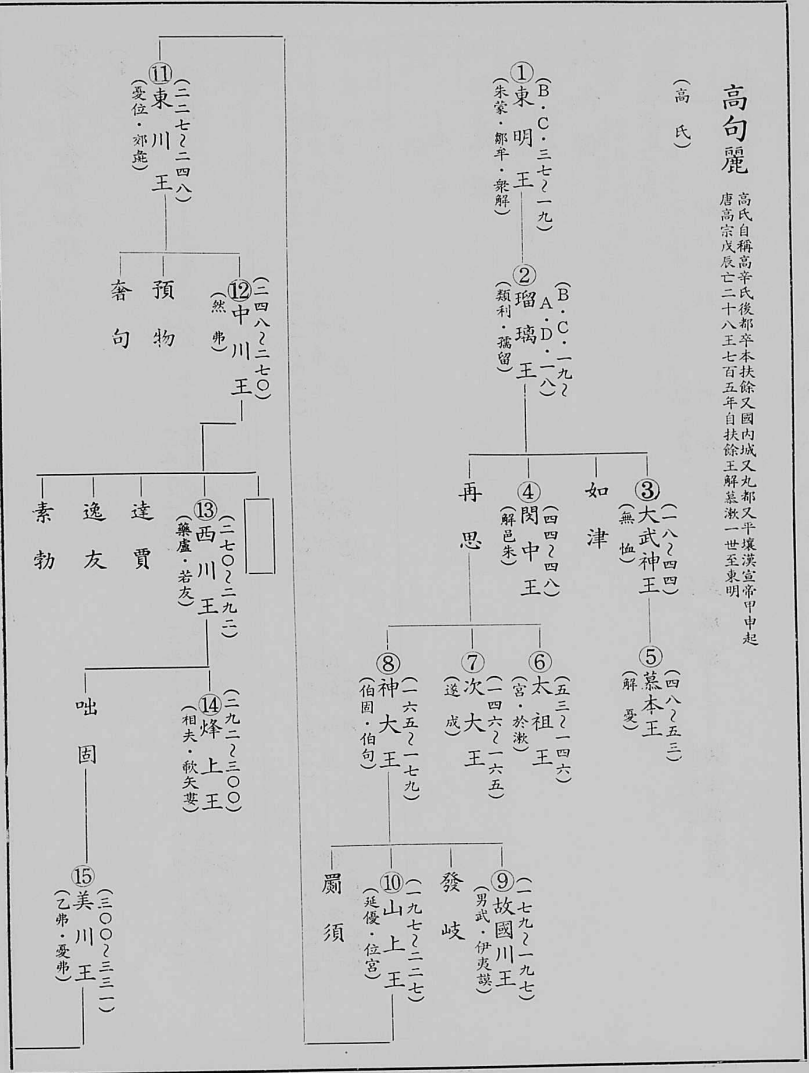
夷毗訶之 (天神)

正見母主 (山神) (備案朱日) — 伊珍阿鼓 (A.D.四二?) (內珍朱智) — 荷知王 (四七九頃) — 異腦王 (五二二頃) — 道設智王 (?五六二)

高句麗

高氏自稱高辛氏後都卒本扶餘又國內城又九都又平壤漢宣帝中起
唐高宗及辰亡二十八王七百五十五年自扶餘王解蓋一世至東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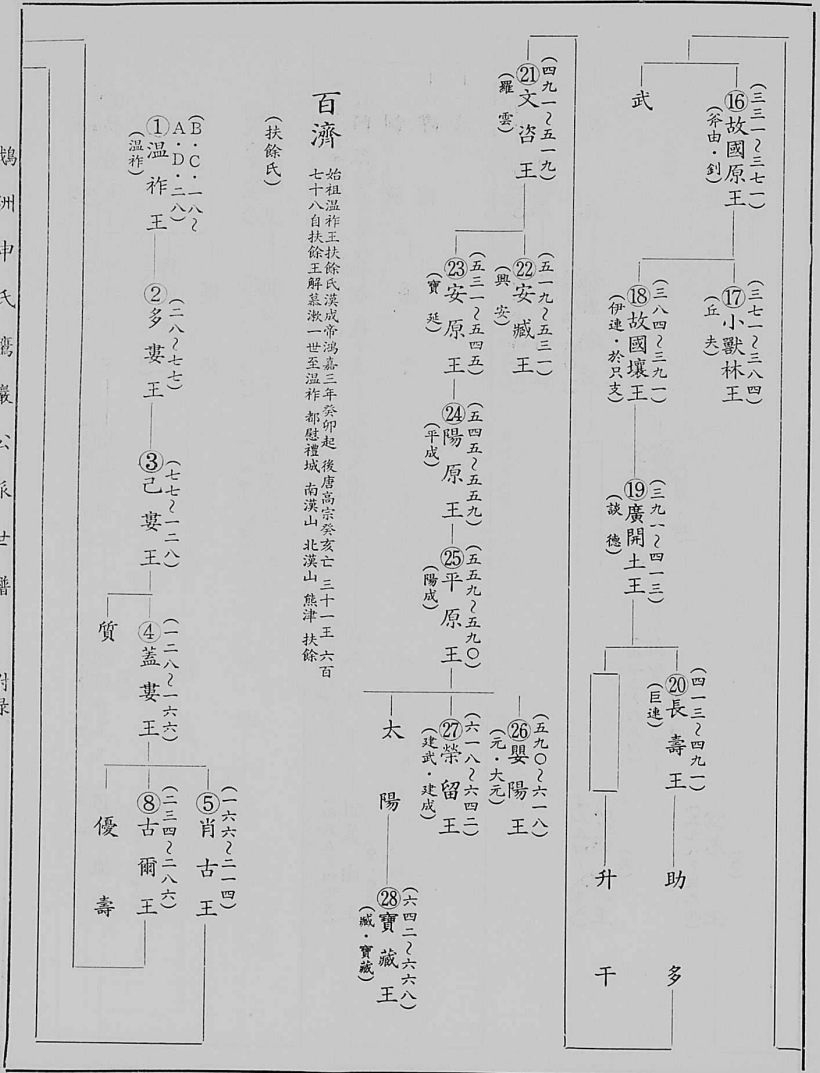
(高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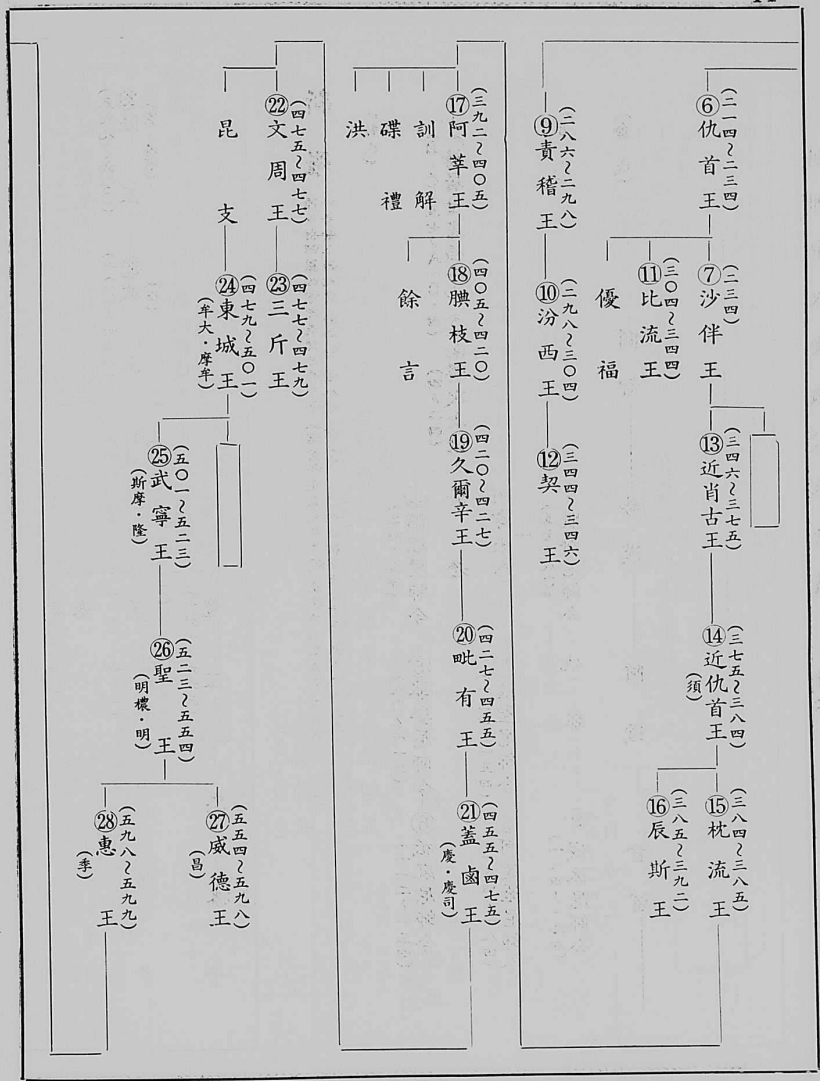


百濟

始祖溫祚王扶餘氏漢成帝鴻嘉三年癸卯起後唐高宗癸亥亡三十一王六百
七十八自扶餘王解蓋一世至溫祚都慰禮城南漢山北漢山熊津扶餘

(扶餘氏)





新羅

德日新羅國四方之載紀元年甲子(漢宣帝五鳳元年)起後唐高祖王乙未亡都慶州
朴昔金三姓相傳朴十世昔八世金三十八世初說斯盧五十六王九百九十二年

(朴氏)

①(赫居世居西干) ②南解次次雄

③儒理尼師今 ④脱解尼師今 ⑤婆娑尼師今 ⑥祇麻尼師今 ⑦逸聖尼師今 ⑧阿達羅尼師今

(昔氏) ④脱解尼師今 仇 鄒 ⑨伐休尼師今
(金氏) 關 智 勢 漢 阿 道 首 留

29 法王 (五九九~六〇〇)
(宣·孝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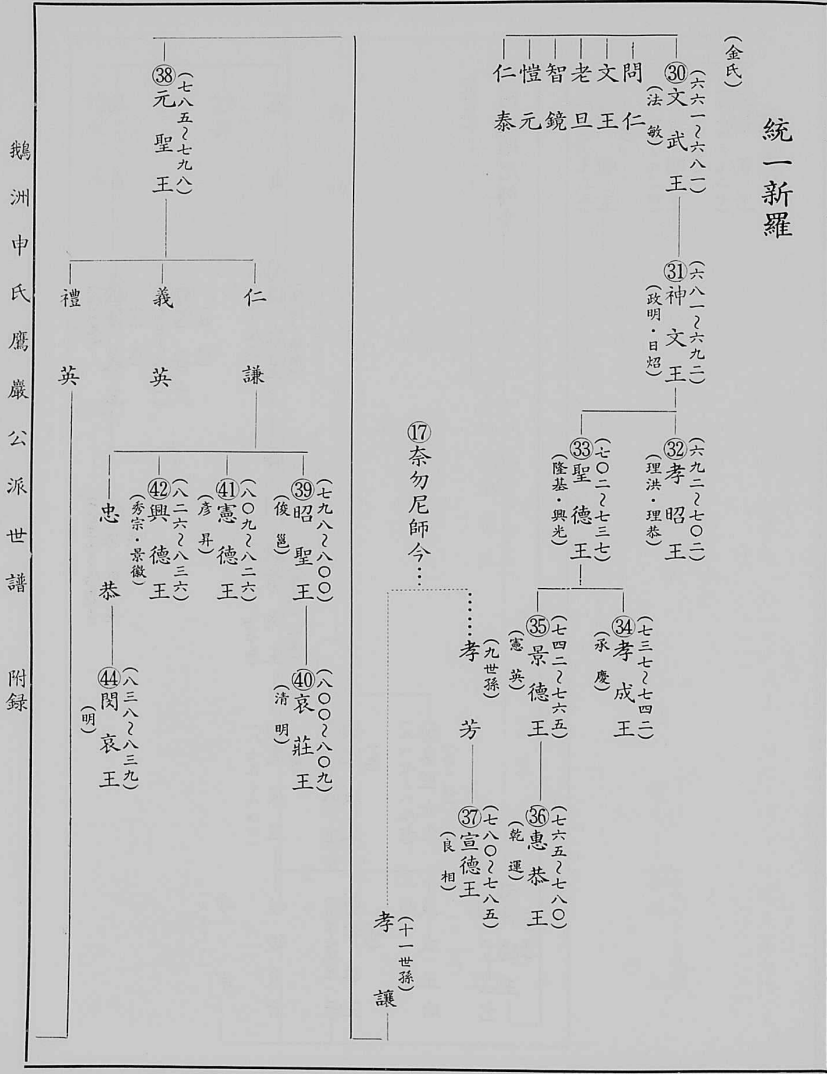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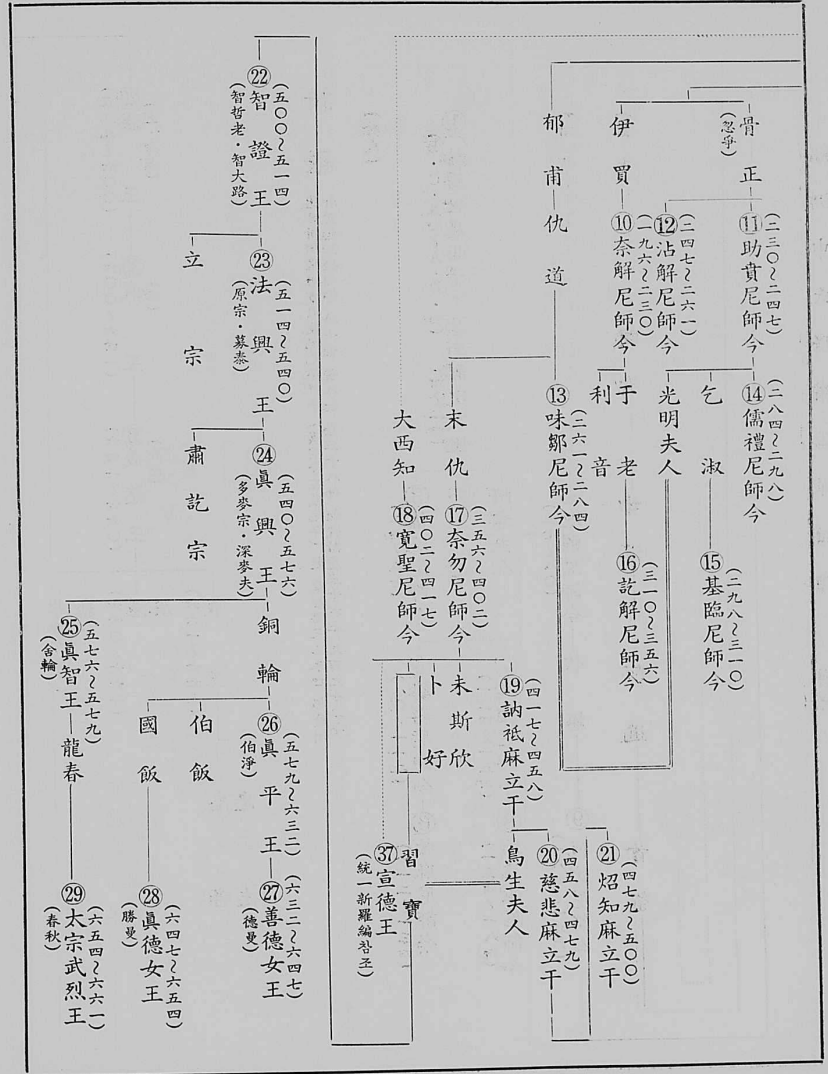
30 武王 (六〇〇~六四二)
(稷)

31 義慈王 (六四二~六六〇)
(義慈)

孝(太子) 泰 隆 演 豐 王 (六六一~六六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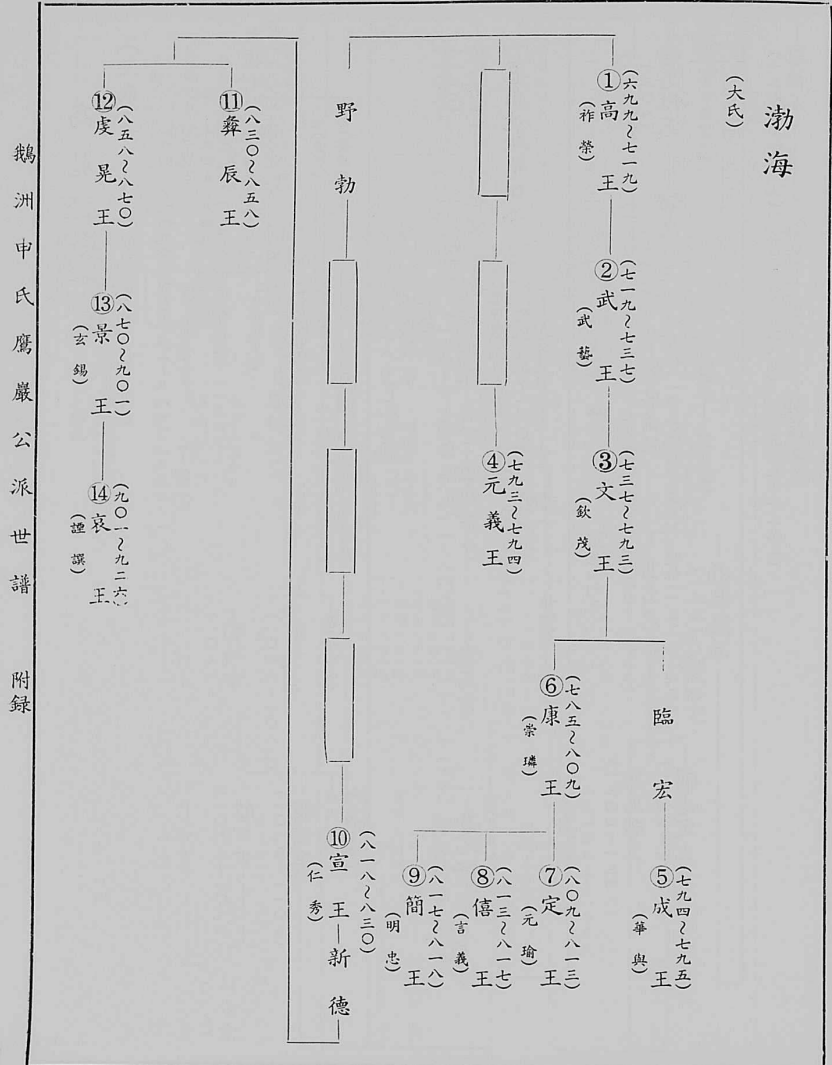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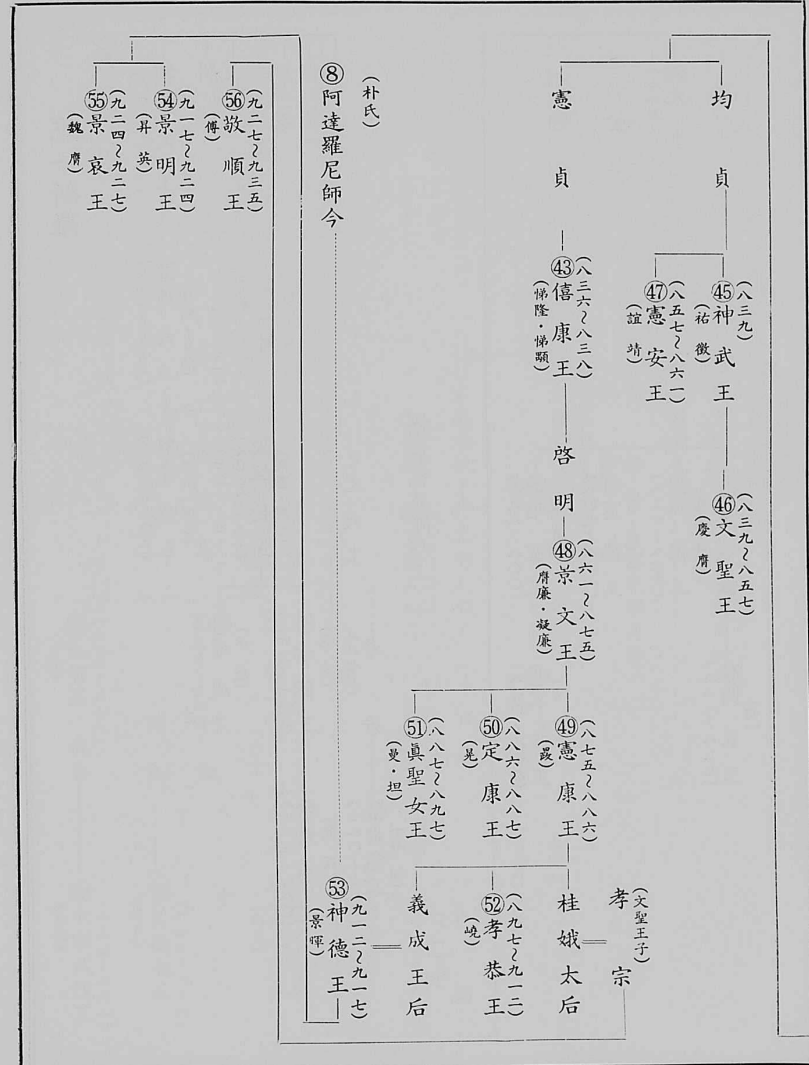
忠 忠 志 勝

鵝洲申氏鷹巖公派世譜 附錄



鵝洲中氏鷹巖公派世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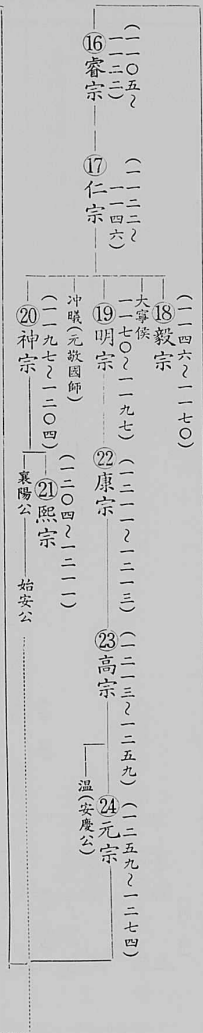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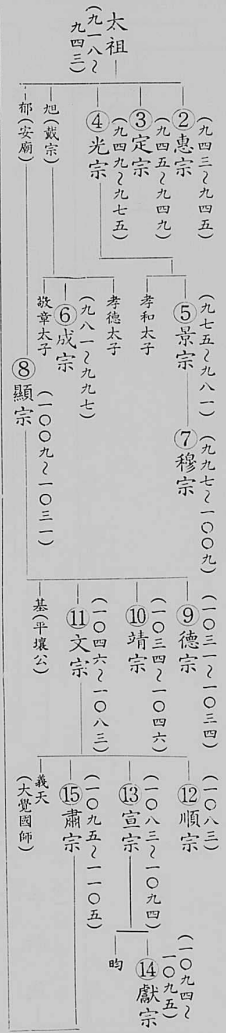
附錄



高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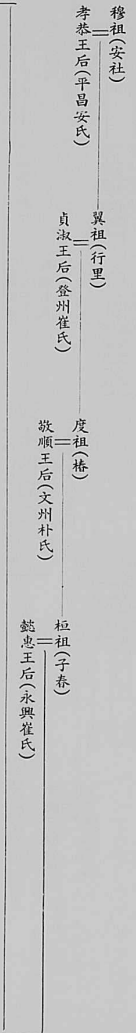
九一八年?一九二二年
三十四代 四七五年

(王氏)



朝鮮

一三九二年?一九一〇年
二十七代 五一九九年



鵝洲申氏鷹巖公派世譜 附錄

官職解說

1、門蔭과 薦舉

문음(門蔭)은 글자 그대로 門閥과 蔭德으로 비유하는 것인데, 높은 官職者나 名臣·功臣·儒賢·戰亡者·清白吏 등의 자손들이 科擧를 거치지 않고 官職에 任用하는 制度를 말한다. 또 薦거(薦舉)는 士林중에서 學行이 뛰어나고 德望이 높으면 在野人士를 現職 高官이나 地方官의 候補으로 비유하여 拔擢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門蔭과 薦舉를 아울러서 蔭任·蔭職 또는 南行이라 일컬었다.

2、文班의 内外職

文班의 경우, 비유자리는 크게 内職과 外職으로 區分된다. 内職은 중앙기관아의 비유인 京官職을 말하고, 外職은 觀察使·府尹·牧使·府使·郡守·縣令·判官·縣監·察訪 등 지방관직을 말한다. 内職者에서도 玉堂과 臺諫 비유 등으로 여겼는데, 玉堂이란 弘文館의 별칭으로서, 副提學 이하 應教·校理·副校理·修撰 등을 말하고, 臺諫은 司憲府와 司諫院의 관직으로서 司憲府의 大司憲·執義·掌令·持平·監察과 司諫院의 大司諫·司諫·獻納·正言 등을 가리킨다. 弘文館·司憲府·司諫院을 三司라 했는데, 三司의 관원은 학식과 人望이 두루인 사람으로 任命하는 것이 通例였

으므로 三司의 직위는 흔히 清要職이라 하여 名譽스럽게 여겼다. 따라서 三司는 士林세력의 중심이 되기가 일찍여서 조정의 敎臣들과 자주 壓力을 일으키므로 黨爭을 격화시키는 原因을 이룬다는 등, 逆機能을 빚기도 했다.

3、湖 堂

族譜를 보면 높은 벼슬을 지낸 文臣중에는 「湖堂」을 거친 자가 많이 눈에 드는데, 湖堂이란 讀書堂의 별칭으로서 世宗 때 崔沔 有能한 文臣을 뽑아 이들에게 恩暇를 주어 讀書(공부)에 專念하게 한데서 비롯된 制度인데, 이를 「賜暇讀書」라고 하여 文臣의 명예로 여겼으며 出世길도 빨랐다.

4、文 衡

文科를 거친 文臣이라든 만든지 湖堂出身이라야만 文衡에 오를 수 있는 資格이 주어졌다. 文衡이란 大提學의 별칭인데, 文衡의 稱號를 얻으려면 弘文館大提學과 藝文館大提學, 그리고 成均館의 大司成 또는 知成均館事를 兼職해야 했다. 文衡은 이들 三館의 最高 責任者로서 官界界公식의 代表하는 職임으로 더 할 수 없는 榮譽로 여겼고 品階는 비록 判書級인 正二品이 었지만 名譽로는 三公(領議政·左議政·右議政)이나 六卿(六曹判書)보다 높기로 했다. 歷史上 여러 벼슬에서 最年少 기록을 세운 이는 漢陰李德馨인데, 그는 二〇세에 文科에 올라 二三세에 湖堂에 들었고

三二세에 文衡이 되었으며 三八세에 벌써 右議政이 되어 四二세에 領議政에 이르렀었다.

5、銓 曹

요즘에도 行政府의 각 部에 序列이 있듯이, 六曹中에서 文官의 人事銓衡을 맡은 吏曹과 武官의 人事銓衡을 맡은 兵曹을 銓曹라 하여 가장 重要하게 여겼다. 그래서 吏曹과 兵曹의 官員은 相避라 하여 親戚이나 姻戚되는 사람이 함께 銓曹에 비유하는 것을 막았다. 이를테면 明宗때에 申光漢이 兵曹判書가 되고 宋駙壽가 吏曹判書가 되었는데, 서로 혼인 관계가 있다하여 申光漢을 申瑛으로 고쳐냈다. 또 肅宗때에는 洪命夏가 吏曹判書로 있을 때 洪重普가 兵曹判書가 되었는데, 洪重普는 洪命夏의 형命考의 아들이므로 臺諫이 異議를提起하여 兵曹判書를 免 사람으로 바꾸었다. 또 政宗은 兵曹判書를 免직할 수 없는 것이 原則이었는데, 朴元宗·柳成龍·朴淳·金錫曹 등이 例外로 兼職했다. 兵曹는 軍政一切를 맡아 相當히 權限이 컸으나, 明宗때 備邊司가 常設되면서 壬亂後로는 備邊司가 軍政을 管掌하여 兵曹의 權限은 弱화 되었다.

6、吏曹正郎·佐郎의 權限

吏曹에서 正郎(정五品)과 佐郎(정六品)이 人事行政의 實務 起業者로서 權限이 컸는데, 이들을 銓郎이라 일컫는다. 銓郎은 三司官員中에서 名望이 특출한 사람으로 任

命했는데, 이들의 任免은 吏曹判書도 干與하지 못했고 銓郎自身이 後任者를 推薦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銓郎을 지낸 사람은 特別한 過誤가 없는 한 大體로 宰相에까지 오를 수 있는 길이 트이게 마련이었다. 宣祖때 沈義謙과 金孝元이 이 銓郎職을 들러싸고 다툰 것이 東人·西人의 分黨을 가져온 直接的인 導火線이 되었던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7、階·司·職과 行守法

官職의 正式名稱은 階·司·職의 順序로 되어 있는데, 이를테면 領議政(職)이다. 階는 곧 品階요, 司는 所屬 官廳이며 職은 位階를 가리킨다. 그런데 「行守法」이라는 것이 있어서 品階가 높으면서 官職이 낮은 경우(階高職卑)에는 行이라 하고, 反對로 品階가 낮은데 官職이 높은 경우(階卑職高)에는 守라 하여, 所屬 官廳의 名稱앞에 行 또는 守자를 붙이게 되어 있었다. 이를테면, 宗一품인 崇政大夫의 品階를 가진 사람이 正二품職인 吏曹判書가 되면 崇政大夫行吏曹判書라 하고, 反對로 宗二품인 嘉善大夫의 品階를 가진 사람이 正二품職인 大提學이 되면 嘉善大夫守弘文館大提學이라 했다. 高麗시대의 인물에 守太保나 守司空이 하나 있는 官職이 많은 것도 모두 같은 예이다. 요즘으로 치자면 中央官廳의 係長級인 事務官이 書記官의 補職인 課長 자리 에 임명되면 守, 그 反對의 境遇면 行이 되는 셈이다. 또 高麗末~朝鮮初의 人物에 檢校門下侍中이니 檢校政丞이니 하여 檢校란 用語가 많이 눈에 띄는데 이는 實際의

行職은 普通實際의 現職을 말한다.

8、者 社 (耆老所)

기사(耆社)라는 것은耆老所(기르소)의 別稱으로서, 太祖 때부터 老臣들을 禮遇하기 위해 마련된 制度였다. 社社에 들려면 正二品 以上の 官職을 지낸 사람으로서 나이가 七〇세 이상이어야 했으며, 임금도 한으면 여기에 參加하여 이름을 올렸다. 이리므로 社社는 임금과 臣下가 同祭하는 것이라 하여 官廳의 序列로도 으뜸으로 쳤으며, 朝廷에서는 每年 三월 삼진날과 九월 重陽節에 잔치를 베풀었는데 이를耆老宴 또는 老英會라 했다. 따라서 社社에 드는 것을 최고의 榮譽으로 여겼는데, 泗川 睦氏의 睦詹·睦叙欽·睦永善의 三代와 光山 金氏 門中의 鶴溪 石樓 果菴 三代가 各耆社에 進入하여 이 方面에 記錄을 세웠다.

社社에 들려면 반드시 文科를 거친 文官이어야 했으며, 武官이나 陰官은 들 수 없었다. 眉叟 許穆 姜은 이는 正二品을 지내고 나이 八二세나 되고서도 文科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社社에 들지 못하다가 臣下들의 奏請으로 뒤늦게 社社에 들었을 程度였다. 그러나 朝鮮 初期에는 文科를 거치지 않은 陰官이나 武官 또는 나이 七〇세가 되지 않은 사람도 社社에 들었는데, 權僖·金士衡·李居易·李茂·趙浚·崔潤德·崔恒 등이 그런 예이다.

9、致仕와 奉朝賀

옛날에는 堂上官 正三品 以上の 官員으로서 나이 七〇세

가 되면 致仕를 허가했는데, 致仕한 벼슬에서 물러나는 것을 말한다. 이들에게 奉朝賀한 칭호를 주고 終身도록 그 品階에 앞서는 俸祿을 주었고 國家의 儀式에 朝服을 입고 參與하게 했다. 奉朝賀의 定員은 처음엔 一五명으로 定했었으나 뒤에는 一定한 定員을 두지 않았다. 이런 制度는 康宗 때에 처음 施行되었는데, 처음으로 奉朝賀가 된 사람은 洪達孫·崔瀛·安慶孫·李蒙哥·柳淑·柳泗·裴孟達·鄭守忠·韓瑞龜·宋益孫·柳漢·成高治·韓僅·尹贊·韓致亨 등이었다.

10、凡 杖

그러나 나이 七〇세가 넘고서도 政事때문에 致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사황증에서 正一品 官에게 주는 임금이 特別히 凡杖(계간)을 下賜했는데, 凡是 杖을 下賜할 때는 임금이 親히 잔치를 베풀어 주었는데 이를 凡杖宴이라 했다. 그래서 入耆社나 奉朝賀나 賜凡杖이니 하는 것은 큰 榮譽으로 여겨졌으므로 族譜에까지 그 사실을 記錄하는 것이다.

11、諡 號 (諡號文字의 正義)

至宗親과 文·武官中에서 正二品 以上の 官職을 지낸 사람이 죽으면 諡號(시호)를 주었는데, 뒤에는 範圍가 擴大되어 提學이나 儒賢·節臣 등은 正二品이 못되어도 諡號를 주

었다. 諡號를 定하는 節次는, 該當者의 子孫이나 關係者들이 죽은이의 行狀을 적은 諡號를 禮曹에 제출하면 禮曹에서 이를 審議한 뒤 奉常寺를 거쳐 弘文館에 보내어 諡號를 定하게 된다. 諡號를 定하는 法으로는 周公 諡法이니 春秋 諡法이니 하여 中國古代 以來의 諡法이 많이 原用되었던 듯하다. 諡號에 使用된 글자는 文·忠·貞·恭·襄·靖·孝·莊·安·景·翼·武·敬等 一백二〇자인데, 한자 한자마다 定義가 있어서 生前의 行蹟에 알맞는 글자를 組合하여 그자로 만들었고 諡號 아래 글자를 붙여서 부른다. 諡號에 使用된 글자中 代表적인 글자의 定義의 代表的인 것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文] 經天緯地 道德博聞 博學好文 勤學好問 博學多識 慈惠愛民 忠信愛人 剛柔相濟 愍民惠禮 修德來遠 施而中禮 修治班制
- [忠] 危身奉上 事君盡節 處國忘家 推賢盡忠 廉方公正 險不避難 臨亂不忘國 臨患不忘國
- [貞] 清白守節 清白自守 直道不撓 不隨無屈 大處克就
- [襄] 因事有功 有功征伐 甲冑有勞 辟地有德
- [靖] 寬樂令終 恭己安民 恭己鮮言 柔德安衆 任不躁進 正容寡言
- [良] 溫良好樂 中心敬事 慈仁愛人
- [孝] 慈惠愛親 繼志成事 能養能恭 慈人愛人 五宗安之 德不回 大處行節 協時祭享
- [莊] 履正志和 嚴親臨民 武能持重 威而不猛 勝敵志強 致果殺賊 好勇致力

[度] 心能制義 制事合義 制事得義 諡號를 받는다. 이것은 가장 榮譽으로 褒彰으로서 尊重되어 族譜에는 勿論 基礎강은 데에 記入되었다. 따라서 어떤 諡號를 받느냐 하는 것은 그 子孫과 一族의 名譽에 關係되는 問題이므로 諡號의 글자를 들러싸고 是非와 論難이 많았으며, 뒷날에 이르러 改諡를 要求하는 일도 많았다. 諡號中에 五 文字와 忠자가 들어간 諡號를 가장 尊重하게 여겼는데, 특히 崇文主義로 因한 文班 優位의 時代였기 때문에 文자 諡號를 最高의 榮譽으로 여겨 子孫들이 이를 자랑으로 삼는 것이 當時의 通念이었다.

12、儒賢들의 諡號

한편 임금의 特別한 敎示가 있을 때는 子孫의 諡號를 거다 리지 않고 弘文館과 奉常寺에서 直接 諡號를 議定했는데,

이름 退溪李滉에게 文純이란 諡號를 내려준대서 비롯했다. 正二品 벼슬이 못되었으면서 諡號를 追贈받은 儒賢으로 는 金宏弼(文敬公)·鄭汝昌(文獻公)·徐敬德(文康公)·趙光祖(文正公)·金長生(文元公) 등이다.

13. 武人の 諡號

武人の 諡號로는 忠武가 가장 영예로 간주하며, 특히 忠武公하면 李舜臣장군의 대명사처럼 알려져 있지만, 그 밖에 趙英茂·南怡·龜城君浚·鄭忠信·金時敏·金應河·李守一·具仁堂등 忠武公이 八명이나 있다.

高麗의 官衙 및 官職

고려조(高麗朝)의 관청과 관직을 대략 중요한 것만을 골라 다음과 같이 주석(註釋)을 붙여 참고에 이바지 한다.

1. 中央政府

中書門下省(중서문하성) : 정부의 최고기관으로서 왕의 조칙(詔勅)을 받들어 심사(審査)하고 시행한다. 후에 도첨(都僉)의사(都僉議司)로 고쳐졌다. 이 관청의 장(長)은 대신(大臣)이니 중서령(中書令)과 명하시중(門下侍中)이 있고 그 밑에 시랑(侍郎)·평장사(平章事) 혹은 참지정사(參知政事)·좌우상시(左右常侍)·좌우승(左右丞)이 있다. 그리고 도첨의사로 하였을 때에는 중서령을 관도첨의사사(判都僉議司事)라고 한 적도 있고 또한 관료하성사

(判門下省事)라고 하였으며 시중을 첨의중찬(僉議中贊)이라 하기도 하였다.

尚書省(상서성) : 행정기관의 최고기관으로서 육부(六部)를 감독하고 대정(大政)을 총리한다. 이 관청의 장(長)은 역시 대신이니 이를 상서령(尚書令)이라 하였으며 판상서정사(判尚書省事)라고도 하였다. 그 밑에 시랑(侍郎) 또는 좌우부야(左右僕射)·평장사(平章事) 혹은 참지정사(參知政事)·좌우상시(左右常侍)·좌우승(左右丞) 등 벼슬이 있는데 중서문하성과 같다. (射|| 벼슬 이름 아) 하는데 지금의 내무부적이다.

戶部(호부) : 국가의 재정과 호(戶口)를 맡아 관장하고 있으며 지금의 재무부적이다.

禮部(예부) : 외교관계와 백성의 교육과 풍속등을 관장하는 데 지금의 의무부와 문화부를 합친 것이다.

兵部(병부) : 국방문제의 유해근을 감독하고 무관의 인사 등을 맡아 관장하는데 지금의 국방부적이다.

刑部(형부) : 사법을 맡는 곳으로서 지금의 법원관계와 법무부를 합쳐서 관장하는 곳이다.

工部(공부) : 공업과 농정(農政)을 맡아 관장하는 기관이니 지금의 상공부, 농수산부적이다. 이상의 각부에는 다음과 같은 상서(尚書)·시랑(侍郎)·낭중(郎中)·원의랑(員外郎) 등의 관원이 있다.

中樞院(중추원) : 후에 축밀원(樞密院) 혹은 밀직사(密直司)라고 하였으니 왕의 자문(諮問)에 응하고 조명(詔命)을 맡는 경(卿)이라고 했다. 오늘날의 財務部와 같다. 少府監(소부감) : 나라의 모든 물건을 보관하는 장소를 관리하는 관청인바 그 장은 판사(判事)라고 했다. 大史局(대사국) : 천문(天文)과 역사(曆書)에 관한 사무를 맡는 관청인데 그 장은 영(令)이다. 大僕寺(대부시) : 나라에 쓰이는 수레와 말을 맡는 관청이며 그 장은 경(卿)이다. 開城府(개성부) : 고려의 수도 서울을 맡는 관청인바 그 장이 판사(判事)이다. 고려조의 관청중 중요한 것은 이상과 같으며 그 외에 왕의 고문이요 원로인 삼사(三師)가 있고 또는 무임소(無任所) 대신인 삼공(三公)이 있으며 宰相(태자정)의 관직은 다음과 같다.

三公(삼공) : 태사(太師)·태보(太保) 모두 正一品이다. 三師(삼사) : 태사(太師)·태부(太傅)·태보(太保) 모두 正一品이다. 三公(삼공) : 삼공은 무임소대신인바 태위(太尉)·사도(司徒)·사공(司空)이다. 이 삼사와 삼공은 공민위패에 페지되었다. 太子宮(태자궁) : 태사(太師)·좌우빈객(左右賓客)·좌우유덕(左右諭德)·좌우친선(左右贊善). 武官職(무관직) : 대장군(大將軍)·상호군(上護軍)·호군(護軍)·중앙장(中郎將)·낭중(郎將)·별장(別將) 등이 관등이다.

2. 主要官衙 및 官職의 品階

위에 열거한 관청의에 本書에 나타난 것을 拔萃하여 參考

은 기관이다. 여기에 다음과 같은 사(使)·부사(副使) 지신사(知申事)·승선(承宣) 등의 관직을 둔다. 三司(삼사) : 나라의 돈과 곡식을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여기의 장은 사(使)라고 하였다.

國子監(국자감) : 국립대학으로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며 여기의 장은 대사성(大司成)이다.

大農寺(대농시) : 미곡(米穀)을 맡아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그 장은 경(卿)이다. (속|| 벼슬시)

殿中省(전중성) : 대궐안의 모든 사무를 맡는 기관으로서 그 장은 감(監)이다.

御史臺(의사대) : 왕의 잘못을 간(諫)하고 백관의 과오와 비행을 규탄한다. 그 장은 어사대부(御史大夫)이다.

秘書省(비서성) : 왕의 측근에서 글씨를 다루고 봉행하는 기관인바 그 장은 감(監)이다. 오늘날의 비서실이다.

翰林院(한림원) : 왕의 조서(詔書)를 맡아서 짓는다. 그 장은 학사(學士)라고 하였다.

京市署(경시서) : 서울에 있는 市場과 商業에 관한 일을 맡는 기관이며 그 장은 감(監)이다.

軍器寺(군기시) : 모든 군기를 조달하고 관수(管守)하는 기관인바 그 장은 감(監)이다.

禮賓省(예빈성) : 손님을 접대하는 관청이며 그 장은 경(卿)이라 하였다. 지금 儀典室과 같다.

巡軍(군) : 국내 치안을 담당한 경찰의 직분을 맡는 관청인바 그 장은 만호(萬戶)이다. 지금의 治安局

大府寺(대부시) : 나라의 財物을 관리하는 관청인데 그 장을

로 한다. 이는 어떠한 계층이나 체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 뜻이 무엇인가를 간단히 설명한 것이니 이해하기 바란 다.

太師(태사)·태부(太傅), 태보(太保) 상공대광(三重大匡), 박사상헌상공대광(壁上三韓三重大匡) 태위(太尉), 사도(司徒), 사공(司空), 상주(上柱國) 총위의 첫째(이 상은 정 一품인)

中書令(중서령) : 후에 도첨의(都僉議) 또는 첨의정승(僉議政丞) 등으로 고칭, 판문하정사(判門下省事) 중서령의 전신(前身) 시중(侍中) 후에 첨의 중찬(中贊)으로 고칭 상서령(尚書令) 판상서정사(判尚書省事) 재신(宰臣)의 겸임함(兼任) 감주국사(監修國事) 사관의 으뜸 벼슬로서 시중이 겸임함(兼任) 판삼사사(判三司事), 즉국(柱國) 총위의 둘째(이 상은 정 一품인)

平章事(평장사) : 참지정사(參知政事) 상서(尚書) 뒤에 견서(典書) 또는 판서(判書)라 하였는데 정 二품 또는 정 三품으로 한 때도 있음

左右僕射(좌우부야) : 중서시랑(中書侍郎) 중서성에 한함, 태자빈객(太子賓客) 태자궁에 빈객(賓客) 태학사(太學士) 뒤에 대제학으로 하였음(大制學) 춘추관사(春秋館事) 춘추관의 으뜸 벼슬로서 二품 이상의 과관의 겸임함(兼任) 친성사(贊成事) 판내시부사(判內侍府事) 이상은 정 二품 판중樞府事(판중추부사) : 지극밀원사(知樞密院事) 정밀원학(政堂文學), 문하명리(門下評理), 즉부(注簿) 동지(同知) (이상은 정 二품)

지극(祗候) 정 七품 벼슬, 즉서(注書) 정 七품(즉사) 錄事 正八품 장사랑(將仕郎) 정 九품 급사(給事) 정 九품 직문翰(직문한) : 문한성의 벼슬 知製誥(지제고) : 왕의 조서, 교서 등을 지어 바치는 벼슬로서 뒤에 지제고(知製敎)로 고칭 必闡赤(필드지) : 궐안의 職名으로 서기일을 맡아 보는 관원 첨사성(詹事省) : 세자 직장원 寶房(보방) : 왕을 모시고 경서를 장문하는 관청인데 뒤에 경연(經筵)으로 고칭 重房(중방) : 상장군, 대장들이 모여 국사를 의논하던 곳 版圖(판도) : 뒤에 호조(戶曹)로 고칭 關門(관문) : 뒤에 흥해원으로 고칭. 조하(朝賀)와 제사들을 관청임.

李朝의 官衙와 官職

이조(李朝) 시대의 관청은 동반(東班) 즉 문관(文官) 관청과 서반(西班)인 武官의 관청으로 구분할 수 있으니 그 관청 이름과 관직명은 다음과 같다.

1. 東班官廳(동반관청)

耆老社(기로사) : 이태조 三년에 문관으로서 정(正) 二품 이상의 실직(實職)에 있던 자가 연령 七十세 이상이 되면 기로사(耆老社)에 입사(入社)를 허하였으며 음관(陰官)

副使(부사) 즉밀원 등의 관직(官職) : 상서(常侍) 지신사(知中事) 뒤에 지주사(知奏事)로 고칭, 총주원, 즉밀원, 밀직사의 벼슬 승선(承宣) 뒤에 승지(承旨)로 고칭, 감(監), 경(卿) 장, 정은 작관청의 장인마종 三품도 있음(어사대부 御史大夫) 어사대의 으뜸 벼슬, 계거(提舉) 보문각, 국자감의 벼슬임, 대사성(大司成) 국자감의 장(代官) 승선승 고칭 상호군(上護軍) 상장군을 고칭 (이상은 정 三품)

知貢舉(지공거) : 학사로서 과거를 맡아 봄, 동지공거(同知貢舉)의 위(尊 三품 혹은 정 四품인) 祭酒(제주) : 국자감의 벼슬로서 뒤에 성균관 사성(司成) 임 비서관(秘書監) 좌우사간(左右司諫) (이상은 정 三품인) 直學士(직학사) : 간의(諫議) 사간원의 간의대부(奉常) 二품상대부 (이상은 정 四품인) 大府少卿(태부소경) : 국자사어(國子司業) 국자감의 벼슬, 급사중(給事中) 중서문하성의 벼슬 (이상은 정 四품인) 郎中(낭중) : 중랑장(中郎將) (이상은 정 五품인) 侍御史(시어사) : 비서승(秘書丞) 기거주(起居注) (이상은 정 五품)

員外郎(원외랑) : 좌우정언(左右正言) 승유(拾遺) 정언의 전신(前身) 보림(補闕) 중서문하성의 벼슬로서 뒤에 헌납(獻納)으로 고칭 상의부어(尚衣奉御) 상의국의 벼슬 (이상은 정 六품) 內給事(내급사) : 비서교랑(秘書校郎) 비서관(秘書郎) 낭장(郎將) (정 六품)

과 무신(武臣)은 참여시키지 아니하였다. 그 후 정 二품 실직중에서 연령 七十세 이상자가 있으면 중(中) 二품 인자 十二인을 뽑게(擢) 하여 입사를 허가한다. 이 기로사는 노인을 우대하는 관청이다. (詳載 七一面) 宗親府(종친부) : 이조전국초에 창설한 이조 종실(宗室)과 모든 국(君)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 관청으로서 종부시(宗簿寺)라고 한 것이 있는데 이 종친부에는 다음과 같은 관직이 있다. 대군(大君), 국(君), 도정(都正) 종친외자(宗親外子) (副正) 종친이(宗親), 수정(守正), 전침(典範), 부수(副守), 영(令), 진부(典簿), 부령(副令), 장(監)。

議政府(의정부) : 이 관청은 고려 때는 도평의사(都評議司)라고 하였던 것을 정종(定宗) 二년에 의정부로 개칭하였는데 여기에는 모든 정치와 모든 관리를 총괄(總管)하는 최고의 관청인바 도당(都堂), 황각(黃閣)이라고 약칭(略稱)하기도 하였다. 여기에 다음과 같은 벼슬이 있다.

영의정(領議政), 좌의정(左議政), 우의정(右議政), 좌찬성(左贊成), 우찬성(右贊成), 좌참찬(左參贊), 우참찬(右參贊), 사인(舍人), 직상(直諫), 사록(司錄)。 忠勳府(충훈부) : 이태조대의 공신도감(功臣都監)을 두었으며 태종(太宗) 때에는 충훈사(忠勳司)로 하였다가 세조(世祖) 때에 부(府)로 개칭하였는데 모든 공신(臣)에게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관청으로서 명부(盟府) 음리(雲臺) (창조부) (忠創府) 총의부(忠翊府)라고도 하였으며 이 관원으로는 다음과 같다。

군(將), 경력(經歷), 도사(都事)。
敎宰府(도녕부) : 왕실(王室)의 친척간에 친목을 도모하는 관청으로서 세종때 마련하였다가 고종(高宗) 三十一年에 종정부(宗正府)에 합쳤는데 그 동안 도녕사(敎宰司) 혹은 도녕원(敎宰院)으로만 따도 있었다. 이 왕실의 대상은 왕의 동성(同姓)은 九촌이며, 왕과 이성(異姓)은 六촌, 왕비의 동성은 八촌, 왕비의 이성은 三촌으로 기증을 정하고 있는바 여기에 계속한 관직은 다음과 같다.

판사(判事), 지사(知事), 동지사(同知事), 도정원정(都正原正), 부정(副正), 첨정(僉正), 판관(判官), 주부(主簿), 직장(直長), 봉사(奉事), 참봉(參奉)。
儀賓府(의빈부) : 이조 초에 부마부(駙馬府)를 세조 十二年에 의빈부로 고쳤는데 여기는 부마에 대한 일을 관장하는 관청으로서 다음과 같은 관직이 있다
위(尉), 부위(副尉), 친위(僉尉), 경력(經歷), 도사(都事)。

備邊司(비변사) : 명종(明宗) 十년에 창설하여 나라의 군사 기밀과 계획작전에 대한 것을 총관하는 관청으로서 주사(籌司), 묘당(廟堂), 비국(備局)이라고도 한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관직이 있다。
도제조(都提調)의 정(議政)이 겸임함), 제조(提調), 부제조(副提調), 낭청(郎廳)。

宣惠廳(선혜청) : 선혜청은 선조 四十一年에 창설되었는데 여기서 대동미(大同米)와 대동목(大同木) 등을 출납하는 관청이다.

였으니, 즉 세금으로 받는 쌀과 필용등을 관리한다. 관직은 다음과 같다。
도제조(都提調)의 정(議政)이 겸임함), 제조(提調), 낭청(郎廳)。

藩司(공천사) : 공천사에서는 서울 장안에 있는 개천과 사산(四山) 사이를 둘러싼 산(山)을 관리하는바, 영조(英祖) 三十六년에 창설되어 고종 十九년에 한성부(漢城府)에 통합되었는데 여기 관직은 다음과 같다。
도제조(都提調)의 정(議政)이 겸임함), 제조(提調), 도청(都廳), 낭청(郎廳)。

義禁府(의금부) : 이조 초에는 승군(承軍)호부(巡軍萬戶府)라고 하였고 세종 때에 의용왕부(義勇王府)라고 하였다가 의금부로 고쳤는데 금오(金吾)라고도 한다. 권찰청과 같다. 여기서서는 죄인을 잡고 다스린다. 여기의 관직은 판사(判事), 지사(知事), 동지사(同知事), 경력(經歷), 도사(都事)。

吏曹(이조) : 天官이라고도 한다. 태조(太祖) 원년에 창설하였는데 문관의 인사(人事) 문제에 대한 일과 홍봉(勳封)의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바 이를 약칭(略稱)해서, 동원(東銓), 권리(典理), 문부(文部), 선부(選部)라고도 한다. 이조에는 문선사(文選司), 고종사(考勳司), 고공사(考功司)가 있으며 여기는 지금의 내무부(內務部)에 해당한다. 관직으로서 판사(判書), 참판(參判), 참의(參議), 정랑(正郎), 좌랑(佐郎)。

의호(戶)부(戶)와 납세(納稅)와 식량과 화폐(貨幣)에 관한 일을 관장하고 있으며 지부(地部), 지관(地官), 친부(倉部), 민부(民部), 락지(度支), 판도(版圖) 등으로 불리우기도 한다. 호조 안에 관직사(版籍司) 회계사(會計司) 정비사(經費司)가 있으며 여기는 지금의 재무부(財務部)와 같다. 그 관직은 다음과 같다。
판서(判書), 참판(參判), 참의(參議), 정랑(正郎), 좌랑(佐郎), 신학교수(算學校授), 별제(別提), 산사(算士), 계사(計士), 산학호도(算學校導), 회사(會士)。

禮曹(의조) : 춘관(春官)이라고도 한다. 태조 원년에 창설하였는데 예악(禮樂), 제사(祭祀), 연향(宴享), 조예(朝禮) 학포(學校), 과거(科擧)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남궁(南宮), 예부(禮部), 의조(儀曹), 예의사(禮儀司)라고도 불렀는데 이 예조에 안에는 제제사(稽制司), 전역사(典역司), 전역사(典客司), 전역사(典客司)가 있다. 예조는 지금의 문교부(文敎部)에 해당한다. 그 관직은 판서(判書), 참판(參判), 참의(參議), 정랑(正郎), 좌랑(佐郎)。

兵曹(병조) : 하관(夏官)이라고도 한다. 태조 원년에 창설되어 무관에 대한 인사문제(軍事) 문제, 무변, 무(驛), 병기(兵器)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병관(兵官), 거견(西鎗) 기성(騎省), 궁척총부(軍籍總部)라고도 한다. 병조 안에 무선사(武選司), 승의사(乘典司), 무기사(武備司)가 있다. 병조는 지금의 국방부(國防部)에 해당한다. 그 관직으로는 판서(判書), 참판(參判), 참의(參議), 정랑(正郎), 좌랑(佐郎)。

刑曹(형조) : 춘관(秋官)이라고도 한다. 태조 원년에 창설되었고 법률과 소송(訴訟), 노비(奴婢)판(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좌리판부(左理方部), 우리판부(右理方部), 의방부(議方部), 전법(典法), 형민(刑民), 형부(刑部), 이부(理部)라고도 한다. 형조 안에 상부사(詳覆司), 고을사(考律司), 장금사(掌禁司), 장예사(掌隸司)가 있다. 형조는 지금의 법무부(法務部)에 해당한다. 여기 관직은 다음과 같다。
판서(判書), 참판(參判), 참의(參議), 정랑(正郎), 좌랑(佐郎), 율학교수(律學敎授), 겸교수(兼敎授), 별제(別提), 명률(明律), 심률(審律), 율학호도(律學敎導), 관률(檢律)。

工曹(공조) : 동관(冬官)이라고도 한다. 태조 원년에 창설되어 산택(山澤)에 관한 일과 공업(工業) 또는 공사(工事), 영선(營繕)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바 수부(水府), 예작부(例作部), 수례공반(修例工官), 공견(工典)이라고도 한다. 공조 안에 영조사(營造司), 정치사(政治司), 산택사(山澤司)가 있다. 공조는 지금의 건설부(建設部)에 해당한다. 관직은 다음과 같다。
판서(判書), 참판(參判), 참의(參議), 정랑(正郎), 좌랑(佐郎)。
漢城府(한성부) : 정조(宗祖)라고도 한다. 태조 三년에 창설하였는데 지금 서울 특별시와 같은 관청으로서 서울 장안의 모든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관청으로서 한성부의 관직

은 판(判官), 좌판(左判), 우판(右判), 서판(庶判), 판관(判官), 주판(主簿), 참근(參軍).

奎章閣(奎章閣) : 정조(正祖) 때 창설하였는데 여러 임금이
어제(御製)에 대한 글과 내각의 서적을 맡아 주관하며
내각(內閣)이라고도 한다. 국장각의 관직으로는 다음과
같다.

提學 判校 直提學, 直閣 校理, 別坐, 待教, 博士,
著作, 正字, 副正字가 있다.

司憲府(사헌부) : 태조 원년에 창설되었는데 정치를 잘하고
못함을 논의하고 관리들의 잘못을 주관하고 기강(紀綱)
을 진자(振作)하며 공적을 바로잡는 관직으로서 백부(柏
府), 상대(霜臺), 오대(烏臺), 이사대(御史臺), 장창
사(監察司)라고도 하는바 그 관직은 다음과 같다.

대사헌(大司憲), 집의(執義), 장령(掌令), 지평(持平)
감찰(監察).

開城府(개성부) : 지방관서인 개성부는 특별시 제도와 같은
특수 지방관청으로서 다음과 같은 관직을 두고 있다.

유수(留守), 경력(經歷), 도사(都事), 교수(教授), 분
교관(分教官), 검열(檢律).

江華府(강화부) : 강화부 역시 개성부와 마찬가지로 특수 지
방관청으로서 다음 관직을 두고 있다.

유수(留守), 경력(經歷), 분교관(分教官), 검열(檢律)
承政院(승정원) : 태조 원년에 창설되었는데 여기서는 왕

명을 받들어 기행하는 관청으로서 지금의 비서실에 해
당하는바 은대(銀臺), 후원(後院)이라고도 하며 그 관
직은 다음과 같다. 도승지(都承旨), 좌승지(左承旨),
우승지(右承旨), 좌부승지(左副承旨), 우부승지(右副承
旨), 동부승지(同副承旨), 주서(注書), 사변각주서(事
變假注書).

掌隸院(장예원) : 노예(宗)의 부저(簿籍) 즉 문서와 재판 관
계를 관장하는 관청으로서 처음에 형조에 속하였던 것
을 개조(世祖) 十二年에 독립관청인 변정원(辨定院)으
로 되었다가 그이듬해에 장예원으로 고쳤고 영조(英祖)
四十年에 장예사(掌隸司)로 개칭하였는데 여기 관직
은 다음과 같다. 판결사(判決事), 사의(司議), 사평(司
評).

司諫院(사간원) : 태종 二년에 창설되어 임금을 간(諫)하고
백관을 탄핵하는 관청으로서 미원(秘院)이라고 하며 그
관직은 대사간(大司諫), 사간(司諫), 헌납(獻納), 정언
(正言).

經筵廳(경연청) : 중종(中宗) 三十五年에 창설 하였는데 글
을 강(講)하고 사상을 토론하는 일을 맡는 관청으로서
분사(分司), 하전(夏甄)이라고도 하는바 그 관직은 다
음과 같다.

영사(領事)의정이 점임함, 지사(知事), 동지사(同知
事), 참찬관(參贊官) 등지 혹은 부제학이 점임함, 시강
관(侍講官), 시독관(侍讀官), 검토관(檢討官), 사경(司
經), 설경(說經), 전경(典經).

弘文館(홍문관) : 성종 九년에 창설되었고 경적(經籍) 과 문
헌(文翰)을 다루고 왕의 고공에 응하는 관청으로서 우
당(玉堂), 유서(玉署), 영각(凝閣), 서서원(瑞書院),
청연각(淸燕閣)이라고도 하는바 그 관직은 다음과 같다

영사(領事)의정이 점임함, 대제학(大提學), 제학(提
學), 부제학(副提學), 직제학(直提學), 전한(典翰), 응교
(應教), 부응교(副應教), 교리(校理), 부교리(副校
理), 수찬(修撰), 부수찬(副修撰), 박사(博士), 저작
(著作) 정자(正字).

藝文館(예문관) : 태조 원년에 창설하였는데 여기서서 왕명
을 받들어 글을 짓고 공학을 다루는 관청으로서 원봉성
(元鳳省), 사림원(詞林院), 문헌성(文翰省), 한림원(翰
林院)이라고도 한다. 예문관의 관직은 다음과 같다.

영사(領事)의정이 점임함, 대제학(大提學), 제학(提
學), 직제학(直提學), 응교(應教), 부교(奉教), 대교
(待教), 검열(檢閱).

世子侍講院(세자시강원) : 태조 원년에 창설 하였는데 여기
는 세자 즉 동궁(東宮)에 대한 시강(侍講) 공부(司諫)을
맡아 주관하는 관청으로서 담사부(詹事府), 정원각(澄
源堂), 춘방(春坊), 의사(雷肆), 갑관(甲觀)으로 불리
우고 있는데 그 관직은 다음과 같다.

사(師)의정이 점임함, 부(傅)와, 우의정이 점임
함, 이사(貳師)의정이 점임함, 좌빈객(左賓客), 우
빈객(右賓客), 좌부빈객(左副賓客), 우부빈객(右副賓
客), 친선(贊善), 보덕(輔德), 겸보덕(兼輔德), 친선

(進善), 필선(弼善), 정필선(兼弼善), 문학(文學), 점
문학(兼文學), 사서(司書), 점사서(兼司書), 설서(說
書), 설설서(兼說書), 자의(諮議).

世孫講書院(세손강서원) : 태조 원년 초에 창설하여 세손(世
孫) 임금의 손자(의 글)를 가르치는 관청으로서 그 관직
은 다음과 같다.

사부(師傅), 좌유선(左諭善), 우유선(右諭善), 좌인선
(左誦善), 우인선(右誦善), 좌권독(左勸讀), 우권독(右
勸讀), 우찬주(右贊讀).

成均館(성균관) : 태조 七년에 창설하였는데 유생(儒生) 선
비(生)들의 교육과 훈련을 시키는 관청으로서 태학(大學)
국학(國學), 국자(國子)라고도 한다. 여기의 관직은 지
사(知事), 동지사(同知事), 대사성(大司成), 제주(祭
酒), 사성(司成), 사예(司藝), 사업(司業), 직장(直
講), 권적(典籍), 박사(博士), 학정(學正), 학록(學
錄), 학유(學諭).

尙瑞院(상서원) : 태조 원년에 창설하여 임금의 옥패(玉璽),
부패(符牌), 절부(節鈔) 등을 관장하는바 지인방(知印
房), 정반(政房), 량자방(劉子房), 부보랑(符寶郎) 이라
고도 한다. 그리고 그 관직은 다음과 같다. 정(正), 판
관(判官), 직장(直長), 부직장(副直長).

春秋館(춘추관) : 태조 원년에 창설 되었는데 기록(紀錄)을
관리하는 동시에 정치(政) 기록(記)에 대한 기록을
관리하는 관청으로서 사관(史館)이라고도 하는바 여기
의 관직은 영사(領事)의정이 점임함, 장사(監事)

의정이 정일함), 지사(知事), 동지사(同知事), 수찬관(修撰官), 편수관(編修官), 기록관(記注官), 기사관(記事官).

承文院(승문원) : 다른 나라와 외교문서를 관리하는 관청으로서 피관(槐館)이라고도 하며 태종 10년에 창설되었는데 여기 관직으로서 판교(判校), 참교(參校), 교감(校勘), 교리(校理), 교검(校檢), 박사(博士), 저작(著作), 정자(正字), 부정자(副正字).

通禮院(통례원) : 태조 원년에 창설하였으며 조하(朝賀), 제사(祭祀), 친양(贊陽) 임금의 의전(儀殿) 등 사무를 관리하는바 사범서(司範署), 통례문(通禮門), 함문(閤門), 중문(中門), 홍려(鴻臚)라고도 부른다. 여기의 관직은 좌통례(左通禮), 우통례(右通禮), 상례(相禮), 봉례(奉禮), 친의(贊儀), 인의(引儀), 정인의(兼引儀), 가인의(假引儀).

奉常寺(봉상시) : 제사와 회의, 시호(諡號) 등을 주관하는 관청으로서 태조 원년에 창설하였고 전사서(典祀書), 태상시(太常寺), 전의서(典儀署)라고도 한다.

정(正), 부정(副正), 첨정(僉正), 판관(判官), 주부(主簿), 직장(直長), 봉사(奉事), 부봉사(副奉事), 참봉(參奉).

宗簿寺(종부시) : 태조 원년에 창설되어 녹전(錄掾)과 증실(增實)에 대한 사무, 왕실의 족보 등을 조사 연구하는 기관인데 전중성(殿中省), 종정시(宗正寺)라고도 하는데 그 관직은 정(正), 첨정(僉正), 주부(主簿), 직장(直長)이다.

司饗院(사옹원) : 임금의 식사, 즉 어찬(御膳)과 대궐인의 음식 등을 만드는 기관으로서 태조 원년에 창설하여 상식(尚食), 사찬(司膳), 주원(廚院)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의 관직은 정(正), 계가(提掾), 계검(提檢), 첨정(僉正), 판관(判官), 주부(主簿), 직장(直長), 봉사(奉事), 참봉(參奉).

內醫院(내의원) : 태조 원년에 창설하였는데 대궐의 약과 화제를 다루는 기관으로서 상약(尚藥)의(掌醫), 봉의(奉醫), 상의(尙醫), 상크(尙局)라고도 부르며 약방(藥房) 그 관원으로는 정(正), 첨정(僉正), 판관(判官), 주부(主簿), 직장(直長), 봉사(奉事), 부봉사(副奉事), 참봉(參奉).

高衣院(상의원) : 여의(御衣)와 궁내 옷장 등을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태조 원년에 창설하였는데 장부(掌服), 증상(中尚), 공조(供造), 상방(尙方)이라고도 부른다. 그 소속 관직은 정(正), 첨정(僉正), 별좌(別坐), 판관(判官), 주부(主簿), 별계(別提), 직장(直長).

司僕寺(사부시) : 태조 원년에 창설되었는데 가마와 말에 대한 행정을 맡은 관청으로서 승부(乘府), 대부(大僕) 등으로 부른다. 여기의 관직으로는 정(正), 부정(副正), 첨정(僉正), 판관(判官), 별계(別提), 주부(主簿), 직장(直長)이다.

軍器寺(군기시) : 태종 14년에 군기장(軍器監)을 고친 이름으로서 병기에 대한 행정을 맡은 관청인데 여기의 소속된 관직은 정(正), 부정(副正), 첨정(僉正), 별좌(別坐), 판관(判官), 별계(別提), 주부(主簿), 직장(直長)이다.

봉사(奉事), 부봉사(副奉事), 참봉(參奉).

內資寺(내자시) : 태조 원년에 창설한 궁내의 글, 간장, 기문, 절, 채소, 잔치 등 사항을 맡은 관청으로서 대판(大官), 선관(膳官)이라고도 하는바 그 소속 관직은 정(正), 부정(副正), 첨정(僉正), 판관(判官), 주부(主簿), 직장(直長), 봉사(奉事).

內膳寺(내침시) : 이 관청에서는 각전(各殿)과 각궁(各宮)의 음식물 계량과 기름, 초, 소찬(素膳)을 맡아 보고 또한 두름이상의 관원에게 음식주는 일과 일본, 여진(女眞) 등(등)에 음식, 옷감, 술을 주는 일을 관장하며 덕천고(德泉庫)라고도 부른다. 여기의 관직은 정(正), 부정(副正), 첨정(僉正), 판관(判官), 주부(主簿), 직장(直長), 봉사(奉事).

司糶寺(사도시) : 태조 원년에 창설한 관청으로서 쌀과 간장 제자 등을 맡아 보는데 비용시(備用寺), 요물고(料物庫), 공출고(供出庫)라고도 한다. 그 소속 관직은 정(正), 부정(副正), 첨정(僉正), 판관(判官), 주부(主簿), 직장(直長).

軍資監(군자감) : 태조 원년에 창설한 궁내(軍需)물자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관청으로서 물장성(物藏省), 보청성(寶泉省), 소부감(小府監)이라고도 부른다. 여기의 관직은 정(正), 부정(副正), 첨정(僉正), 판관(判官), 주부(主簿), 직장(直長), 봉사(奉事), 부봉사(副奉事), 참봉(參奉).

用監(계용감) : 잡직서(雜職署)라고도 부르는데 이 관청은 모

시, 마포, 나사, 능단 등 옷감을 맡아 보고 또한 직조에 관한 일을 주관하는데 그 관직은 정(正), 부정(副正), 첨정(僉正), 판관(判官), 주부(主簿), 직장(直長), 봉사(奉事), 부봉사(副奉事), 참봉(參奉).

繕用監(선용감) : 여기서는 도복(土衣)과 영선(營繕)에 관한 행정을 맡아 보는데 그 관직은 정(正), 부정(副正), 첨정(僉正), 판관(判官), 주부(主簿), 직장(直長), 봉사(奉事), 부봉사(副奉事), 참봉(參奉), 감역관(監役官), 가감역관(假監役官).

司宰監(사재감) : 사진(司津), 도진(都津)이라고도 부르는데 관청은 생선, 고기, 소금, 펄나무에 관한 것을 맡아 보는데 여기 관원로서는 정(正), 부정(副正), 첨정(僉正), 주부(主簿), 직장(直長), 봉사(奉事), 참봉(參奉).

掌樂院(장악원) : 세조 4년에 창설되어 음악에 관한 일을 맡아 보는데 성음서(聲音署), 대악감(大樂監), 전악서(典樂署), 아악서(雅樂署)라고도 부른다. 여기 관원으로서는 정(正), 첨정(僉正), 주부(主簿), 전악(典樂), 부전악(副典樂), 전음(典音), 부전음(副典音), 전성(典聲), 부전성(副典聲).

觀象監(관상감) : 태조 원년에 창설되었으며, 천문(天文), 책력, 기후, 누각(漏刻) 시간제는 일(日)을 맡아 보는데 누각서(漏刻署), 태복서(太卜署), 태사국(太史局), 사천대(司天臺), 관후서(觀候署), 서운감(書雲監)이라고

도 부른다. 소속 관직은 다음과 같다.
 영사(領事) 영의정이첨의(添), 정(正), 부정(副正), 첨(添)
 정(政), 판관(判官), 주부(主簿), 친문학교수(天文學教授), 지리학교수(地理學教授), 천문학교수(天文學兼教授), 지리학점교수(地理學兼教授), 명과학교수(命課學兼教授), 직장(直長), 봉사(奉事), 부봉사(副奉事), 천문학교도(天文學訓導), 지리학도(地理學訓導), 명과학교도(命課學訓導), 참봉(參奉).

典醫監(전)의장(正)의들과 약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의약(醫藥)에 공급하고 일반에게 주는 인들을 주관하는바 태의감(大醫監), 사의사(司醫署)라고도 한다. 그 소속 관원으로는 정(正), 부정(副正), 첨정(僉正), 판관(判官), 주부(主簿), 의학교수(醫學教授), 직장(直長), 봉사(奉事), 부봉사(副奉事), 의학교도(醫學訓導), 참봉(參奉).

司譯院(사역원) : 다른 나라의 용역과 번역을 맡는 관청으로서 태조 건국초에 창설되었는데 통문관(通文館), 한문도감(漢文都監), 성원(成院), 상원(象院)이라고도 부른다. 여기의 관원으로서는 정(正), 부정(副正), 첨정(僉正), 판관(判官), 주부(主簿), 한학교수(漢學教授), 직장(直長), 봉사(奉事), 부봉사(副奉事), 한학교도(漢學訓導), 몽학교도(蒙學訓導) 몽고학(蒙古學), 왜학교도(倭學訓導) 일본학(日本學), 여진학교도(女眞學訓導) 만주학(滿洲學) (參奉).

상들을 대접하는 관청으로서 왜전(倭典), 영객사(領客舍), 사빈(司賓), 봉빈(奉賓) 등으로 부른다. 그 소속 관원은 다음과 같다.

정(正), 부정(副正), 첨정(僉正), 계검(提檢), 별과(別坐), 판관(判官), 별제(別提), 주부(主簿), 직장(直長), 봉사(奉事), 참봉(參奉).

宗學司(종학사) : 태종 원년에 창설하여 즉종 때 폐지한 당나귀 점자로 만든 종이로 된 지전(紙錢)과 지방의 노비(奴婢)로 부리 공포(貢布) 세금으로 내는 백(帛) 등을 관리하는 관청인데 그 소속 관원은 정(正), 부정(副正), 첨(添), 정(僉正), 주부(主簿), 직장(直長).

宗學司(종학사) : 양족의 교육을 맡아 주관하는 관청으로서 세종 10년에 창설되었고 연산군 때 폐지되었다가 중종 때 다시 계속되었는데 여기에 소속 관원은 도선(導善), 전호(典護), 사회(司護).

修城禁火司(수성금화사) : 사산(四山)의 성곽 수축과 나무 및 입산(入山) 등에 관한 일을 맡은 곳으로서 그 소속 관원은 계검(提檢), 별과(別坐), 별제(別提).

典設司(전설사) : 장막을 맡아 주관하는 관청인데 그 별칭으로서 상사고(尙舍庫), 사설서(司設署)라고도 한다. 그 소속 관원은 수(守), 계검(提檢), 별과(別坐), 별제(別提), 별진(別鎭).

廣興倉(광흥창) : 백민(百官)의 누복(褸服)을 맡은 관청으로서 사육관(司祿館), 천록관(天祿館), 태창서(太倉書)라고도 하는데 그 소속 관원으로서 수(守), 주(守), 주(守), 주(守).

부(主簿), 봉사(奉事), 부봉사(副奉事).

典艦司(전함사) : 함선(艦船)을 만들고 관리하는 관청으로서 그 소속 관원으로 계검(提檢), 별과(別坐), 별제(別提) 典需司(전구사) : 대궐에서 쓰는 물자를 공급하는 관청으로서 그 소속 관원은 전구(典需), 별과(別坐), 부전구(副典需), 별제(別提), 전회(典會), 전곡(典穀), 전화(典貨).

昭格署(소격서) : 하늘과 땅, 별 등에 제사하는 그 관원으로서 영(令), 별제(別提), 참봉(參奉).

典涓司(전연사) : 궁궐의 수리를 맡아 보는 기관으로서 태조 3년의 창설되어 뒤에 선용감(繕用監)으로 합쳐졌는데 그 관원으로서는 계검(提檢), 별과(別坐), 별제(別提), 직장(直長), 봉사(奉事), 참봉(參奉).

宗廟署(종묘서) : 태조 원년의 창설되었는데, 종묘(宗廟)의 신주를 모시는 사당(祠堂)을 수위하는 관청으로서 태묘(大廟) 친원(殿園)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의 관원은 영(令), 직장(直長), 봉사(奉事), 부봉사(副奉事).

社稷署(사직서) : 나라의 근본을 지키는 신을 모신 기관으로서 그 관원은 영(令), 직장(直長), 참봉(參奉). 景蓋宮(경묘궁) : 고종(高宗)의 고조 장조(莊祖)를 추앙하는 신위를 모신 곳으로서 그 관원은 영(令), 직장(直長), 봉사(奉事).

平市署(평시서) : 서울 안에 있는 시장(市場)과 물자에 대한 행정과 땅, 자, 저울 등의 도량형기(度量衡器)를 맡은 곳으로서 경시서(京市署)라고도 하는데 그 소속 관원은 영(令), 직장(直長), 봉사(奉事), 부봉사(副奉事).

(令), 주부(主簿), 직장(直長), 봉사(奉事).

司醴署(사은서) : 술을 양조하여 공급하는 기관으로서 이조 중업에 폐지되었다. 그 관원은 영(令), 주부(主簿), 직장(直長), 봉사(奉事).

義盈庫(의영고) : 기름, 꿀, 누룩 등을 맡은 창고로서 그 관원은 영(令), 주부(主簿), 직장(直長), 봉사(奉事). 長興庫(장흥고) : 태조 원년에 창설되었는데, 여기에는 자리유지(油紙), 종이 등을 맡은 기관으로서 그 관원은 영(令), 주부(主簿), 직장(直長), 봉사(奉事).

水庫(빙고) : 물을 맡은 창고로서 그 관원은 별과(別坐), 별제(別提), 별진(別鎭). 掌苑署(장원서) : 과실과 화초를 맡은 기관으로서 그 소속 관원은 계조(提調), 장원(掌苑), 별제(別提), 봉사(奉事).

司圖書(사도서) : 궁중의 책소를 맡아 가꾸는 기관으로서 세종 12년에 친정고(沈藏庫)를 고친 이름인데 여기의 관원은 사도(司圖), 별제(別提), 직장(直長), 별진(別鎭).

養賢庫(양현고) : 성균관(成均館)의 유생들의 식량을 공급하는 기관으로서 그 관원은 주부(主簿), 직장(直長), 봉사(奉事).

司畜署(사축서) : 여러가지 짐승을 기르는 기관으로서 세종 12년에 예빈서(禮賓寺)의 분서(分寺)로 하였다가 영조 때 호조로 합쳐졌는데 여기 관원으로는 계조(提調), 사(司畜), 별제(別提).

造紙署(조지서) : 종이를 만들고 판하는 기관이나 그 소속
 관원은 사지(司紙), 별제(別提).
 惠民署(해민서) : 구차한 백성들을 시로(施療)하는 기관으로
 그 관원은 주부(主簿), 의학교수(醫學敎授), 직장(直
 長), 봉사(奉事), 의학호도(醫學訓導), 참봉(參奉).
 圖書署(도화서) : 그림에 관한 일을 맡은 기관으로서 그 관
 원은 별제(別提), 선화(善畵), 선희(善繪), 화리(畵吏)
 화리(繪吏).
 典獄署(전옥서) : 죄수를 가두는 곳으로서 지금의 교도소인
 마. 그 관원은 주부(主簿), 봉사(奉事), 참봉(參奉).
 活人署(활인서) : 병자를 치료해 주는 기관이나 그 관원으로
 서는 별제(別提), 참봉(參奉).
 瓦署(와선) : 기와를 맡은 기관으로서 그 관원은 별제(別提)
 殿陵(전릉) : 각 대결의 전과능(陵)의 산소(塋)에는 다음관
 원이 있다. 영(令), 별전(別檢), 참봉(參奉).
 歸厚署(귀후서) : 관(棺)을 만들고 장사를 맡은 기관으로서
 그 관원은 별제(別提).

2. 西班牙官衙(서반관아)

中樞府(중추부) : 곧부(尙書)관(文武堂上官)으로서 부임자(無
 任者)를 대우하는 기관으로서 래조(來朝) 중추원(中樞)로 하였
 으며 정종(定宗) 때에 삼군부(三軍府)로 고치고 세조 때
 에는 중추부(中樞)로 다시 고쳤는데 서(西)관(西樞), 홍(鴻)관(鴻樞)
 라고도 한다. 여기 소속 관원은 다음과 같다.
 영사(領事) : 영(令), 별전(別檢), 판사(判事), 지사(知事),
 영사(領事)의 정이 겸임함, 판사(判事), 지사(知事).

동지사(同知事), 첨지사(僉知事), 경력(經歷), 도사(都
 事).
 五衛都摠府(오위 도총부) : 오위의 총괄권을 가진 관청으로서
 문종(文宗) 때 삼군부(三軍府)를 개칭(改稱)한 것인데
 그 소속 관직은 다음과 같다.
 도총관(都摠管), 부총관(副摠管), 경력(經歷), 도사(都
 事).
 五衛(오위) : 오위는 다음과 같다. 의흥위(義興衛)는 중위(中
 衛), 용양위(龍驤衛)는 좌위(左衛), 호병위(虎賁衛)는
 우위(右衛), 충과위(忠佐衛)는 전위(前衛), 충무위(忠
 武衛)는 후위(後衛)이 오위에 각기 다음과 같은 관직이
 있다.
 장(將), 상호군(上護軍), 대호군(大護軍), 호군(護軍)
 부호군(副護軍), 사직(司直), 부사직(副司直), 사과(司
 果), 부장(部將), 부사과(副司果), 사정(司正), 부사정
 (副司正), 사맹(司猛), 부사맹(副司猛), 사용(司勇),
 부사용(副司勇).
 訓練院(훈련원) : 훈련원에는 다음과 같은 관직이 있다. 지
 사(知事) 혹은 상사(相事), 도정(都正), 정(正), 부정
 (副正), 첨정(僉正), 판관(判官), 주부(主簿), 참근(參
 軍), 봉사(奉事).
 宣傳官廳(선전관청) : 왕의 측근에서 항상 호위하고 받드는
 곳으로서 전부(前部)관(前部)으로 불리웠는데 이 선전관(宣
 傳官)에는 당상관(堂上官)과 참상관(參上官), 참하관(參下
 官) 그리고 문신겸관(文臣兼官) 등이 있어서 그 품계는

정(正)으로부터 중(中)九품까지의 선전관이 있음.
 世子翊衛司(세자익위사) : 세자를 모시고 호위하는 관청인데
 출경시(率更寺), 계방(桂房)으로 부르며 있으며 이 관
 청에는 다음과 같은 관원이 있다.
 좌익위(左翊衛), 우익위(右翊衛), 좌사어(左司禦), 우
 사어(右司禦), 좌익찬(左翊贊), 우익찬(右翊贊), 좌위
 속(左衛率), 우위속(右衛率), 좌부속(左副率), 우부속
 (右副率), 좌시직(左侍直), 우시직(右侍直), 좌제마(左
 洗馬), 우제마(右洗馬).
 世孫衛從司(세손위종사) : 세손을 호위하는 곳으로서 다음과
 같은 관직이 있다. 좌장사(左長史), 우장사(右長史),
 좌종사(左從史), 우종사(右從史).
 守門將廳(수문장청) : 각 성문을 지키는 수문장(守門)은 참상관
 (參上官)과 참하관(參下官)이 있으니 중(中)六품으로 부리
 중(中)九품까지의 수문장이 있다.
 訓練都監(훈련도감) : 군사(軍) 교육, 훈련시키는 관청으로서
 다음과 같은 관직이 있다. 도제조(都提調)의 정이 겸임
 함(兼) 제조(提調) || 호조판서 혹은 병조판서가 겸임함, 대장
 (大將), 중군(中軍), 별장(別將), 천총(千總), 3별장
 (局別將), 파총(把總), 종사관(從事官),
 禁衛營(금위영) : 수도(首都) 서울을 호위하고 지키는 영(營)
 으로서 다음과 같은 관직이 있다. 도제조(都提調)의 정
 이 겸임함, 제조(提調) || 병조판서가 겸임함, 대장(大
 將), 중군(中軍), 별장(別將), 천총(千總), 기사장(騎
 士將), 파총(把總).

御營廳(어영청) : 왕실(王室)을 호위하고 대결을 지키는 영
 으로서 다음과 같은 관직이 있다. 도제조(都提調)의
 정이 겸임함, 제조(提調) || 병조판서가 겸임함, 대장
 (大將), 중군(中軍), 별장(別將), 천총(千總), 별부
 천총(別後部千總), 기사장(騎士將), 파총(把總).
 守禦廳(수어청) : 외적(外賊)을 막는 영(營)이나 다음과 같은
 관원이 있다. 사(使), 중군(中軍), 별장(別將), 천총
 (千總), 종사관(從事官).
 總戎廳(총용청) : 최초(崔初)는 수원(水原) 진부의 군부를 맡았
 는데 영조 때에 경리청(經理廳)으로 하였다가 총용청으
 로 하였으며 한의 총위영(摠衛營)이라고도 하였는데 이
 기 관직은 다음과 같다. 사(使), 중군(中軍), 천총(千
 總), 파총(把總), 초관(哨官).
 南漢山城(남한산성) : 남한산성에는 다음의 관원이 있다. 수
 성장(守城將) || 판주(判主)가 겸임함, 우영별장(留營別將)
 성기별장(城機別將), 초관(哨官).
 北漢山城(북한산성) : 북한산성에는 다음의 관원이 있다. 판
 성장(管城將), 파총(把總), 초관(哨官).
 護衛廳(호위청) : 임금을 호위하는 관청으로서 다음과 같은
 관원이 있다. 대장(大將) || 현임 혹은 원임대신 또는 임
 금의 장인(將)이 겸임함(兼) 별장(別將).
 龍虎營(용호영) : 즉직 또는 왕을 호종하는 것을 임의로 하
 는 군영(軍營)이바 겸사부(兼司僕)과 내금위(內禁衛), 우림위
 군(羽林衛軍)을 통합한 것이어서 금위청(禁衛廳)이라고
 도 하였는데 그 소속 관직은 별장(別將), 장(將), 장수(將

한대 겸사복장(兼司僕將) 또는 내금위장(內禁衛將), 우
림위장(羽林衛將)이라고 하였음.
捕盜廳(포도청) · 도적울잡고 수사하는 현재의 경찰과 같은
기관이다. 그 관직으로서는 다음과 같다. 대장(大將),
중사관(從事官).

管理營(관리영) · 개성(開城)에 있는 진위 근영이며 다음과
같은 관원이 있다. 사(使) 2개성 육수가 겸임함, 중군
(中軍), 별장(別將), 천총(千總), 중사관(從事官), 중
鎭撫營(진위영) · 강화(江華)에 있는데 그 관원은 다음과 같
다. 사(使) 2개화육수가 겸임함, 중군(中軍), 진영장(鎭
營將), 천총(千總), 파총(把總), 중사관(從事官).

武官外官職(무관의관직) · 무관으로서 각 지방의 관직은 각
도(各道)에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가 있는데 그중 한
명은 관찰사 즉 감사가 겸임한다. 그 아래 직속 또는
각 지방에 방어사(防禦使), 청결제사(倉節制使) 2명, 사(司)
고랑(古郞) · 육부(虞侯), 동청결제사(同倉節制使), 진영장(鎭
營將), 민호(民戶), 절제도위(節制都尉), 감육관(監牧
官), 권관(權管) 등 벼슬이 있다. 그리고 수군(水軍) 즉
해군에는 수군통제사(水軍統制使)가 있고 청결제사(倉
節制使), 동청결제사(同倉節制使), 민호(民戶) 등이 있
다.

3. 官職 및 品階

內命婦(내명부) · 내명부라 함은 궁안에 있는 여인의 벼슬을
말함인데 여기에 상궁(尙宮)이라는 궁직(宮職) 즉 궁녀

의 직함이고 빈(嬪)으로부터 숙원(淑媛)까지는 왕의 후
궁(後宮)인데 그 벼슬 이름과 직급(職品)은 다음과 같
다. 그리고 직급에는 정(正)과 중(從)이 있고 각 九품
(品)으로 되어 있으니 그 계단이 十八계단이 있는 셈이
다.

빈(嬪) 2정 1품, 귀인(貴人) 2중 1품, 소의(昭儀) 2정
2품, 숙의(淑儀) 2중 2품, 소용(昭容) 2정 3품, 숙용
(淑容) 2중 3품, 소원(昭媛) 2정 4품, 숙원(淑媛) 2중
4품

상궁(尙宮) · 상의(尙儀) 2정 5품, 상식(尙食) 2중 5품
상침(尙寢) · 상공(尙功) 2정 6품, 상정(尙正) · 상기(尙
記) 2중 6품, 전빈(典賓) · 전의(典衣) · 전선(典膳) 2정
7품, 전설(典設) · 전제(典製) · 전언(典言) 2중 7품,
전찬(典贊) · 전식(典飾) · 전악(典樂) 2정 8품, 전등(典
燈) · 전채(典彩) · 전정(典正) 중 8품, 즉상(奏商) · 즉각
(奏角) 2정 9품, 즉변정(奏變徵) · 즉변(奏變) · 즉우(奏
羽) · 즉변궁(奏變宮) 2중 9품.

外命婦(외명부) · 서자(庶子)와 재가(再嫁)를 한 자에게는 좌
命婦(좌명부) · 서자(庶子)와 재가(再嫁)를 한 자에게는 좌
(爵)을 봉하지 아니하고 개가(改嫁)한 자의 봉작(封爵)
은 추탈(追奪)한다. 왕비의 친어머니, 세자의 딸과 중
친으로서 二품이상의 처는 음호(邑號)를 병용(並用)한
다.

王室關係(왕실관계) · 공주(公主) 2왕의 처녀(嫡女), 응주
(翁主) 2왕의 서녀(庶女), 부부인(府夫人) 2왕비의 친어
머니, 이상은 정 1품 봉보부인(奉保夫人) 2왕의 유모(媼) 중

一品, 근주(君主) 2왕세자의 처녀(正二品, 현주(縣主) 2
왕세자의 서녀(正三品)

宗親妻(종친의처) · 부부인(府夫人) 2대군의 처(正一品, 근
부인(郡夫人) 2왕자인(王의 처) 正一品, 현부인(縣夫人)
正 · 從三品, 신부인(愼夫人) 2왕상관의 처(正三品, 신인
(慎人) 正 · 從三品, 혜인(惠人) 正 · 從四品, 온인(溫人) 正
· 從五品, 순인(順人) 正 · 從六品.

文武官妻(문무관의의처) · 정경부인(貞敬夫人) 正 · 從一品, 정부
인(貞夫人) 正 · 從二品, 숙부인(淑夫人) 2왕상관의 처(正
三品, 숙인(淑人) 正 · 從三品, 영인(令人) 正 · 從四品, 공
인(恭人) 正 · 從五品, 의인(宜人) 正 · 從六品, 안인(安人)
正 · 從七品, 단인(端人) 正 · 從八品, 유인(孺人) 正 · 從九品

4. 東班官職(동반관직) 2문관

문관의 관직으로서 종친(宗親)은 왕의 친족, 부계친(父系
親)으로서 四대손까지로 하고 의빈(儀賓)은 왕과 왕세자의
사위를 말하는 것이다.

正一品 · 대광보부(大匡輔國崇祿大夫) 2의정, 보극궁
목대부(輔國崇祿大夫), 종친이면 현목대부(顯祿大夫),
홍목대부(興祿大夫), 의빈이면 유목대부(綏祿大夫), 성
목대부(成祿大夫).

종一品 · 승목대부(崇祿大夫), 승정대부(崇政大夫), 종친이
면 의덕대부(宜德大夫), 소덕대부(昭德大夫), 의빈이면
정덕대부(靖德大夫), 명덕대부(明德大夫).
正二品 · 정헌대부(正憲大夫), 자헌대부(資憲大夫), 종친이

면 중의대부(中義大夫), 승헌대부(承憲大夫), 의빈이면
봉헌대부(奉憲大夫), 통헌대부(通憲大夫).

從二品 · 가의대부(嘉義大夫), 가정대부(嘉靖大夫), 가선대
부(嘉善大夫) 종친이면 중의대부(中義大夫), 소의대부
(昭義大夫), 의빈이면 자의대부(資義大夫), 근의대부
(順義大夫).

正三品 · 통정대부(通政大夫), 종친이면 명선대부(明善大夫)
의빈이면 봉선대부(奉順大夫) (이상은 당상관(堂上官)
의 품계이다) 통훈대부(通訓大夫) 종친이면 창선대부(彰
善大夫), 의빈이면 정순대부(正順大夫).

從三品 · 중직대부(中直大夫), 중훈대부(中訓大夫) 종친이면
보신대부(保信大夫), 자신대부(資信大夫), 의빈이면 명
신대부(明信大夫), 둔신대부(敦信大夫)

正四品 · 봉정대부(奉正大夫), 봉렬대부(奉列大夫), 종친이
면 선위대부(宣徽大夫), 광위대부(廣徽大夫).
從四品 · 조산대부(朝散大夫), 조봉대부(朝奉大夫), 종친이
면 봉성대부(奉成大夫), 광성대부(光成大夫).

正五品 · 통덕랑(通德郎), 통선랑(通善郎) 종친이면 중직랑
(通直郎), 명직랑(明直郎)
從五品 · 봉직랑(奉直郎), 봉훈랑(奉訓郎) 종친이면 근결랑
(謹節郎), 신결랑(慎節郎).

正六品 · 증의랑(承議郎), 증훈랑(承訓郎) 종친이면 증공랑
(從公郎)
從六品 · 신교랑(宣敎郎), 신무랑(宣務郎)
正七品 · 무공랑(武功郎)

從七品.. 계공랑(啓功郎)
正八品.. 승사랑(承仕郎)
從八品.. 승사랑(承仕郎)
正九品.. 봉사랑(從仕郎)
從九品.. 장사랑(將仕郎)

5. 西班(官職)(서반관직) 二品官

正一品으로 부리 품 두 품까지는 동반관직과 같다.
正三品.. 절충장군(折衝將軍), 당상관(堂上官), 어모장군(禦侮將軍)

從三品.. 건공장군(建功將軍), 보공장군(保功將軍)
正四品.. 진위장군(振威將軍), 소위장군(昭威將軍)
從四品.. 정략장군(定略將軍), 선략장군(宣略將軍)
正五品.. 파의교위(果毅校尉), 총의교위(忠毅校尉)
從五品.. 현신교위(顯信校尉), 창신교위(彰信校尉)
正六品.. 용용교위(救勇校尉), 진취교위(進取校尉)
從六品.. 여경교위(勵節校尉), 병경교위(秉節校尉)
正七品.. 처순부위(迪順副尉)
從七品.. 분순부위(奮順副尉)
正八品.. 승의부위(承義副尉)
從八品.. 수의부위(修義副尉)
正九品.. 효력부위(効力副尉)
從九品.. 건력부위(展力副尉)

6. 官職(品階)(관직(品階) 文·武)

정一品관.. 대군(大君), 군(君) 正一品부터 從二품까지 있음

공신(功臣) 및 왕비의 아버지는 부원(府院)을 더한다.
영의정(領議政), 좌의정(左議政), 우의정(右議政), 도
계조(都提調)의 정이 점임하는 관직임, 사(師), 부(傅)
!! 사, 부는 제자시강원의 관직으로서 영의정, 좌의정
이 점임하는 관직임, 위(尉)!! 왕의 사위로서 공주에 장
가든 자에 정一品 혹은 정二품을 계수한다, 감사(監事
!!의 정이 점임하는 관직임)

從一品官.. 군(君), 위(尉), 좌찬성(左贊成), 우찬성(右贊成), 판사(判事), 계한(提學) 正三品까지 관직, 사부(師傳) 正二品까지 관직

正二品官.. 군(君), 위(尉) 正三品까지 관직
從二品官.. 군(君), 위(尉) 正三品까지 관직
正三品官.. 군(君), 위(尉) 正三品까지 관직
從三品官.. 군(君), 위(尉) 正三品까지 관직

從二品官.. 군(君), 위(尉) 正三品까지 관직
從三品官.. 군(君), 위(尉) 正三品까지 관직
從四品官.. 군(君), 위(尉) 正三品까지 관직
從五品官.. 군(君), 위(尉) 正三品까지 관직

군총제사(水軍統制使), 겸사복장(兼司僕將), 내금위장(內禁衛將), 별장(別將) 正三品까지 있음

正三品官.. 부위(副尉) 正三品까지 있음
從三品官.. 부위(副尉) 正三品까지 있음
從四品官.. 부위(副尉) 正三品까지 있음
從五品官.. 부위(副尉) 正三品까지 있음
從六品官.. 부위(副尉) 正三品까지 있음
從七品官.. 부위(副尉) 正三品까지 있음
從八品官.. 부위(副尉) 正三品까지 있음
從九品官.. 부위(副尉) 正三品까지 있음

度使), 방어사(防禦使), 첨절제사(僉節制使), 우부(副使) 正四品까지 있음, 기사장(騎士將), 선전관(宣傳官) 正三品까지 있음

正四品官.. 수정(守正), 견첨(典籤), 사인(舍人), 장령(掌令), 시강관(侍講官), 응교(應教), 진선(進善), 필선(弼善), 겸필선(兼弼善), 사예(司藝), 사업(司業), 부례(奉禮) 호군(護軍), 별제(別提) 正三品까지 있음, 첨정(僉正) 正四품까지 있음, 선전관(宣傳官), 도선(導善), 우부(副使), 계감(提檢) 正四품까지 있음

從四品官.. 경령(經歷), 부응교(別應教), 서응(庭尹), 수(守) 正四品까지 있음, 참(倉)의 관직, 부수(副守), 교감(校勘), 부호(副護軍), 군수(郡守), 유영별장(留營別將), 성기(城機), 별장(別將), 파총(把摠), 외방첨파총(外方兼把摠) 선전관(宣傳官), 계감(提檢), 동첨절제사(同僉節制使) 正四品까지 있음

正五品官.. 영(令) 正三品까지 있음, 건부(典簿), 검상(檢詳) 정랑(正郎), 지평(持平), 좌익위(左翊衛), 우익위(右翊衛), 사(司)의 관직, 헌납(獻納), 시독관(侍讀官), 교리(校理), 겸교리(兼校理), 문헌(文學), 겸문헌(兼文學), 직강(直講), 기록관(記注官) 正五품까지 있음, 친의(贊儀), 별좌(別坐) 正五품까지 있음, 전훈(典訓), 건구(典需), 사직(司直)

從五品官.. 부령(副令) 正三品까지 있음, 판관(判官), 도사(都事) 正九품까지 있음, 별좌(別坐), 부교리(副校理), 좌권독(左勸讀), 우권독(右勸讀), 좌사어(左司祭), 우

城), 마전(麻田), 고양(高陽), 김포(金浦), 교하(交河)가평(加平)

[홍천도] 임천(林川), 단양(丹陽), 괴안(泰安), 현산(韓山), 서천(舒川), 면천(沔川), 태안(天安), 서산(瑞山), 피산(槐山), 유천(沃川), 온양(溫陽), 대흥(大興) [경상도] 함천(陔川), 초계(草溪), 청도(淸道), 영천(永川), 예천(醴泉), 영주(榮州), 흥해(興海), 양산(梁山), 함안(咸安), 김산(金山), 풍기(豊基), 무양(淸陽) [전라도] 보성(寶城), 인산(益山), 고부(古阜), 영암(靈岩), 영광(靈光), 진도(珍島), 낙안(樂安), 승창(淳昌), 금산(錦山), 진산(珍山), 김제(金堤)

[황해도] 봉산(鳳山), 안악(安岳), 재령(載寧), 수안(遂安), 백천(白川), 신천(信川), 금천(金川)

[강원도] 평해(平海), 홍천(通川), 정선(旌善), 고성(高城), 간성(杆城), 평창(平昌)

[황성도] 문천(文川), 고원(高原)

[평안도] 상원(祥原), 덕천(德川), 개천(价川), 가산(嘉山), 관산(郭山), 승천(順川), 회천(照川), 벽동(碧潼), 용산(雲山), 박천(博川), 위천(渭原)

從五品 縣令

[정기도] 용인(龍仁), 진위(振威), 영평(永平), 양천(陽川)

[충청도] 문의(文義)

[경상도] 영덕(盈德), 경산(慶山), 고성(固城), 의성(義城), 남해(南海)

[전라도] 창평(昌平), 용담(龍潭), 임피(臨陂), 민성(萬頃), 금구(金溝)

[황해도] 신계(新溪), 문화(文化) 牛峰 이라고도 하였음 [강원도] 금성(金城), 용진(蔚珍), 후곡(歙谷) [평안도] 용강(龍岡), 영주(永柔), 증산(甑山), 삼동(三登), 죽안(順安), 강서(江西)

從六品 縣令

[정기도] 지평(砥平), 포천(抱川), 죽성(積城), 파천(果川), 금천(衿川), 연천(漣川), 음곡(陰竹), 양성(陽城) 양지(陽智)

[충청도] 홍산(鴻山), 계천(堤川), 덕산(德山), 평택(平澤), 직산(稷山), 회인(懷仁), 정산(定山), 청양(靑陽), 연평(延豐), 음성(陰城), 청안(淸安), 은진(恩津)

진덕(鎭德), 회덕(懷德), 연산(連山), 이성(尼城) 작산(作山) 이라고도 하였음, 부여(扶餘), 석성(石城), 비인(庇仁), 남포(藍浦), 진천(鎭川), 결성(結城), 보령(保寧), 해미(海美), 당진(唐津), 신창(新昌), 예산(禮山), 목천(木川), 권의(全義), 연기(燕岐), 보은(報恩), 영천(永川), 영동(永同), 황간(黃澗), 청산(靑山), 아산(牙山)

[경상도] 개령(開寧), 삼가(三嘉), 의녕(宜寧), 하양(河陽), 용궁(龍宮), 봉화(奉化), 청하(淸河), 언양(彦陽), 칠원(漆原), 진해(鎭海), 진보(眞寶), 문정(閔慶)

황창(咸昌), 지례(知禮), 안의(安義) 安陰 이라고

도 하였음, 고령(高靈), 현풍(玄風), 산청(山淸) 산음(山陰) 이라고도 하였음, 단성(丹城), 근위(軍威), 비인(比安), 의흥(義興), 신녕(新寧), 예안(禮安), 연일(延日), 장기(長者), 영산(靈山), 창녕(昌寧), 사천(泗川) 기장(機張), 용천(熊川), 차인(慈仁), 영양(英陽) [전라도] 광양(光陽), 용인(龍安), 함열(咸悅), 부안(扶安), 함평(咸平), 장진(原津), 옥과(玉果), 고산(高山) 차인(慈仁), 옥구(沃溝), 남평(南平), 홍도(興德) 정읍(井邑), 고창(高敞), 무장(茂長), 부안(務安), 구례(求禮), 무성(谷城), 은봉(雲峰), 임실(任實), 장수(長水) 진안(鎭安), 동부(同福), 화강(和順), 홍양(興陽), 해남(海南), 대정(大靜), 정의(旌義) 珍原 이라고도 하였음 [황해도] 장연(長淵), 송화(松禾), 장영(原翎), 은골(殷栗), 로산(鹿山), 장음(江陰) [강원도] 평강(平康), 금화(金化), 남천(狼川), 후천(洪川), 양구(楊口), 인계(麟蹄), 횡성(橫城), 안협(安峽) [황성도] 홍원(洪源), 이성(利城) [평안도] 양덕(陽德), 명산(孟山), 태천(泰川), 강동(江東), 은산(殷山) 이상과 같이 의방전적은 그 저음(州邑)에 따라 이조 역대의 왕조를 거치는 동안 그 고을의 등급이 오르므로 내려기도 하였던 것이며 그 외에 다음 관찰사가 있는 고을의 부윤, 무사를 관찰사가 겸임하고 있으므로 그 대신 서윤(庶尹) 판관(判官)을 배치하고 있다.

7. 官職에 關한 一般常識

從四品 判官(庶尹) 平壤 從五品 判官(判官) 公州(公州), 대구(大丘) 大邱인, 진주(全州), 제주(濟州), 해주(海州), 원주(原州), 함흥(咸興) 追贈(추증) : 추증이라 함은 본인이 죽은 뒤에 벼슬을 누른 계도로서 가문을 빛내게 하는 일종의 명예직인데 추증의 기준을 보면 종친과 등(등) 판으로서 실직(實職) 二품인 자는 그의 상대를 추증한다. 여기 그 부모는 본인의 품계(品階)에 불과하고 조부모 증조부모는 각각 一품계를 강등(降等)한다. 즉은 처는 그 남편의 벼슬에 준한다. 대군(大君)의 장인은 정 一품, 왕자(王子)의 장인은 종 一품을 증정(贈)하고 친공신(親功臣)이면 비록 벼슬의 직위가 낮아도 정 三품을 증정한다. 一품 공신의 아버지는 종 2품(純忠), 2품 공신의 아버지는 종 3품(純忠), 3품 공신의 아버지는 종 4품(純忠), 4품 공신의 아버지는 종 5품(純忠), 5품 공신의 아버지는 종 6품(純忠)을 봉한다. 왕비의 측근 아버지에게는 영의정을 추증하고 그 이상의 3대는 다로 정한다. 1품은 (國舅推恩)의 예에 의한다. 제자인(世子嬪)의 측근 아버지에게는 좌의정을 추증하고 대군의 장인에게는 2품의 정을, 그리고 왕자의 장인에게는 좌찬성을 추증한다.

贈諡(중시) 벼슬 길에 있던 자가 죽은 후 나라에서 시호(諡號)를 보내는 기원은 다음과 같다. 종친과 문·무관으로서 정·정·삼 이상의 실직에 있던 자에게는 시호를 추증한다. 그러나 친공신이면 비록 직품이 낮다고 하더라도 시호를 추증한다. 대제학의 벼슬은 정·삼에 속하여 비록 종·삼인데 제학이라도 또한 시호를 추증한다. 역랑과 도학이 고명한 유현(儒賢)과 절의(節義)에 죽은 사람이 으로서 현저한 자는 비록 정·삼이 아니더라도 특별히 시호를 내린다.

幼學·士大夫의 子孫으로서 벼슬하지 아니한 선비.士林·벼슬하지 않고隱居하는 德望이 높은 선비. 筮任·처음으로 官職에 나감. 薦舉·士林에서 學行이 뛰어나고 德望이 높은 在野人物을 現職高官이나 地方官의 추천으로 벼슬에 발탁하는 것을 말함.

除授·벼슬에 一定한 추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王이 直接任命하거나 昇進시키는 것. 이를 除拜라고도 한다. 檢校·高麗末 李朝初에 定員以上으로 벼슬 자리를 臨時로 들리거나 公事를 맡기지 아니하고 이름만 가지게 할 경우 그 벼슬 앞에 붙이던 말 卽 臨時職 또는 名譽職이다. 例·檢校軍器監.

知製教·王의 諭示·敎書 등의 文書를 制述하여 바치는 任務를 맡은 官職으로 대개 弘文館의 堂上官以下 六品以上의 官員이 兼職한다.

廳앞에 行字를 붙인다. 이를테면 正三品인 通訓大夫(堂下官)의 品階를 가진 官員이 從四品職인 金川郡守가 되면 通訓大夫行金川郡守라고 한다. 守職·品階는 낮고 職位가 높으면 守職이라 하는 데 所屬官廳앞에 守字를 붙인다. 이를테면 正三品인 通政大夫(堂上官)의 品階를 가진 관원이 從二品職인 慶州府尹이 되면 通政大夫守慶州府尹이라고 한다. 大提學·大提學은 文衡이라고도 한다. 文衡은 弘文館大提學 藝文館大提學에 成均館大司成이나 知事를 兼任하여야만 한다. 大提學은 正二品의 官階이지만 學問과 道德이 뛰어나고 家門에 두 하자가 없는 碩學 碩儒만이 오를 수 있는 地位인데 學者와 人格者로서의 最高地位라고 할 수 있어 本人은 勿論 一門의 名譽로 여겼다. 大提學後 補選定은 前任 大提學이 後補者를 薦거하면 이를 三政 丞 左右贊成 左右參贊 六曹判書 漢城府判尹 등이 모여多數決로 定한다. 大提學은 本人이 辭任하지 않는 限終身職이다. 三司·李朝時代의 弘文館 司憲府 司諫院을 合稱한 말로서 三司의 官員은 學識과 人望이 두루를 사람을 任命한다. 國家 重大事에 關하여는 連合하여 三司 合啓를 올리는 일과 合同伏閣이라 하여 소주 官員이 閣門에 업드려 王의 聽從을 强請하기도 한다. 大院君·王의 代를 이을 嫡子孫이 없어 傍系 親族이 王의 大統을 이어 받는데 그 王의 親父에게 주는 職位 府院君·李朝代의 王의 大人 또는 正一品 功臣에게 주던 稱

號 받은 사람의 實地名을 앞에 붙인다. 例·海平府院君 原從功臣·各等功臣以外의 小功이 있는 者에게 주는 稱號 清白吏·清白吏는 그의 人品, 經歷, 治績 등이 能히 모든 官吏의 모범이 될 만한 人物이어야만 清白吏로 錄選된다. 清白吏로 뽑히면 品階가 오르고 그 子孫은 陰德으로 벼슬할 수 있는 特典이 있다. 따라서 本人은 身은 一門의 큰 영예로 여기었다. 清白吏는 議政府, 六曹, 漢城府의 二品以上의 官員과 大司憲, 大司諫 등이 後補者를 嚴格한 審査를 거쳐 王의 裁可를 얻어 錄選한다. 賜牌地·高麗·李朝 때 國家에 功을 세운 王族과 官吏에게 주는 土地. 土地의 收租權을 個人에게 이양한 것으로 一代限과 三代世襲의 두 종류가 있다. 賜牌에 可傳永世의 名文이 있는 것은 三代世襲을 許諾한 것이고 이러한 名文이 없으면 一代限으로 國家가 還收키로 한 것이다. 還收하지 않고 代代로 永世私有化가 됐다. 宣祖以後에는 賜牌記錄만 주고 實際로 土地는 賜給하지 않았다.

禮葬·正一品以上의 文武官 및 功臣이 卒하면 國家에서 禮儀를 갖추어 葬禮를 치르는 것으로 一種의 國葬이다. 以外에 禮葬範圍는 대체로 祭贊·判書를 지낸 사람 또는 特旨가 있는 경우에 限하였다. 葬日·官員이 卒하면 四品以上은 三個月, 五品以下는 一個月이 지나야 葬事한다. 墓地·墓地는 境界를 定하여 耕作, 牧畜을 禁하고 墓地限界는 一品은 墳墓中心으로 四面九十步, 二品은 四面八十步, 三品은 四面七十步, 四品은 四面六十步, 五品이

下는 四面五十步, 七品以下와 生員, 進士는 四面四十步 庶人은 四面十步 不遷位·德望이 높고 國家에 큰 功勞가 있는 사람에게 永遠히 祠堂에 모시도록 國家에서 許可한 神位이다. 號牌·李朝 때 十六歲以上の 男子가 차고 다니던 牌. 지금의 住民登錄證과 같다. 表面에는 住所, 姓名, 職業, 本貫 年齡 등을 새기고 이면에는 發行 當該의 官廳名을 格印했다. 身分에 따라 牙牌, 角牌, 黃楊木牌, 小方木牌, 大方木牌로 區分되었다. 堂上官·官階의 區分. 文官은 正三品인 通政大夫以上, 武官은 正三品인 折衝將軍以上을 말한다. 堂下官·文官은 正三品인 通政大夫以下 從九品인 將任郎外 將, 武官은 正三品인 禦侮將軍以下 從九品인 展力副尉까지를 通稱한다. 參上參下·堂下官中 六品以上은 參上 七品以下는 參下 또는 參外라고도 한다. 陞六·七品以下의 官員이 六品 卽 參上으로 오르는 말이다. 三公六卿·李朝 때 領議政·左議政·右議政 등 三政丞을三公이라 하고 六曹의 判書를 六卿이라 한다. 教旨·李朝 때에 王이 臣下에게 주던 辭令狀. 字·家名外에 붙이는 成人의 別名. 男子 二十歲가 되며 冠禮(아)로써 成人이 되는 禮式을 行하여 成人이 되면 字가 붙는다. 職官·官職者들의 論功行賞과 功臣들의 일을 맡은 官府로서 忠數府의 別稱임.

暗行御史·王이 直接信任하는 諫은 堂下官에서 뽑아 秘密히 地方에 보내 現職·前職 地方官의 善行과 非行·百姓의 事情·民政·軍政의 實情, 諷은 美談·烈女·孝子의 行績 등을 조사 보고 하게 하는 臨時職 御史로 뽑혀 王에게서 封書를 받으면 집에 들리지 않고 即時 出發한다 驛馬와 驛卒 등을 利用할 馬牌를 받는다. 必要할 때에는 馬牌로써 自己의 身分을 밝히고(御史出頭) 非行이 큰 守令이면 즉시 封庫罷職하며 地方官을 代身하여 裁判도 한다. 父母喪이나 國葬이 있어도 任務中에는 돌아 오지 못한다.

各官의 任期·中央 各官司의 六品以上 堂上官은 三〇月, 兵曹判書 觀察使 留守는 二四月, 守令은 三〇月 乃至 六〇月, 兵使水使는 二四月
 權知·새로 文科에 及 第한 사람을 承文院 校書館에 分屬하여 權知라 는 名稱으로 實務를 遂行하게 한다. 卽비후 後補者 宰相·國王을 補弼하고 文武 百官을 指揮監督하는 地位에 있는 二品以上의 官職을 通稱한다.
 祭酒·成均館의 堂上官職으로 補하되 學行과 名望이 높으면 比를 除授한다.
 郎廳·各官司에 勤務하는 堂下官의 總稱이다
 配享·功臣 名臣 또는 學德이 높은 學者의 神主를 宗廟나 文廟 書院 등에 享祀하는 말
 旌閣·特異한 行實에 對한 國家의 表彰 忠臣 孝子 烈女 등을 그들이 상든 고을에 旌門을 세워 表彰하였다.
 加資·正三品 通政大夫 以上의 品階에 올라 資를 增한다.

致祭·國家에 功勞가 많은 사람 또는 學行과 德望이 높은 사람에게 死後國王이 내려주는 祭祀
 都巡撫使·李朝때 戰時나 地方에서 反亂이 일어났을 때 軍務를 統轄하는 臨時官職
 統制使·壬辰亂때 設置 全羅 慶尚道 등 三道의 水軍을 統轄하는 武官職 全羅水使가 兼職한다.
 統禦使·李朝後期에 京畿 忠淸 黃海道 등 三道의 水軍을 統轄하는 武官職 京畿水使가 兼職한다.
 領事 領事 判事 知事 同知事 등의 官職은 官司위에 領事 監判 知 同知字를 두고 事는 官司 밑에 쓴다. 例·領事 寧府事 監春秋館事 同知中樞府事
 院相·王이 昇遷하면 잠시 政府를 맡던 臨時職 新王이 即位하였으나 喪中이므로 卒哭까지와 或은 王이 어려서 政務의 能力이 없을 때 大妃의 攝政과 함께 衆望이 있는 元老宰相 及 또는 原任者中에서 몇분의 院相을 뽑아 國事를 處決한다.
 陵·王과 王妃의 墓所
 園·王世子 또는 王世孫으로 책봉된 뒤에 王位에 오르지 못하고 死亡한 분과 王의 生母로 先王妃가 아닌 분의 墓所
 大君·王妃가 出生한 王子
 君·王의 正室以外에서 出生한 王子 또는 功이 있는 臣下에게 君을 封한다. 王位에서 물려 나게 되면 君으로 降稱된다. 例 燕山君 光海君
 公主·王妃가 出生한 딸
 翁主·王의 正室以外에서 出生한 딸

李朝의 科擧制度

1. 由來

各道 監營에서 行하는 鄉試나 中央에서 行하는 生進科 初試를 照帖講이라 한다. 이 照帖講에 及第하면 照帖帖을 주는 데, 이것이 있어야 生進科에 應試할 資格이 附與된다. 이 照帖講을 初試라 하며 여기에 及第하면 李初試·金初試라고 불리겠다. 이리하여 各 地方에서 照帖講에 及第한 사람들이 모여들어 四年만에 한번씩 科擧를 보이는데, 四年一試를 式年試라고 하며 子·午·卯·酉년에 보이는 것이다.
 그리하여 生員科에서는 經書를 暗誦하게 하고 또 거기에 對한 뜻을 물어보는 시험이다. 試驗官에는 上試(當時判書級)·副試(當時判判級)가 있어 應試者를 불러서 열번이나 暗誦을 들어 보기도 하고 장의 通·略·粗·不通의 네 가지로 나누어 通은 二정, 略은 一정, 粗는 半정, 不通은 零정으로 하여 總十四정半 以上에 達하는 者를 及第로 한다. 이 生員科는 經書를 의거 하므로서 講經科 또는 治經科라고도 부른다. 進士科는 製述科라고도 하며 本科試驗에서는 試驗官들이 監席하여 監察를 하였고 借作借筆 등을 못하게 嚴重히 단속하는 한편 題目을 내고 韻字를 定하여 詩를 짓게 하여 時間을 얻도록 命한다. 이에 應試者들은 各自 準備된 筆墨으로 詩를 지어 狀紙에 一八首를 써서 封하여 試驗官에게 내고 退場한다.
 그리면 試驗官들은 그 詩軸을 모아서 于先 卷만 잘 지었

으면 上上 上中 上下 二上 二中 二下 三上 三中 二下 이렇게 定한 뒤 上上은 九정, 下下는 一정으로 等分하여 採點한다. 그리하여 大개 二下(四정)까지를 擇하여 及第로 定했다. 이런식으로 生員, 進士 各一〇〇名式 二〇〇名을 뽑아서 發表하였으며 이 及第者의 發表를 榜이라 하였다. 이 生進科에 及第한 者 가운데 大科 즉 文科에 應試하려는 者는 成均館에 入學을 許可하였고, 四年에 한번씩 一〇〇名式의 生員과 進士를 單出하였던 것이다. 그 다음 大科(文科)에 應試하려면 于先 大科初試에 及第하여야 하는 것인데 文科初試에서는 館試(成均館 시험)에서 五〇名 漢城試에서 四〇名, 鄉試로는 京畿에서 二〇名, 忠淸·全羅道에서 各 二五名, 慶尚道에서 三〇名, 江原·平安道에서 各十五名, 黃海·咸鏡道에서 各一〇名式을 뽑아 大科에 應試할 資格을 주었다.
 이렇게 生進科에 及第한 사람으로 成均館을 가지지 않고도 大科에 應試할 資格을 賦與한 데문에 總二四〇名이 大科에 應試할 수 있게 人員을 定하는 것이었다. 大科에 第一次 試驗을 初場이라고 하는 데 거기에서 經書를 暗誦시키는 것이 마치 生員科에서 試驗하는 것과 同一하다. 第二次 試驗을 中場이라 하는 데 거기에서는 詩賦를 짓는데 마치 進士科에서 行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經書暗誦에 自信있는 사람은 第一次 試驗인 初場에 應試하고 詩賦짓는데 自信있는 사람은 中場에 應試하면 되는 것이다. 대개는 初場에 應試하여 落第한 사람이 中場에 應試하여 及第를 노리는 것으로 第一次 試驗인 初場에서 一六名, 第二次 試驗인 中場에 一六名, 그리고 兩場에서 成績이 優秀하였으나 合格圈內에 들지 못한

사람을 兩場試驗官이 會合하여 選定하는 것인데 이것을 생
劃及第라 한다.

이리하여 大科及第者 三三名을 選定하는 것이다. 大科及
第者人員에 對하여는 아득히 成績이 좋다면 두 三三名以上
은 뽑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으나 成績이 나쁘면 예
는 以下 三三名 혹은 二八名 이렇게 三三名보다 적게 뽑
을 수 있었다. 이렇게 大科及第者가 選定이 되면 最後로 殿
試라는 것이 있었다. 殿試에는 王이 親히 臨席하는 것이지
만 最後의 試驗이라는 뜻이다. 거기에서 簡單하게 對策이
나 表·箋·箴·頌·制·詔 등 어떤 것이나 一篇만 짓게 하
는 것이니 지금으로 말하면 論文을 짓게 하는 것과 같은 것
이다. 이 殿試의 結果를 보아 三三名의 等級을 甲·乙·丙
三等級으로 나누어 第一 장지는 사람이 甲이라 하여 三名
이 다음은 乙이라 하여 七名, 다음은 丙이라 하며 二三名으
로 定하는 데, 이것을 甲·乙·丙三科라 한다.

第一 科를 잘 지은 이로 殿試에서 甲科에 及第한 첫째되는
사람을 壯元郎이라 하고 둘째되는 사람을 榜眼郎이라 하며
셋째되는 사람을 探花郎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生進科에 及
第한 사람에게는 그證書를 白紙에다 써서 죽는 까닭에 白
牌라 하였고, 大科에 及第하면 紅色紙에 써서 죽임으로 紅牌
라 하였다. 生進科初試(照花講)에서 生員科·進士科·大科(第
應試資格試驗인 大科初試(館試)初場(第一次)中場(第
二次試)殿試까지 壯元으로 及第한 才士로 暗誦과 뜻에 잘못
이 없어 七通을 하고 글짓기에 上上으로 當選된 사람이 進
이다. 이런 사람은 또 이 별리 暗行御史로 삼았고 官界昇進

도 빨랐다. 그러므로 科擧에 應試하는 者는 壯元及第者 兩
려고 애를 쓰는 것이었다. 以上은 文士들에게 行하는 試驗
이고 다음은 武人 즉 軍人에 對한 試驗으로 武科라는 것이
있는데, 이 역시 初試殿試殿試의 區別이 있다.

武科初試도 文科初試와 같이 中央과 各道監營에서 行하는
데, 中央(京畿包含)에서 七〇名 慶尚道에서 三〇名, 忠清·
全羅道에서 各二五名, 江原·黃海·咸鏡·平安道에서 各一
〇名式 選拔하여 經一九〇名이 中央에서 行하는 殿試에 應
試하여 다시 그 중에서 二八名을 뽑아 殿試에 應試하도록 하
여 榜(弓)을 쓰게 하는데, 第一 장지는 武士 三三名을 추려 甲
科에 及第케 하고 그중 첫째가는 武士를 壯元郎이라 하고
둘째가는 武士를 榜眼郎이라 하고 셋째가는 武士를 探花郎
이라 함은 文科나 다름이 없다. 그 다음 乙科에 五名, 丙科
에 二〇名을, 各各 選定한다. 以上 文科武科는 所謂兩班집
子 第들에게 限하여 應試할 資格을 賦與하는 까닭에 中人以
下 一般人은 應試할 資格을 갖지 못했던 것이다.

그 다음 雜科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中人들에게 보이는
科擧라 하였다. 거기에 外國語를 배워가지고 譯官으로 用을 하
는 譯科라는 것이 있어 그것도 初試에 漢學(中國語) 二三名,
蒙學(蒙古語)·倭學(日本語)·女眞學(滿洲語) 등은 各各 四
名式을 뽑아 다시 殿試에 가서 漢學(中國語譯官)·一三名 그
다음 蒙學(蒙古語譯官)·倭學(日本語譯官)·女眞學(滿洲語
譯官) 등은 各各 二名式을 選拔하였다. 그리하여 이들은 文
科大官의 隨行員으로서 通譯官으로 用을 하였다. 그 다음 醫
科算科 陰陽科 律科 등이 있었는데 그것도 모두 初試殿試의

區別이 있었다. 이러한 모든 科擧(生進科 大科 雜科)가 四
年만에 한번씩 子 午 卯 酉年에 式年 科擧가 定期的으로 行
하여졌다

그러나 나라에 慶事가 있을 때에는 特別히 增廣科라든지
또는 別試, 王이 成均館에 行次하였다가 거기에서 成均館
學生들에게 試驗을 보이는 謁聖科라는 것이 있으니 이는 式
年外에 치르는 科擧이다. 이 成均館에 王이 行次하여 치르
는 科擧에 及第하는 것을 謁聖及第라 하여 科擧中에 가장 榮
光스런을 及第로서 여기에서 壯元及第하면 대개 暗行御史로
봉리하는 것이 通例로 되어 있었다.

2. 科試의 種類

文科(문과) : 古制科擧의 하나 文官을 뽑던 試驗(大科) 現高
等考試의 장음

司馬(사마) : (榜目) 朝鮮朝때 새로 小科에 合格한 進士 生
員의 이름

武科(무과) : 高麗朝때부터 武官을 뽑던 科擧, 대개 三年마
다 한번씩 式年에 武藝 兵書를 試驗하였는데 初試 覆試
殿試의 세 段階가 있었음

陰任(음신) : 科擧를 거치지 않고 다만 祖上의 恩澤으로 인
은 官職, 南行 生員 進士 幼學 등의 벼슬을 두루 일컬
음

壽職(수직) : 해마다 正月에 八十歲以上의 官員 및 九十歲以
上의 百姓에게 恩典으로 주던 벼슬

增廣(증광) : 朝鮮朝때 나라에 慶事가 있을 境遇에 記念으로
보이던 科擧 三代太宗元年(四〇)에 처음 實施되었으
며 임금의 등극을 祝賀하는 意味로 即位年 또는 이듬해
實施하였으나 十四代宣祖때부터 擴大되어 國家에 慶事
가 있을 때마다 實施되었음

別試(별시) : 朝鮮朝때 나라에 慶事가 있을 時 特別히 보이던
科擧 世宗一年(四一九)에 처음으로 始作

式年(식년) : 子 卯 午 酉 등의 干支가 들어 있는 해의 이름
甲子 丁卯 丙午 癸酉年 등으로 朝鮮朝때도 이해가 들
아오면 科擧를 보이며 戶籍調査를 하였음. 三年마다 들
아오음

監試(감시) : (國子監試) 朝鮮朝에 生員 進士를 뽑던 科擧司
馬試(小科)

親試(친시) : 科擧를 보일 때 임금이 몸소 나와서 시험을 보
임

殿試(전시) : 朝鮮朝때 覆試에서 選拔된 사람에게 王이 몸소
보이던 科擧의 最終의 試驗으로 結果에 따라 甲, 乙,
丙科로 等級을 定하였음 高麗朝 때부터 元나라 制度를 모
방하며 朝鮮朝때 制度化되었음.

重試(중시) : 文科 堂下官을 爲하여 是 科擧 高麗十六代에
宗十七年에 最初로 實施 朝鮮朝 四世世宗九年(一四二
七)에 制度化되었음 十年에 한번씩 實施하여서 이 試

驗에合格한 사람은 堂上正三品の 品階를 與려주었음
 甲科(正科) : 文科履試合格者에게 禮費에서 殿試를보여 成績
 에 따라 나뉘던 세等級의 하나 成績順에 따라 甲、乙、
 丙科로 區分 甲科의 定員은 三人 一等은 壯元郎(從六
 品) 二等은 榜眼郎(正七品) 三等은 探花郎(正七品)
 乙科(副科) : 文科履試合格者를 禮費에서 殿試를보여 成績
 第二位로 七名을 뽑았다.
 丙科(別科) : 文科履試合格者를 禮費에서 殿試를보여 甲、
 乙科外에 二十三人을 뽑았다.

3、科擧制度의 起源

科擧의 發生地는 中國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科擧가
 實施된 것은 高麗 光宗九年(九五八)부터이다.
 當時中國 後周사람으로서 우리나라에 歸化해온 雙冀라는
 榜의 建議로 官吏登用의 方로 科擧를 實施하여 널리 人材를
 求하는 方法이었으니 只今の 普通 高等考試와 같은 것이라
 볼 수 있는 國家考試이다.

4、科擧와 教育制度

李朝의 科擧와 教育制度는 한마디로 말해서 教育是 科擧
 에 應試하기 爲하여 시키는 의에 다른 目的이 없었다고 해

5、科擧及第者의 特權

科擧에 應試하기 爲한 教育을 實施하게 된에는 다음과 같
 은 特權이 附與된 外 없이라 하였다. 卽 各道 監營에서 行하
 는 鄉試나 中央에서 施行하는 生進科의 初試에만 及第하면
 梁初試·金初試·朴初試하여 優待하였고 中央에서 行하는 生
 進科에 及第하면 梁生員·金生員·李生員 또는 鄭進士 金
 進士·朴進士라 하여 殺人罪以下의 罪는 逮捕나 監禁되지
 않았다. 그리고 及第한 사람이 살고 있는 郡落안에는 蘇塗
 나뭇를 ぬ다라게 세었는데 그것은 科擧에 及第한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表示로서 그 郡落을 지방에는 一般人은 敬意를
 表하며 말을 하고 가는 사람은 말에서 내렸으니 科擧에만
 及第하면 그야말로 地上의 自由人으로서 治外法權의 特權
 階級에 屬하게 되었던 것이다.

도 科擧에 及第한 것이었다. 卽 中央에 國立大學으로 成均館이
 있었고 國立高等學校로 四學(東西兩中에 세고 學校)이 있어 所
 謂 兩班집 子弟만을 入學시켜 科擧에 及第할 수 있는 尊비
 교육을 實施하였으며 各地方에는 公立中學校格인 鄉校가 있
 어 地方兩班子弟들을 모아 教育하였고 그의에 私立初等
 中等學校에 該當하는 書堂(書堂)이 있어 中人 常人들의 子
 弟들을 모아 教育하는데 이것이 모두 科擧에 應試하기 爲한
 教育이었다고 할 수 있다.

6、式年文科初試定數

漢城府一百十人 忠淸道二十五人 慶尙道三十人 全羅道二十五人
 江原道十五人 黃海道十人 平安道十三人 咸鏡道十人 通讀
 三十人

7、生進初試定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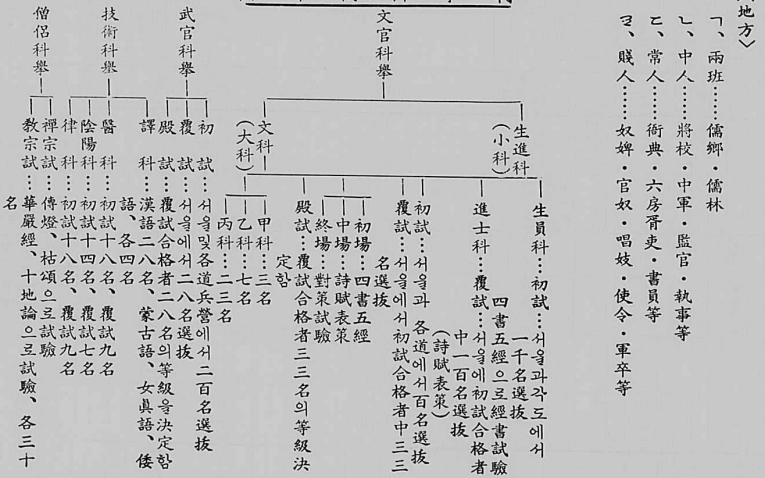
漢城府二百六十人 終同 忠淸道九十八人 慶尙道一百人 全羅
 道九十八人 終同 江原道四十五人 黃海道三十五人 平安道四十五
 人 咸鏡道三十五人 京陸補三十人 合製四十八人

8、科擧及第의 奉告祭

이러한 特權이 附與된 科擧에 及第하기란 그리 쉬운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科擧에 及第하면 先祖의 絶對的인 도움을
 라 하여 及第하고 돌아오면 于先 自己祖上의 墳墓를 찾아다
 니며 奉告祭를 지냈는데 이것을 掃墳이라고도 한다.
 萬一 自己집이 貧寒하여 奉告祭를 지낼 형편이 못되는 境
 遇에는 親戚들의 助金으로라도 盛大히 舉行하는 것이 通例로
 되어 있었다. 當時의 身分階級을 略述하면 다음과 같다.

- △中央▽
- 1、兩班.....文武百官
- 2、中人.....醫·譯·算·律·陰陽科로 守令이 되는 者
- 3、常人.....雜職·書吏·市民等
- 4、賤人.....日守·雜將·皂隸·滄軍·水軍·燧燧軍·
騎保等

朝鮮朝 科擧制



朝鮮時代官職表 (文・武) (經國大典例依)

★ 西班職 (雜) 雜職
○ 兼職 ○ 數字 〇 定員 × 無定員

Table of Korean official positions (文・武) with columns for rank (e.g., 正一, 從一) and specific titles (e.g., 宗親府, 議政府, 承朝賀).

鵝洲申氏鷹巖公派世譜 附錄

Table of Korean official positions (附錄) with columns for rank (e.g., 正一, 從一) and specific titles (e.g., 官署名, 都提調, 內侍府).

朝鮮時代品階表(其一)

宗親·宗親妻·儀者各從一品以下七后期分七二品階稱號外
一般武官·武官妻의稱號同一外分以(其二宗照)

Table of ranks and titles for the Joseon Dynasty, including categories like 內命婦, 宗親, 外命婦, and 儀者, with corresponding rank levels and titles.

參考(經國大典)

Textual references from the Gyeongguk Daejeon regarding rank regulations, including details on 世子嫡, 正一品, and 從一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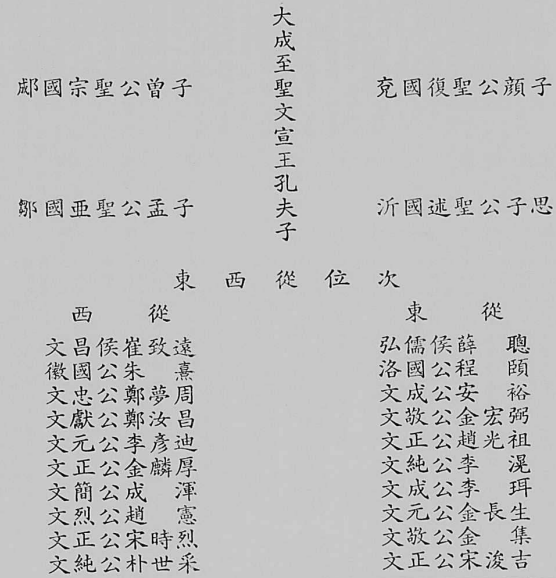
朝鮮時代品階表(其二)

Table of ranks and titles for the Joseon Dynasty, including categories like 東班, 西班, 外命婦, and 雜職, with corresponding rank levels and titles.

1, 官職正式名稱(階·司)職의 順序에 依하여 領議政에 大匡輔國常祿大夫...
2, 行 階高職等例하면 從一品階者 階次가 正二品職인 吏曹判書가 되면...
3, 守 階守弘文館大提學...
4, 大夫守弘文館大提學...
5, 大夫守弘文館大提學...
6, 大夫守弘文館大提學...
7, 大夫守弘文館大提學...
8, 大夫守弘文館大提學...
9, 大夫守弘文館大提學...
10, 大夫守弘文館大提學...
11, 大夫守弘文館大提學...
12, 大夫守弘文館大提學...
13, 大夫守弘文館大提學...
14, 大夫守弘文館大提學...
15, 大夫守弘文館大提學...
16, 大夫守弘文館大提學...
17, 大夫守弘文館大提學...
18, 大夫守弘文館大提學...
19, 大夫守弘文館大提學...
20, 大夫守弘文館大提學...
21, 大夫守弘文館大提學...
22, 大夫守弘文館大提學...
23, 大夫守弘文館大提學...
24, 大夫守弘文館大提學...
25, 大夫守弘文館大提學...
26, 大夫守弘文館大提學...
27, 大夫守弘文館大提學...
28, 大夫守弘文館大提學...
29, 大夫守弘文館大提學...
30, 大夫守弘文館大提學...
31, 大夫守弘文館大提學...
32, 大夫守弘文館大提學...
33, 大夫守弘文館大提學...
34, 大夫守弘文館大提學...
35, 大夫守弘文館大提學...
36, 大夫守弘文館大提學...
37, 大夫守弘文館大提學...
38, 大夫守弘文館大提學...
39, 大夫守弘文館大提學...
40, 大夫守弘文館大提學...
41, 大夫守弘文館大提學...
42, 大夫守弘文館大提學...
43, 大夫守弘文館大提學...
44, 大夫守弘文館大提學...
45, 大夫守弘文館大提學...
46, 大夫守弘文館大提學...
47, 大夫守弘文館大提學...
48, 大夫守弘文館大提學...
49, 大夫守弘文館大提學...
50, 大夫守弘文館大提學...
51, 大夫守弘文館大提學...
52, 大夫守弘文館大提學...
53, 大夫守弘文館大提學...
54, 大夫守弘文館大提學...
55, 大夫守弘文館大提學...
56, 大夫守弘文館大提學...
57, 大夫守弘文館大提學...
58, 大夫守弘文館大提學...
59, 大夫守弘文館大提學...
60, 大夫守弘文館大提學...
61, 大夫守弘文館大提學...
62, 大夫守弘文館大提學...
63, 大夫守弘文館大提學...
64, 大夫守弘文館大提學...
65, 大夫守弘文館大提學...
66, 大夫守弘文館大提學...
67, 大夫守弘文館大提學...
68, 大夫守弘文館大提學...
69, 大夫守弘文館大提學...
70, 大夫守弘文館大提學...
71, 大夫守弘文館大提學...
72, 大夫守弘文館大提學...
73, 大夫守弘文館大提學...
74, 大夫守弘文館大提學...
75, 大夫守弘文館大提學...
76, 大夫守弘文館大提學...
77, 大夫守弘文館大提學...
78, 大夫守弘文館大提學...
79, 大夫守弘文館大提學...
80, 大夫守弘文館大提學...
81, 大夫守弘文館大提學...
82, 大夫守弘文館大提學...
83, 大夫守弘文館大提學...
84, 大夫守弘文館大提學...
85, 大夫守弘文館大提學...
86, 大夫守弘文館大提學...
87, 大夫守弘文館大提學...
88, 大夫守弘文館大提學...
89, 大夫守弘文館大提學...
90, 大夫守弘文館大提學...
91, 大夫守弘文館大提學...
92, 大夫守弘文館大提學...
93, 大夫守弘文館大提學...
94, 大夫守弘文館大提學...
95, 大夫守弘文館大提學...
96, 大夫守弘文館大提學...
97, 大夫守弘文館大提學...
98, 大夫守弘文館大提學...
99, 大夫守弘文館大提學...
100, 大夫守弘文館大提學...

鵝洲申氏鷹巖公派世譜 附錄

五聖位次圖



我東十八賢

東從享

薛聰	安裕	金宏弼	趙光祖	李滉	李珥	金長生	金集	宋浚吉	崔致遠	鄭夢周	鄭汝昌	李彦迪	金麟厚	成渾	趙憲	宋時烈	朴世采	
字聘智慶州人新羅孫	字時官翰林公儒孫	初諱珣字士盛號晦軒順興人	高麗忠烈王時大學士諱文成	字大雅號寒暄堂瑞興人李朝	中宗時贈右相諱文敬	字宗直號靜庵漢陽人仁廟	贈領議政官大司憲諱文正	字景浩號退溪漢陽人	字叔獻號東谷德水人明朝	官右贊成文衡諱文成	字布元號少溪光山人	字希元號少溪光山人	字希元號少溪光山人	字希元號少溪光山人	字希元號少溪光山人	字希元號少溪光山人	字希元號少溪光山人	字希元號少溪光山人

禮考 (※編輯者註)

옛부터 우리나라를 東方禮儀之國으로 自處하고 살아온 우리 先祖들은 우리에게 嚴格하고도 까다로운 家庭禮禮를 遺産으로 물려 주었다. 이 遺産은 다시없이 所重하고 자랑스려울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번거롭고 갖가지 폐단을 自招하기도 하였다.

家禮에 대한 歷史의 由來를 記述하려면 그 文獻이 龐大하여 다 論述할 수 없으나, 周禮에서 家禮관 說이 쓰인것은 이미 三千年이 넘었고 中國宋나라 朱熹라는 學者가 家禮를 지은 後로부터 家庭禮禮는 冠 婚 喪 祭를 알게 되었고 같다.

우리나라도 新羅 百濟 高句麗를 거쳐 高麗, 李朝時代로 내려오면서 次次 体系的으로 制度化하여 왔으며 특히 李朝時代에 와서 禮論으로 인하여 四色黨爭을 낳은 主因이 되기도 하였다.

그 反面 儒敎를 바탕으로 한 儀禮는 崇祖 理念과 忠孝精神이 文化 昂揚에 크게 貢獻한것도 事實이다.

한편 有名 禮學者들의 理論에 依하여 儀禮는 變遷에 變遷을 거듭하여 傭에 따라 四禮 即 冠 婚 喪 祭가 그 所屬 黨派 또는 家門에 따라 行事節次가 多小 相異하게 傳來되어 왔던 것이다.

近世 即 日政三十六年의 愛難期와 八·一五解放以後 民主主義社會로 바뀌면서 우리의 現代生活 樣式이 急速히 西洋風俗을 따르게 됨으로 하여 四禮中

冠禮

1, 冠禮는 찾아볼 수 없고

2, 婚禮 또한 가장 變動을 가져와 崇俗가 西洋式爲主로 行事하고 있으며

3, 家庭儀禮中에서 節次가 가장 까다롭고 번잡하고 理論이 區區한 喪禮도 漸次 簡素化되었고

4, 祭禮 亦是 簡便化되었다.

政府에서는 長久한 時日 區區하고 弊端이 많던 古來의 家庭儀禮를 簡素化하여 一九六九年 準則으로 制定公布하였다.

여기 收錄한 四禮는 우리의 家門에서 代代로 傳來하여 一部分을 앞으로의 行事節次에 參考하기 爲하여 要約 收錄하였다.

※ 家家禮라하여 他門의 行事에 曰可曰否는 하지않는 것이 禮儀임을 附言한다.

現代에서는 나이 만 二十歲가 되면 成人이라 하지만 古時에는 남자 十五歲 以上이면 冠禮를 올렸다. 一種의 成人式인 것이다. 이 날에는 早朝起床하여 祠堂에 酒果로 告하고 執事者가 一定한 節次에 따라 禮式을 舉行하였던 것이다.

現今에는 거이 찾아 볼 수 없게 되었고 極히 一部地方에 遺習의 殘滓를 볼 수 있으나 舉論할만한 것이 못되기에 省略한다.

婚禮

婚禮는 大禮라 하여 다음의 節次를 갖는 것이 原則이다.
納采……新郎家에서 新婦家로 禮物를 보낸다.
問名……兩家에서 相互 名啣을 묻는다.
納吉……新郎家에서 新婦家로 婚約을 通知한다.
納徵……新郎家에서 新婦家로 青緞紅緞을 보낸다.
請期……新郎家에서 婚日을 定하여 新婦家에 可否를 問議한다.
親迎……新郎이 新婦를 맞는 禮式을 올린다.
그러나 近來에는 以上の 節次들은 省略하고 新舊折衷하여 適宜施行하는 것이 一般化되었다.

◎請婚과 許婚

舊禮로는 男子側에서 婚約의 意思가 있는 相對方에게 直接請婚치 않고 仲媒者에게 書面으로 仲媒를 請하는 것이 禮로 되어있다.

◎四星

雙方에서 婚約에 合議하면 新郎側에서 四星을 보낸다. 四星이란 郎者의 生年月日時를 말하는 것으로 四柱라고도 하여 다음과 같이 쓴다.

○四星書式(簡紙七摺으로 접어서 가운데 間에 쓴다.)

某費后入姓名(手法)	
干支某月某日某時生	
原	
年 月 日	
謹封	
四星	
※手法—現世인하는 것과 같은 姓名은 郎者姓名(四星皮封)	
面 前	
(外皮封式)	
釜山	大邱某生家
某生員宅	入納
(四星送書狀皮封)	
謹拜謝上狀	
某生員 下執事	
面 後	
謹封	
四星同封	
年 月 日	

※涓吉皮封은 四星을 보낼 때와 같이 하되 莫雁(婚日通知)皮封에만 涓吉이라 쓴다.

漢紙에 위와 같이 쓴 四星은 다음 書式의 四星送書狀과 合하여 漢紙로 싸서 封하여 別示 內皮封과 같이 싸서 內面은 青色, 外面은 紅色으로 된 보자기에 싸서 閨秀家에 보낸다.

◎四星送書狀書式(郎者側에서 新婦側에 보내는 書式)

※四星涓吉送書狀書式이 여러가지로 區區하나 代表的인 것을 記錄하였다.

伏惟孟春(隨時) 某費 姓名 再拜
尊體百福仰溯漆區區第親事既承 領可 私門之幸耳 柱單 錄呈
涓吉回示 如何 伏惟 尊照 謹拜 上狀
年 月 日

◎涓吉

涓吉은 結婚式日字를 定해서 보내는 것을 말한다. 新郎家에서 四星을 보내오면 新婦家에서 結婚式日字를 擇日하여 新郎側에 通知하는 것이다. 書式은 다음과 같다.

◎涓吉書式

某費后入 姓名(手法 싸인)
莫雁 某年 某月 某日 某時

際 年 月 日

※莫雁은 結婚式을 말한다.

◎涓吉送書狀書式(新婦側의 許婚答狀)

某費 姓名 再拜
伏承華函(翰)謹審孟春(隨時)
尊體百福仰慰仰慰 第親事 既承柱單 冥門之慶 涓吉仰呈可否 惟命而回示如何 伏惟 尊照 謹拜 上狀
年 月 日

◎衣製

涓吉書狀을 받은 新郎側에서는 新郎의 衣服질이나 品을 記錄 新婦側에 보낸다. 現今은 大概의 境遇이 節次가 省略되고 洋服店이나 洋裝店에서 衣服을 맞추게 됨으로 說明을 略한다.

※衣製書狀은 涓吉書狀에서 涓吉以下를 빼고(衣製錄插入) 呈耳 伏惟

◎納幣

涓吉書狀과 衣製書狀이 끝나면 近世에는 結婚式前日 遠距離하면 結婚式當日에 新郎側에서 新婦側에 婚需(主로 紅色과 青色옷장)의 幣物과 禮狀(婚書紙) 및 幣物 物目을 넣는다.

婚需圖을 보내는데 이를 納幣라고 한다.

納幣禮狀은 新郎이 直接 쓰는 것이 原則이며 쓰는 용이는 漢紙로 長은 尺기 幅은 長보다 좁게 하며 九間으로 접어 兩便을 一間式 비우고 七間에 쓴다. 書面內容에 따라서는 九間을 七間으로 하기도 한다. 그러나 首末間은 九間 首末空間은 共히 半間이다.

◎禮狀(婚書)式

伏惟孟春(隨時)
 尊體百福僕之長子(次子、三子、姪、孫、弟、某(新郎名)年
 既長成未有 伉儷 伏蒙
 尊慈許以 令愛(令孫女、令姪女、令妹) 既室 茲有先之禮 謹行
 納幣之儀 伏惟
 尊察 謹拜 上狀

年 月 日
 某實後人 姓名 再拜 (本行은 首間다음 一間을 남겼다 가 그 一間에 本文을 쓰는 것이 普通이다.)

◎再三娶禮狀書式

伏惟仲春(隨時)
 嘉命許以 令愛既室于 僕之長子某(名) 茲有先人之禮 謹遵行 納幣之儀 伏惟
 尊察 謹拜 上狀
 年 月 日
 某實後人 姓名 再拜

(物目書式)

物 目
 玄 壹段
 縹 壹段
 年 月 日
 某實後人 姓名(心外인)

(重皮封)

謹封 謹封 謹封

物 目 謹封

(禮狀皮封書式)

謹拜 上 狀
 某(姓)生家 禮東
 下執事

※ 禮狀皮封은 上下通(對하지 않음)하게 하고 重皮封을 上中下로 고르게 卷는다.

◎婚需封하는 式

婚需圖인에 白紙를 잘고 먼저 禮狀을 넣고 婚需를 차례로 넣되(웃감마다 腰部를 白紙로 謹封하고 品名을 쓴다) 紅色을 먼저 담고 다음 青色을 담고 白紙로 덮고 쓰리대나 누구대로 용개를 움직이지 아니하게 하여 뚜껑이(絹綿)나 靑紅실

로 감고 圖을 만든다. 보로 圖을 싸되 비귀를 맞추어 싸매고 남은 絹을 모아매고 종으로 감고 謹封이라 쓰고 베로 결방을 맺고 「冠帶함과 같이 능삼장으로 싸서」다시 명방을 맨다.

※參 考

★ 婚需圖이 新婦家에 이르면 待期하였던 新婦의 近親家族中 毒福이 많은 사람이 衣冠을 整齊하고 鄭重히 받는다. 法이다.
 ★ 以上이 結婚式前에 行하는 節次이고 新郎側에서 新婦를 爲하여 마련한 物品一切을 列記한 物目과 함께 納幣日에 함께 보내는 境邊도 있으나 嶺南地方에서는 주로 再行 또는 三行時에 보낸다.
 ★ 능삼장 || 상(麻)노를 북머이 것을 방 마냥 뒤어매어 器物을包裝하는데 쓰는 常用物.

◎奠雁禮의 醮禮床

舊式結婚式을 醮禮라 하고 그 첫節次를 奠雁禮라고도 하는데 納幣가 끝나면 舊式에서는 新郎이 新婦家로 가서 다음과 같은 笄記(現今의 式順)에 따라 禮式을 올린다. 이때 新郎은 紗帽冠帶(官服)木靴을 着用하며 新婦는 머리에 梳冠 또는 花冠(꽃두리)을 쓰고 이와와 양뺨에 「연지」적이고 紗布로 앞을 가리고 뒤코리는 黃色 또는 靑色 치마는 紅色으로 만든것을 입고 그 위에 袖衣(황옷)을 입는다. 袖衣는 소매(袖)가 넓고 옆이러진 큰 옷인데 紅緞으로 바를을 하고 紋彩로 繡놓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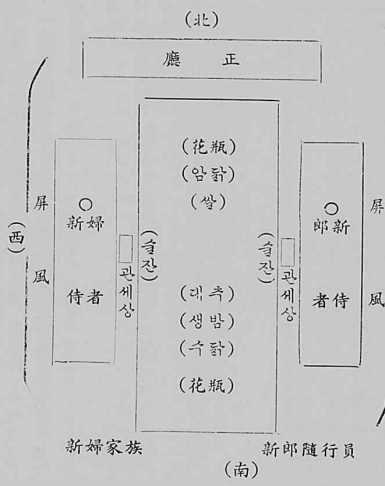
醮禮床은 結婚式前에 新郎新婦사이에 놓여지는 이른바 交拜床을 말하는 것이다. 準備가 完了되면 笄記(式順)에 依하

여 式이 進行되는 것이다. 笄記는 特定人이 큰 소리로 읽는다. (唱笄)

◎奠雁笄記 (代表的인 笄記)

★ 笄記는 여러가지 있으나 行事節次는 大同小異함.
 婿至 婦家 媵于次 主人出迎 行奠雁禮 侍者以執雁以從 置雁于地 奠于床上 俛伏與 少退再拜 行交拜禮 婿東婦西 侍者進 奠 婿婦各盥悅 婿先再拜 婿答一拜 婦又先再拜 婿又答一拜 行合巹禮 合巹分取 婿揖婦 婿之前 婿揖婦 就座 侍者斟酒 婿揖婦 祭酒 祭饌 侍者又斟酒 婿揖婦 飲 進 饌 侍者又斟酒 婿揖婦 盡飲 舉饌 撤饌 禮畢

(醮禮床設備圖)



※ 笄記 상은 커은床을 놓고 그 위에 놓고 그릇과 手中을 걸쳐 놓는다

◎ 退床과 查頓紙 (과혼지 || 사혼지의 편지)

初行(新郎이 結婚式을 올리기 위하여 新婦家에 가는 것) 時 上客(新郎의 父 또는 側近親)이 隨行하며 普通는 翌日 上客은 돌아오는바 出發前別室에 床을 차리고 新婦를 接見上客하고 歸家하는 데 거기에 차린 床의 모든 飲食物을 新郎家에 보내는 것을 退床이라고 한다. (或床當라고도 함) 退床을 보낼 때 物品名을 記錄한 物目을 써서 보내며 또 新郎의 正裝 옷도 같이 보낸다.

「查頓紙」는 新婦의 母親이 新郎의 母親에게 보내는 書信을 말하고 新婦는 이 查頓紙와 같이 新郎이 歸家할 때 問安 書信을 媿父母와 그 祖父母 伯叔父母等 黨內親戚에게 情誠 實과 같이 보낸다. 이때의 飲食음식의 書信內容等으로 自己家의 凡節을 評價받게 됨으로 格別이 神經을 많이 쓴다. 다음 新郎은 再行(隣再行: 再行의 略式行爲 || 三日되는 날 밤 新婦近親家에서 一宿泊하는 것을 말함) 三行等 妻家에 가는 節次가 잇는바 이 三行의 節次를 마치면 平常으로 돌아간다.

◎ 于歸와 見舅禮 (현)

于歸는 于禮라고도 하는데 現代語로는 新行이다. 新婦가 正式으로 新郎家에 入住하는 儀式을 말한다. 見舅禮는 新婦가 新郎家에서 媿父母와 親戚에게 첫 人事를 드리는 儀式으로 新行當일에 行하는 것이다. 新婦가 準

備하여는 酒肴床을 大廳 또는 庭園(마당)에 設席하고 直系 尊屬과 從父祖에게는 큰절(大拜: 양손을 머리에 올리고)을 하며(一家親戚에는 맞절(손을 올리지 않고) 揖절로 相互拜禮)로 人事한다.

※參考
이래 媿祖父母가 生存하여도 媿父母에게 먼저 비움은 것이 原則이다.
初行시 于禮以後 新郎 新婦의 來往節次 및 人事차림 등 여러가지가 있으나 省略한다. 다만 新婦 親庭行次를 親親이라고 한다.

倫	五				
朋	長	夫	君	父	
友	幼	婦	臣	子	
有	有	有	有	有	
信	序	別	義	親	

喪禮

우리나라는 古來로 冠婚喪祭의 禮가 複雜하고 까다로우나 其中에서 喪禮가 가장 까다롭고 所謂 禮論도 많았다. 아직 大槪가 初喪 裏禮時 「執事分定」即 護喪、相禮、祝、司書、司貨、造殯、教匠、日直等을 構成하여 喪事全般을 執行하고 있으나 實際는 이것이 形式化되고 말았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 大宗만을 취해서 現實에 맞추어 簡略하게 說明함에 그칠 수 밖에 없다.

◎ 初 終

患者의 病勢가 危重하여 回春의 可望이 없다고 判斷될 때 는 가까운 親族에게 通知하고 周圍를 조용히 하여 謹慎하고 患者의 衣服을 平常服中 깨끗한 것으로 잘 아입게 한다. 遺命이나 遺言이 있으면 이를 記錄하거나 錄音으로 收錄하여 保存하도록 한다.

◎ 收 屍

殞命이 確認되면 눈을 감게하여 屍體의 머리를 北쪽으로 가게 하여 바르게 눕히고 兩손을 腹上에 모아 부드러운 천(布)을

으로 뒤고 머리는 바르게 비르러지지 않도록 피이고 발은 바로 서게 피이고 耳鼻孔을 풀솜이나 脫指棉으로 막는다. 寢具로 屍身의 全身頭部가 지덤고 屏風으로 가리우고 美를 밝히고 香을 피우고 號哭하는 것이 傳來의 禮法이다. 收屍를 「裝」이라고도 한다.

※ 事前에 殮衣(亡인이 입는 옷)가 準備되어 있으면 小殮의 一部(上下衣)節次를 同時에 行하여도 無妨하다.

◎ 阜 復

招魂이라고도 하여 故人的 內服衫(속저삼)을 가지고 屋上이나 높은 곳에 올라가 왼손(左手)으로 옷깃을 잡고 오른손(右手)으로 옷허리를 잡고 北쪽을 향하여 휘두르며 故人的 姓名이나 稱號 某氏 宅號를 부르고 북북부 채면 연거푸 부르고 옷은 가져다가 屍體위에 얹는다. 收屍와 招魂은 거의 同時에 行한다. 招魂이 끝나면 머리를 풀고 號哭하는 것이 禮法이다.

※ 參考事項

- ① 喪家表示 || 都市에서는 店舖或은 喪家에 喪中表示 하고 있는 때 大門위에 吊燈을 달고 喪中表示 하고 표시. 忌中이라고 흔히 해서 忌字는 父喪의 小心畏忌라는 忌字이므로 手下人에 쓰면 妄發이 됨으로 喪中이 手上下間 適當하다.
- ② 喪을 當하면 喪主들은 洗而沐浴을 浴으며 原則은 三日不食이라 하나 肉食強食을 浴으며 미음(米飮)이나 죽(粥) 등으로 素食하는 것이 法式이다.
- ③ 衣服은 殞命 招魂後 사치스럽지 않은 白衣에 白色이 色이 마감을

입의 成服禮까지 外艱喪에는 左側소매를 꿰고 內艱喪에는 右側소매를 꿰고 晝夜로 哭을 葬禮時까지 그치지 않는다.

◎訃告

喪을 當한 事實을 一家親戚 親知들에게 알리는 일을 訃告라고 한다. 訃告의 書式은 다음과 같다.

訃告

族弟某夫人(父親) (母親은 大夫人 祖父는 王大人 祖母는 王大夫人 某官 至는 處士某實 某氏以宿惠(隨其事態) 某月某日某時別世 茲以訃告(人便)으로 訃告는 專人訃告라고 함)

發期 月 日 時 自宅
葬地 所在 山名

護喪 ○ ○ ○ ○ 上

某生員 座前

※護喪은 葬儀委員長에 該當하는 사람으로 故人的 免服曾孫 又는 親族中 高行者(門中어른)가 되는 것이 常例이나 官爵이 있거나 名望이 있는 分이면 他姓이라든 無妨이잖이 他人이 護喪이 될 때는 其時訃告書式은 七기에 맞게 달라야 한다.

(畿湖地方에서는 訃告를 訃告로 함)

某親某人以某月某日得疾不幸於某月某日棄世茲以訃告

◎小殮

殮은 死之明日이라 하나 殮衣(壽衣라고도 함)가 準備된

여 있으면 當日이라도 하고 그렇지 못하면 準備가 되는 대로 다음 順序대로 行한다.

1, 香湯水를 만들어 殮을 비릇하여 全身을 濡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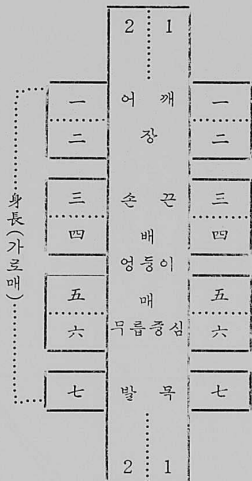
2, 殮衣로 裝아 입힌다.

(殮衣라 함은 亡人이 입는 옷을 말한이니 家勢에 따라 棉 또는 絹布(명주)로써 만든 上下衣(속옷)까지 裝아 입고) 深衣 또는 道袍로 되어 있다.

3, 殮衣로 裝아 입히고 나면 巾(襚)을 신기고 단념(端任)을 매고 行巾(行巾)치고 腰帶(허리끈)과 大帶(도포의 끈)을 매고 漢紙나 麻布로 만든 신을 신킨다.

머리에 冠이나 巾(儒巾)을 의우고 五個의 絛은 眉다가 大殮과 같이 넣는다. 耳鼻孔을 다 시막고 柳匙(버드나무 줄가락)로 부공상 세우므로 殮을 正 또는 銅錢 세 조각을 만들어 準備하였다가 입속에 세번 더쳐 넣는 의상은 한번 넣고 千石 두 번 넣고 萬石 세 번 넣고 十萬石이라 하고 十萬兩이라 하고 十萬兩이라 한다. (이것은 亡人이 귀승경에 食糧과 路資로 드리는 儀式이다.) 그리고 面巾(巾)으로 顔面을 덮고 두름 다리를 頭部를 의위서 覆는다. 握手로 손을 가리고 頭骨이 아래로 垂지지 않게 骨을 漢紙나 麻布로 싸서 殮을 고이고 발목도 앞으로 구겨지지 않게 위와 같이 고이고 殮이 縵(天袴과 地袴)屍體를 싸고 殮布로써 屍身을 覆는다. 「屍身을 覆는 일을 殮한다고 한다」要領은 다음과 같다. 「屍身을 縵으로 覆는 것으로 그림 1과 2의 2를 면

거두고 가로매고 변호대로 깨매끼 끼리 連結하여 覆되 매듭을 짓지 않고 틀어서 꽃으로써 위로부터 아래로 順次的으로 내려 묶는다.



※장매는 麻布 全幅으로 하고 가로매는 麻布 全幅 三枚 半幅一枚로 하되 全幅의 兩旁을 半으로 点線처럼 잘라 七폭을 用으로 만든다.

이와 같이 屍體를 縵布나 麻布를 使用하는 것은 後日遺骨의 保存을 期하는데 그 目的이 있는 것이다.

※殮을 할 때 使用되는 衣類器具나 名稱이나 製作法은 說明을 略하고 이와 같은 作業은 原則으로 大槪 喪正例 近親知들이 하나 喪主가 格式을 안다면 直接하는 것이 他人보다는 誠意있게 할 줄 믿는다. 至 內艱喪에 他人을 시킨다는 것이 좋은 일은 못 될 줄 믿는다.

※內艱喪에 쓰는 壽衣는 男子와 다르며 속적삼 속옷 까지 2번의 치마 2번의 비신신 握手 眼目 등 종다의 등이 있다.

※乃 奠本註, 祝焚香 洗盥 酌酒奠之 卑幼之人侍者 皆再拜乃 奠執事爲之

◎大殮과 入棺

普通 現世代는 殮後三日에 大殮成服을 한다. 都市에서는 近間三日 葬을 行하므로 二日成服을 한다. 또한 小大殮을 同時에 兼하기도 한다.

棺을 屍身인는 房으로 搬入하여 「棺이름」을 棺內에 覆고 「棺요」를 잘고 「枕」(송을 넣어서 만든 버개)를 頭部가 당을 部位에 놓고 屍身을 棺內에 넣고 「棺이름」로 屍身을 싸다. (以上이 大殮) 이것이 끝나면 屍體가 棺內에서 움직이지 않도록 亡人의 衣服(毛織物은 嚴禁)이나 黃土를 麻布 또는 漢紙로 싸서 넣어 屍身을 安定시킨 뒤 棺口를 蓋고 棺위에 男子는 處士某實某氏之 柩 女子는 孺人某實某氏之 柩라 쓰고 廣木 또는 거죽이나 가마니 油紙 비닐 등으로 棺을 싸 다음 覆는다. 入棺이 끝나면 棺 밑에 나무로 막을 잘고 安置한다.

※古 때에는 葬日이 長時日이 要하였으므로 家內空地 又は 隣近에 假葬土埋을 하기도 하였다.

◎成服

入棺이 끝나면 다음과 같이 殮所를 設置하고 喪主를 비롯 入服人(別途 服制圖參照)은 喪服을 完全히 갖추고 成服祭를 지내고 外人의 喪問을 받는다.

成服祭는 魂帛을 모시고 祭物 脯醢 盞 盤 祝을陳設하고 焚香하고 盞을 올리고 喪主와 服人이 모두 呼哭再拜한다. 撤床時 脯와 盞은 恒時撤床치 않고 놓아둔다.

◎ 殯 所

屍身の安置와는 別途로 靈座를 마련하는데 이를 殯所라고 한다.

殯所에는 屏風(華麗한 것을 避한)을 치고 交椅 祭床 香案 香爐 香盆 燭台 一便茅沙 등을 갖추어 놓는다. (別途圖面参照) 巫한 亡人이 平素使用하는 器物(당배대, 眼鏡等)도 갖추어 適宜場所에 備置한다.

※ 註一、交椅는 神位를 모시는 椅子를 말하는데 것으로 그림 ①과 같이 만들어 魂帛座台底面이 祭床보다若干 높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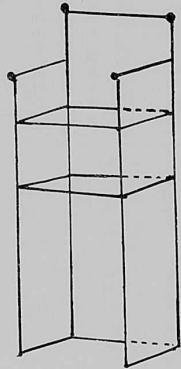
註二、祭床은 祭物을 차리는 高足床으로 그림과 같이 만들어 다리(足)는 왼쪽으로 접어 넣었다 폼다 할 수 있는 組立式으로 한다.

註三、香案은 香爐를 올려 놓는 小盤으로 그림 ③과 같이 만들어 祭床보다 훨씬 낮고 작게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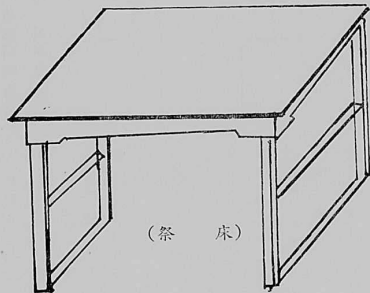
註四、茅沙는 사방 또는 이에 붙이는 小器에 깨운 모래(沙)를 담고 그 中央部에若干의 티(芽)나 송이를 묻는다 그림 ④와 같다.

註五、魂帛은 神主를 만들어 前에 모시 麻布 明細나 白紙로 접어서 만드는 假主로 葬前에만 使用하고 葬禮를 지낸 뒤에는 墓所에 埋藏하고 神主를 쓰는

交椅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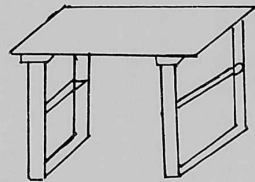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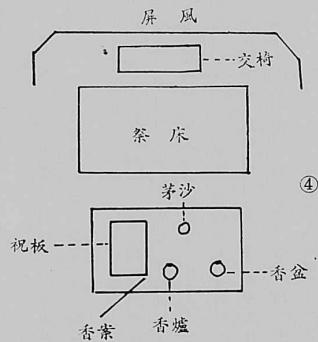
(祭床)

③



(香案)

④



◎ 魂帛접는 법

魂帛은 배(麻布) 한폭(全幅)과 접이(長) (長) 一척 三寸(一尺三寸)을 쓰는데 접이(長)를 一촌 五분(寸五分)씩 여덟 겹으로 접으면 남는 것이 一촌(寸)이 된다.

이것을 피서 편의상 도표와 같은 순위를 정하여 도표 1과 같이 접기 시작한다.

- 1, 도표의 번호 1을 번호 2와 맞닿게 접음.
- 2, 번호 3을 번호 4와 접히 3이 보이게 접어 1의 뒷면으로 가게 접는다.
- 3, 번호 4를 접되 4가 보이게 하여 2의 뒤에 가게 접어 야 한다.
- 4, 번호 5의 중간을 접되 5가 속으로 들어가게 접어서 1의 뒷면에 가서 3과 마주되게 접으면 번호 5는 보이지 않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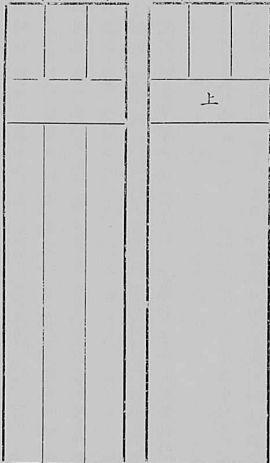
것이 原則이나 近來에는 神主를 만들지 않는 境過가 大部分이기 때문에 殯所가 있는 滿二年間 殯所에 모셨다가 大祥이 지나면 後에 墓所에 묻는 것이 常例가 되었다. 一年에 脫喪 때는 그에 따른다.

交椅上部에 魂帛을 모시고 白布 白紙로 그를 가리우고(近來는 寫眞도 同時에 모시기도 함) 側面과 天帳을 白布 또는 白紙로 가리고 祭床前部에 白布로 가리워 珠簾 커튼식으로 開閉할 수 있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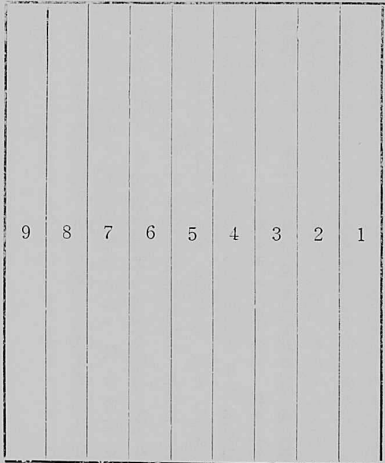
殯所後面 屏風에 銘旌을 접어 두었다가 出喪時에 竹竿에 높이 달아 喪槨앞에 들고 간다. 靈柩車를 使用할 때는 槨위에 걸는다.

5, 번호 6과 번호 4가 서로 맞닿게 되면 즉 그렇게 접

(前 面) (後 面)



(魂帛접는 圖表)



으면 六은 자연히 보이지 않게 된다.
6, 변호 七은 접어서 변호 六의 뒷면에 붙이면 七은 보
이게 된다.

7, 변호 八을 七과 맞닿게 붙여서 접어야 한다.
8, 변호 四와 六의 사이를 벌리고 가로(橫)의 뒷면(上
邊)을(一촌(寸)으로 접어 四와 六에 붙게 함으로 접
어야 한다.

9, 변호 七과 八의 사이를 벌리고 가로(橫)의 아랫면
(下邊)을(一촌(寸)으로 접어서 七과 八이 붙게 함으
로 접고 벌리기 전대로 접는다.

10, 변호 九를 접되 변호 四의 아랫면(下邊)과 뒷면(上
邊)접은 것을 싸서 꿰으면 된다.

11, 도표와 같이 위(上)를 백지로 표시하되 변호 八의 세
면이 앞으로 가게 하는 것이다.

註六, 銘旌은 紅色 비단이나 명주의 小幅에 1m 60cm 程度の 직
이로 白粉에 呵膠를 섞거나 金箔으로 故人의 官職과 生명을
쓴 것을 말하며 書式은 다음과 같다. (例)

職啣正는
處士 鵝洲中公某之柩
學生

孺人 光山金氏之柩
(女子) (男子)

◎上 食

朝夕奠은 小殮後始作하고 朝夕上食은 成服日로 부터 하되
陳設을 始作할 때 부터 喪主는 哭을 한다. 飯羹菜蔬 魚肉
等 平素의 飲食장과 같이 하고 朔望에는 焚香하고 蠶繭의
掃匙正著(삼시정권)하고 조금 잇다가 蠶繭을 드리고 밥을
조금씩 세글을 더서 蠶繭에 맞고 슬가락은 蠶繭 그곳에 걸
쳐 놓고 喪主以下 哭再拜한다. 조금 잇다가 床을 鋪린다.
★三年喪 終喪이거나 一年脫喪時도 床까지 朝夕上食은
繼續되며 또한 每月初一日과 보름(十五日)에 朔望祭를
지낸다.

朔望祭라 하지만 平素上食보다 한 두가지 보낸다.

◎治 葬

古禮에 依하면 葬事는 天子七月 諸侯五月 大夫三月 士庶
人月而葬이라 하였으나 그 弊端이 컸으므로 近來에는 次次
短縮되고 家庭儀禮準則에는 三日로 規定하고 形便에 依하여
五日葬도 行하고 있다.

①擇地: 父母가 高齡이면 事前에 準備하기도 하나 事前準
備가 없으면 殯命後서들의 安葬할 곳을 定하여야 한
다.

②擇日: 五行說에 依하여 日官으로 하여금 葬事날을 받든
다.三日이나 五日 七日 等奇數日이 原則이나 奇數日이
不吉하면 四, 六日도 可하다.

③發柩: 喪輿(상여)가 葬地로 떠나는 것을 發柩이라고 한

다.

發柩前日 朝奠에 明日의 遷柩를 告하고 發柩當日 朝奠
에 今日の 遷柩를 告하며 發柩時가 되면 棺을 喪輿나
靈柩車에 모시고 棺앞에 屏風치고 祭需을 차리고 祝文
을 읽는다. 喪主는 不斷히 哭을 하되 讀祝時는 哭을 그
치고 讀祝이 끝나면 哭再拜하며 服入도 再拜한다. 一家
親戚이나 親知中 葬地까지 隨行치 隨行時는 永訣人事
로 再拜한다. 이 行事를 發柩祭라 한다.

④出喪: 發柩儀式이 끝나면 葬地를 向하여 出發한다. 喪
輿로 徒步行進할 때는 다음 次例로 行列을 짓는다. 吊
旗, 挽書, 雲亞, 功布, 銘旌, 靈位(魂帛)喪輿 喪主 白
官 吊客 靈柩車로 遷柩時는 車內에 실는다.

⑤遷柩中停喪: 遷柩途中 故人의 緣故地나 弟, 子家等에
停喪하여 路祭를 지내며 故人의 告別人事로 祭文을 읽
기도 한다. 또한 葬地가 멀어서 遷柩途中에 밤을 새울
때는 집에서와 같이 朝夕上食을 드리나 近世에는 交通
便宜上 極히 드문 일일 것이다.

◎葬地에서의 行事節次

喪輿가 葬地에 到着하면 述日(天養)치고 접어거는 殯所
와 같이 屏風치고 祭床 交椅 燭台 香爐等으로 靈位를 配設
하고 果脯蠶等으로 祭需을 차리고 喪主는 哭을 한다. 이때
喪主는 右便 白官은 左便에 整列하고 葬地에 온 吊客의 吊
問을 받는다.

①山神祭: 喪主의 親知中에서 喪主를 代身하여 祭需을 마

권하여 祝文을 읽고 墓所의 保護를 山神에 依賴하는 祭
祀를 올린다.

②下棺: 下棺은 棺을 墓穴에 넣는 일로 喪主 白官(服人)
이 參與하되 止哭하고(原은 直接下棺作業에 參與하는
않음) 조용히 棺을 들어서 水平이 되도록 하고 坐向을
마치고 棺의 左側上便에 玄下便에 雲, 右側上便에 紅下
便에 靑을 넣고 銘旌은 棺위에 덮고 主喪이 喪服자리에
席을 담고 「取土」 「取土」를 세번 외치면서 세번
席을 棺위에 뺀리고 喪主들은 哭數拜하고 靈位로 돌아
가고 役事者들은 盛土 한다. 俗談에 下棺喪主질하듯 한
다는 것은 積을 無數히 한다는 뜻이다.

③成墳: 墳墓의 高는 約四尺 程度로 하여 造型하되 縱이
길고 橫이 짧게하고 外部에 잔디(芝)로 입힌다.

④返魂: 成墳이 되자마자 魂帛을 모시고 歸家한다. 집에
到着하면 內喪主들은 庭園에 나와서 魂帛을 맞으며 外
內喪主가 마주서서 相向哭하고 排으로 人事하고 魂帛을
殯所에 安置한다.

◎初 虞

返魂하여 돌아오면 곧 祭祀를 지내는데 葬禮當日에 返魂
하여 지내는 祭祀가 바로 初虞이다.

※ 初虞부터 小大祥까지 祝官이 進茶點茶後에 喪主와 相向排하
고 利成을 고한다. 告하고 나면 祭席未賓은 哭再拜한다.

◎再 虞

葬禮다음 初柔日(乙丁己辛癸日) 아침 上食과 同時再虞祭를 지낸다.

◎三 虞

葬禮後初剛日(甲丙戊庚壬) 아침 上食과 同時三虞祭를 지내고 墓所에 가서 省墓를 한다. (葬禮後三日乃至四日) 該當)

◎卒 哭

三虞後 三個月 以內的 剛日을 擇하여 虞祭와 같은 節次로 卒哭祭를 지내며 (祝文別途) 近來에는 三虞後日 剛日에 지내기도 한다. 卒哭後는 平常時 朝夕哭만 한다.

◎祔 祀

卒哭翌日이 祔祀이나 形便에 따라 小大祥翌日에 卒哭祭와 같이 饌設한다. (祝文別途) 孫子(亡人)는 祖父神位에 祔하여 祭祀하고 孫婦는 祖母神位에 祔하여 祭祀하고 祖父父母가 生存하였으면 高祖父父母에 祔하여 祭祀한다. 節次는 曲設하고 먼저 曾祖父神位에 讀祝三獻하고 闕飯拂匙正著하고 考位에 正前과 같이 하되 闕門 啓門 獻茶 鞠躬 下匙著 覆飯 辭神은 同時行한다.

◎小 祥

殯命日로부터 滿一年期日이 되는날 아침에 지낸다. 期는 天道가 一變하고 哀惻之情이 더욱 더한 날이라 平時祭祀보다 盛饌으로 祭祀를 지내며 舊制服式에 多少變衣(變服) 또는 變製라고도 한다. 또한 期日이 가까와오면 素食하고 晨昏哭을 한다.

◎大 祥

殯命 滿二年再期日이 大祥이다. 祭禮節次는 小祥과 같으나 大祥祭後 神主라 하면 祠堂에 서고 魂帛은 墓所앞에 걸고 殯所를 撤去하고 喪服을 벗고脫喪한다.

◎禫 祀

殯命한지 二十七日이라 大祥後 三月만인 丁日이나 亥日에 祭祀를 지낸다. 禫祭는 在祔廟의 意로 祀節次는 大祥時와 같다.

◎古 祭

禫祭 翌月 丁日이나 亥日에 茶禮와 같이 지내며 四代祭祀로 새로이 神主를 모셔야 하므로 五代祖 神主는 遷祧하여 墓所에 걸으며 忌祭가 끝나고 墓祀에 옮겨지는 祭儀式이다 그러나 이렇게 되는 五代祖 神主는 同四代行列의 寸數該當者

가 있으면 遮遷한다.

◎執 喪

父母喪은 三年喪이라 하여 滿二年間 喪主 노릇을 하는것이 原則이고 父在母喪에는 滿一年喪이나 그 一年 동안 二年의 儀式節次를 執喪하여 왔다. 이 期間中 喪主는 罪人으로 自處하여 出入과 行動居就에 格別謹愼하고 喪服又是 白衣를 입으며 服制와 前記한 祭禮 上食等 嚴格한 規制가 있었다. 現時 各己 生業關係로 居處와 衣服 行動關係가 自由로와 졌다고 하더라도 恒常 마음속으로 喪主觀念을 떠나 不純한 行動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出他中이거나 客地居住者는 病患이 危重하다는 連絡을 받으면 即時 歸家하여야 함은 再言의 余他가 없으나 萬若作故 하겠다는 許音을 받으면 床에 冷水를 떠다 놓고 머리를 풀고 哀哭하며 吊問者가 있으면 問喪客을 받는다. 準備을 시켜 晝夜를 가릴것 없이 歸家하여야 하며 喪家近處에 이르러 號哭하면서 집에 들어가야 한다.

喪中에 忌祭祀를 當하면 葬禮前에는 祭祀를 모시지 못하며 葬禮後에는 無祝單獻으로 모셔야 한다.

王 兄弟手上下下喪이 있을 때는 主喪은 다르더라도 本節次를 參考로 祝文을 보아 執喪하면 될것 믿는다. 喪主된 사람은 祖上祭에 祭祀時는 門外에서 기다리다가 撤床前에 拜禮하므로써 祭祀에 代한다.

◎喪 服

舊禮의 喪服에는 斬衰齊衰服等 屈巾祭服의 製服方法이 各

◎祝 文

다르왔으나 家庭儀禮準則公布後 禁止되었으므로 앞으로 喪主는 白衣나 喪布드림이 「禮記」(道袍모양의 옷) 입고 행견치고 頭巾을 쓰며 內喪主는 喪布 또는 廣木으로 치마거고리와 흰정기를 만들어 매고 입고 드림이다.

白官은 그 輕重에 따라 重服人은 頭巾에 白衣에 白色又是 廣木으로 두둑마기를 입고 드림이다. 一般家는 洋服에 白喪布 등으로 蝶狀喪章을 부치고 服人은 喪章으로 하거나 喪布로 喪章을 드린다.

祝文은 喪을 當하였을때 부터 始作하여 古祭에 이르기까지의 祝을 一括하였을뿐 其外의 祝은 祭禮祝을 參考바란다.

●啓殯祝(棺을 들어 내려고 할때 着手前 殯所에 告하는 祝) 今以吉辰 遷柩 告

※ 解: 이제 좋은 때이므로 넋을 옮길것을 삼가 밝히나이다.

●遷柩 廢事祝(柩을 들어 낼때 읽는 祝) 請 遷柩于 廢事

※ 解: 棺을 밖으로 옮기기를 請하나이다.

●祖奠祝(發柩前夕에 祭祀 지낼때 읽는 祝) 永遠之禮 靈辰不留 今奉柩車 式遵祖道

※ 解: 永遠히 가시는 禮이 오며 좋은 때가 머무르지 아니하여 喪章을 받들것아오니 吉을 인도 하여주소서.

●發柩日因朝奠祝(柩을 옮기며 喪章이 나설 때 柩에 告하는 祝) 今 遷柩 就 舉 敢 告

(參考) 妻나 弟 以下는 『報告代身』에 『茲告』라 쓴다.
※ 解... 이계(繼)를 옮기어 喪事로 말함에 상가 告하나다
① 遺奠祝(發鞠時 告하는 祝)으로 發鞠祝 又는 永訣祝이라고도 한다.)

靈輻既駕 往即幽宅 載陳遺禮 永訣終天
※ 참고 妻喪에는 永訣終天을 不勝感愴이라 하고 子喪에는 心馬如燬(심연여화)라 하고 弟에는 悲不自勝이라 한다.
※ 解... 喪事를 매게 되었으니 永訣終天을 永訣終天을 告하나다
보내오느 禮를 배워오니 永訣終天을 告하나다

● 路祭祝(遷喪途中에 故人的 弟子나 友人等이 故人的 遺德을 追慕하여 올리는 祭의 祝)
維歲次 干支 某月 干支 朔某日 干支 某(弔奠者姓名)
敢昭告于
某官某公之極(弔奠者外 弔意를 表하고 故人的 德行과 事蹟을 讚揚하는 內容을 쓰고) 尚 饗
※ 解... (前略) 某는 某公의 靈에 告하나다. (故人的 德行 業蹟等을) 尚 饗 하소시

● 山神祝 開土前에 땅을 밟는 神에게 告하는 祝 成績後 山神에는 營建宅兆를 定茲幽宅이라고 고쳐 쓴다.
維歲次 干支 某月 干支 朔某日 干支 某(奉祀者名)
敢昭告于
土地之神 今爲某官府君 營建宅兆 神其保佑 俾無後艱 謹以 清酌醴醢 祗薦于神 尚 饗

※ 解... (前略) 某는 土地의 神에게 敢히 告하나다. 이계 某의 墓를 마련하니 神께서 도와서서 뒤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라우고 땅은 수과 脯와 醴로써 올리오니 饗

하소시.
● 告先登祝(先祖의 墓 附近에 墳墓를 築대 先祖墓에 올리는 祝)
維歲次 干支 某月 干支 朔某日 干支 孤子某(奉祀者名)
敢昭告于
顯考某官府君之墓 今爲(子孫)某官 營建宅兆 于某所(玆地) 謹以 酒果用仲 虔告謹告
※ 參考一、墓所는 墓의 左 或은 右便 位置를 明한다.
二、營建宅兆于某 先葬에 合葬할 境邊에는 合符右라 쓴다.

※ 解... (前略) 某는 敢히 告하나다. 아버지의 墓를 이계 某公의 墓所가 계신 某處에 드리게 되었음을 상가 酒果로 정진히 告하나다.
● 雙墳祝(母親이 먼저 別世하시고 뒤에 父親이 別世하시어 母親墓와 같이 雙墳할때 告하는 祝)
維歲次 干支 某月 干支 朔某日 干支 孤哀子 某(奉祀者名)
敢昭告于
顯妣某封某氏之墓
先考某官府君 不幸 於 某月某日 捐世 禮當合祔而年運有拘 狀用雙墳之制 昊天罔極 謹以 酒果用仲虔告 謹告
※ 參考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으면 先考를 顯考라 고쳐 알겠에 쓰고 顯妣를 先妣라고 고쳐 알겠에 쓴다.
※ 解... (前略) 某는 敢히 어머니의 墓에 告하나다. 아버님께서 不幸히 돌아가시니 마땅히 合葬하여야 하오나 年運이 맞지 않아 雙墳의 制를 씁니다. 아버지의 恩惠가 넓고 하늘은 감

4. 謹以는 手卜人에는 茲이라 쓴다.
5. 哀薦은 兄弟 傍觀(傍觀)에는 薦此(친차)라 쓰고 妻와 弟以下에는 陳此라 한다.
6. 祔事는 再虞에는 虞事라 하고 三虞에는 成事라 한다.
● 再虞祝(返魂翌日 祭의 祝)
維歲次 干支 某月 干支 朔某日 干支 孤子某(奉祀者名)
敢昭告于
顯考處士府君 日月不居 奄及再虞 夙興夜處 哀慕不寧 謹以 清酌庶羞 哀薦成事 尚 饗 (解 初虞祝 參照)

● 三虞祝(返魂後 三日 아침에 지내는 祭의 祝)
維歲次 干支 某月 干支 朔某日 干支 孤子某(奉祀者名)
敢昭告于
顯考處士府君 日月不居 奄及三虞 夙興夜處 哀慕不寧 謹以 清酌庶羞 哀薦成事 尚 饗 (解 初虞祝 參照)
※ 註... (前略) 某는 敢히 아버님께서 告하나다. 아버님 돌아가시고 언 卒哭의 때가 되었음니다. 반과 닳으로 슬피 思慕하여 祈禱 수 없아옵니다. 상가 땅은 수과 여러 인수를 올리오니 饗하소서.

니 상가 酒果로써 정진히 告하나다.

● 返魂祝(理葬을 끝내고 成績하였을 때 返魂前 墓에 告하는 祝)으로 題主祝 又는 成績祝 平土祝 이라고도 한다.)
維歲次 干支 某月 干支 朔某日 干支 孤子某
敢昭告于
顯考處士府君 形歸窆窆 神返室堂 神主未成 伏惟尊靈 依舊東帛 是憑是依

※ 참고 母喪에는 哀子라 쓰고 父母俱歿이면 孤哀子라 쓰고 承重에는 哀孫이니 孤孫이니 쓰고 妻喪이나 子喪에는 敢字를 쓰지 않고 妻弟以下에는 『伏惟』를 쓰지 않고 『尊靈』代身에 『惟靈』이라 쓴다.
※ 解... (前略) 某는 아버님께 告하나다. 肉身은 무덤속으로 가셨사오니 靈魂은 집으로 돌아 가시옵소서. 아직 神主를 마련하지 못하였으니 魂帛魂衣가 있어오니 尊靈은 옛과 같이 여기에 의지 하옵소서.

● 初虞祝(返魂後 初음으로 지내는 祭에 告하는 祝)
維歲次 干支 某月 干支 朔某日 干支 孤子某(奉祀者名)
敢昭告于
顯考處士府君 日月不居 奄及初虞 夙興夜處 哀慕不寧 謹以 清酌庶羞 哀薦 尙 饗
참고 1. 孤子는 ① 題主祝을 參考하라.
2. 初虞는 初虞, 再虞에는 再虞, 三虞에는 三虞라 쓴다.
3. 哀慕不寧은 (父가 告子時에는 悲念相續(비닐상속) 心馬如燬(심연여화)라 쓰고 兄이 告弟時에는 悲痛復至(비통복지) 情何可處(정하가견)라 쓰고 弟가 告兄時에는 悲痛無已(비통무이) 至情如何(지정여하)라 쓰고 夫가 告妻時에는 悲悼酸苦(비도산고) 不自勝堪(부자승진)이라

● 卒哭祝(三虞 다음 지내는 祭祝)
維歲次 干支 某月 干支 朔某日 干支 孤子某(奉祀者名)
敢昭告于
顯考某官府君 日月不居 奄及卒哭 夙興夜處 哀慕不寧 謹以 清酌庶羞 哀薦成事 尚 饗
※ 註... (前略) 某는 敢히 아버님께서 告하나다. 아버님 돌아가시고 언 卒哭의 때가 되었음니다. 반과 닳으로 슬피 思慕하여 祈禱 수 없아옵니다. 상가 땅은 수과 여러 인수를 올리오니 饗하소서.

● 附祭告祝

維歲次某年 某月 朔某日 干支 孤子某 敢昭告于

孝會孫 稱某今以隣附先考 母云 有事于

顯會祖考 某封某氏 某官府君敢請 顯祖考(曾祖) 神主出就于座

●祖考位祝 維歲次 干支 孝會孫某謹以清酌庶羞適于 顯會祖考 某官府君 見前 隣附孫 某官府君 尚 饗

●新主祝 維 干支 孝子 稱某謹以清酌庶羞 哀薦附事于 顯考 母前 某官府君適于 顯會祖考某官府君 尚 饗

●小祥祝(死後一年 忌日)에 지내는 祭祀) 維歲次 干支 某月 干支 朔某日 干支 孤子某(奉祀者名) 敢昭告于 顯考某官府君 日月不居 奄及小祥 夙興夜處 哀慕 不寧 謹以 清酌庶羞 哀薦 常事 尚 饗

●大祥祝(死後二年 忌日)에 지내는 祭祀) 維歲次 干支 某月 干支 朔某日 干支 孤子某(奉祀者名) 敢昭告于 顯考某官府君 日月不居 奄及大祥 夙興夜處 哀慕不寧 謹以

○대 高祖考妣의 神主를 將次 고쳐 쓰시겠으므로 代數의 차례 가림에 尊을 이기지 못하여 酒果로 삼가 告하나다. ●妻喪練祭祝(妻死亡 一年終喪)에 지내는 祭祀) 維歲次 干支 某月 干支 朔某日 干支 夫某(男便名) 敢昭告于 亡室孺人某封某氏 日月不居 奄及練祭 悲悼酸苦 不自勝堪 茲以 清酌庶羞 陳此 奠儀 尚 饗

●甲祀祝(亡人의 回甲日 祭祀祝文) 孝子某 主尚 饗 顯考處士府君歲月不留 回甲奄至 生既有慶 歿寧敢忘 進遠感時 昊天罔極 謹以 清酌庶羞 恭伸 禮尚 饗

●啓舊墓祝(이장할 때 파묘시 묘위 고사) 敢昭告于 顯某親某官府君 葬于 茲地 歲月滋久 體魄不寧 今將 改葬(合葬時) 將以 某月某日 合封于 某親某封 某氏之墓 今方 啓墓) 伏 惟 尊靈 不震不驚(妻과 弟는 惟靈) ●告新墓祝(이장후 묘에 고사) 維歲次 某年 某月 干支 某親名 敢昭告于 顯某親某官府君 新改幽宅 事畢封塋 伏惟 尊靈 永安 體魄 ●改沙草 告墓祝(사초길 묘에 고하는 時)

清酌庶羞 哀薦 祥事 尚 饗 ※ (解 辛哭祝 參照) ●禫祭祝(大祥 三個月 後)에 丁일 또는 亥일을 擇하여 지내 維歲次 干支 某月 干支 朔某日 干支 孝子某(奉祀者名) 敢昭告于 顯考某官府君 日月不居 奄及禫祭 夙興夜處 哀慕不寧 謹以 清酌庶羞 哀薦 禫事 尚 饗

●吉祭祝(吉祭는 禫祭後 一個月만에 丁일이니 亥일에 지내 亡祭) 維歲次 干支 某月 干支 朔某日 干支 五代孫某(奉祀者名) 敢昭告于 顯五代祖考某官府君 顯五代祖妣某封某氏 茲以 先考某官府君 喪期已盡 禮當 遷主 入廟 承重則 改借 諸 先王制禮 祀 四代 心雖 無窮 分則 有限 于墓所 不違 見長改題 告式 族人有親未盡者 將從 之則 改理 爲 遷于 其親之房 不勝 感愴 謹以 清酌庶羞 百 拜 告辭 尚 饗

●沙草後慰安祝(사초뒤 위안) 維歲次 某年 某月 某日 干支 姓名 敢昭告于 顯某親某官府君之墓 伏以 財力不逮 儀物多闕 此八字 今具 石物 用 衛 墓道 伏惟 尊靈 是憑 是寧 □祝文 쓰기 參考事項 喪禮의 祭禮에 따르는 여러가지의 祝文과 告辭을 함에 있어 各各 當리 써야 될 文辭들을 따르 모아서 說明하기로 한다. 大歲..... 해의 干支 月建..... 달의 干支 日辰..... 날의 干支 ※ 이는 六十甲子에 다른 것인바 冊曆을 보면 알 수 있다 某官..... 男자의 境遇 官職 이름이 있는 사람은 二官名 을 쓰고 있으면 處士 또는 學生이라고 쓴다. 某親..... 男자의 境遇 他人이 喪할 때는 本貫과 姓公이 라 쓰고 子孫이 直接 祭祀를 지낼 때에는 府君

○대 高祖考妣의 神主를 將次 고쳐 쓰시겠으므로 代數의 차례 가림에 尊을 이기지 못하여 酒果로 삼가 告하나다. ●妻喪練祭祝(妻死亡 一年終喪)에 지내는 祭祀) 維歲次 干支 某月 干支 朔某日 干支 夫某(男便名) 敢昭告于 亡室孺人某封某氏 日月不居 奄及練祭 悲悼酸苦 不自勝堪 茲以 清酌庶羞 陳此 奠儀 尚 饗

●甲祀祝(亡人의 回甲日 祭祀祝文) 孝子某 主尚 饗 顯考處士府君歲月不留 回甲奄至 生既有慶 歿寧敢忘 進遠感時 昊天罔極 謹以 清酌庶羞 恭伸 禮尚 饗

이라 쓰며年少者에게는 이를 쓰지 않는다.
某封……女子의 境遇 喪에는 男便이 官職에 오르면
따라서 그의 妻도 封名을 얻어 呼稱했으니 그
것이 없으면 孺人이라 쓴다.

某氏……女子의 境遇에 本貫과 姓을 쓴다.
告記者寸稱……子孫의 寸稱인대 初喪을 當하고
辛哭前에는 父喪에는 孤子、父母가 具歿時에는
孤哀子라 쓰며 祖父의 喪事에는 孤孫 祖母喪에
는 哀孫 祖父父母가 具歿時에는 孤哀孫이라 쓰고
三年以後에는 父母의 祭祀에는 孝子、祖父父母의
祭祀에는 孝孫、曾祖父父母의 祭祀에는 孝曾孫、
高祖父父母의 祭祀에는 孝玄孫 男便의 祭祀에는
婦、妻의 祭에는 夫라 쓴다.

神位……祭祀를 받으실 當者인대 奉祀者의 寸數에 依
하여 各各、달리 쓰는 것이다. 父親은 顯考、母
親은 顯妣、祖父는 顯祖考、祖母는 顯祖妣、曾
祖父는 顯曾祖考、曾祖母는 顯曾祖妣、顯高祖考
高祖母는 顯高祖妣、男便은 顯辟、妻는 亡室도
는 故室이라 쓴다.

奉祀者寸稱……祭祀를 받으실 當者의 寸數에 따라 쓰는 것
인데 父母의 祭祀에는 孝子 祖父父母의 祭祀에는
孝孫、曾祖父父母의 祭祀에는 孝曾孫、高祖父父母
의 祭祀에는 孝玄孫、男便의 祭祀에는 婦、妻
의 祭祀에는 夫라 쓴다.
告記者姓名……山所에서 土地神에게 告祀지낼 境遇 直接 祭
主가 아니고 餘他人이 지낼 境遇에는 그 사람

의 姓名을 쓰고 直接 祭主가 祭位에게 告祀 지
낼 境遇에는 祭主의 이름을 쓴다.
奉祀者名……祭祀를 받들어 지내는 者、即 祭主의 名을 쓰
되 弟以上에게는 쓰지 않는다.

以下에게는 告子라 쓴다.
敢昭告于……弟의 祭에는 敢字를 削除하고 昭告于라 하며 弟
以下에게는 告子라 쓴다.
哀慕不寧……妻에게는 悲悼酸告 不自勝堪、兄에게는 悲痛無
己 至情如何、弟에게는 悲痛深至 情何可處、子
에게는 悲念相續 心馬如燬라 쓴다.
謹以……妻와 弟以下에게는 茲以라고 쓴다.
酒果用仲度告謹告……弟以下에게는 酒果 用告 告由라고 쓴
다.

昊天罔極……父母에게는 昊天罔極、 祖父母以上에게는 不勝
感慕、 男便에게는 不勝感慕、 弟以下에게는 不
自勝感이라 쓴다.
伏惟……妻와 弟以下에게는 쓰지 않는다.
尊靈……妻와 弟以下에게는 惟靈이라 쓴다.
哀薦……妻와 弟以下에게는 陳此、 伯叔父母에게는 薦此
라 쓴다.

顯……눈이 반드는 文字이니 글을 바꾸어 눈이 쓴다.
이 外에 顯字도 눈이 쓴다.
主祭者(長子孫)不在時……主祭者가 有故時 最近親者가 代行
할 때의 祝文은 主祭者 이름까지 쓴 다음 出外
未還(外出時) 喪麻在身(喪主 服人 입대) 等事由
를 쓰고 未能將事 代(手上 일 때) 代叔父) 또는
使(手下 일 때) 舍弟) 某라 쓰고 敢昭告于

吊問節次

엇지의 慶事에는 親不親問에 招請이 없으면 參席치 않으니
初喪이나 亡人이나 喪主와 知面이 있으면 告告가 없되
라도 吊問하는 것이 禮儀이다.
現時 곳에 따라 成服前後나 内外親喪에 分別이 哭拜 吊
問하는 例가 많다. 勿論 그 慣習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으
나 다음 몇가지를 留意參考하면 別失手는 없을 것으로 믿
는다.

◎一家나 가가를 親戚 가족대 初喪을 當하면 「喪主의 活
動이 極히 制約을 받으므로」 喪家에 가서 襄禮 接賓客
準備等 必要한 일을 도와주어야 한다. 가가를 一家親戚
이 없으면 親友가 되는 사람들이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이때 喪主에게는 略式으로 吊問을 하지만 (亡人에 哭
은 하되 情을 溢음) 成服以前에 亡人에게 拜禮치 않으니
며 喪主에 對하여도 呼哭 吊問은 溢는다. 成服禮가 끝
나면 비로소 亡人 凡筵에 呼哭 再拜하고 喪主와도 正式으
로 吊問人事를 取한다.

◎一家親戚問의 吊問

一家問에는 内外親喪 區別없이 凡筵에 呼哭 再拜하고 喪主
와 人事한다.
가가를 親戚도 一家에 準하면 된 것이다.

※다만 親戚問下手人 凡筵에는 坐哭 無拜이며 奠이 있으면 他人으로
하여금 肅한 禮를 짓게 하여 拜하고 拜한다. 手下 5년이 相近한
姓의 凡筵이면 再拜한다.
他人의 吊問은 元來는 成服以前에는 溢으며 成服後에 行
함이 原則이다.

※喪無二主라 하여 喪主와 相對哭人事하고 支次들은 稍類한 한
다. 그러나 이는 비단 喪主만 알아서 問喪하는 것은 아니므로 支
次喪主와의 知面으로도 吊問하는 故로 全體喪主와 人事하여도 無
妨할 것으로 본다.

◎其他吊問

●喪主와 親切하고 亡人과도 知面이 있을 때

凡筵에 들어가 呼哭 再拜하고 喪主와 相對對哭後 人事하
다.
喪主와는 親切하나 亡人과는 知面이 없어도 内親喪外에는
凡筵에 呼哭 再拜하고 喪主와 相對對哭後 人事한다.

◎他人의 内親喪에 吊問할 때(親舊도 同)

生存時 相面人事가 있으면 凡筵에 呼哭 再拜하고 喪主와
相對對哭人事하며 不然이면 凡筵에는 들르지 않고 喪主와만
相對對哭人事한다. 死後 相面禮가 없기 때문이다.

● 亡人과는親切하나喪主와는知面이 없을 때

凡筵에 들어가 呼哭再拜하고 喪主와도 人事한다.
※原은 凡筵에 哭拜하고 바로 外堂으로 나와있으면 喪主가 찾아 가서 人事하는 것이 原則이나 喪主와 人事하고 亡人과의 關係를 說明하여 주는 것이 나을 것이다.

● 查夫人 凡筵에 차릴 凡節

平素相面有無를 가릴것없이 凡筵밖에서 喪主와만 相向對哭 人事한다.

● 親舊妻喪에 喪人父子中 누그를 먼저 吊問하는가

親舊를 먼저 人事하고 苦席에 들어가 喪主와 相向對哭하고 人事한다.

◎ 喪主로서 他人과 人事할 境遇

初喪時가 아닌 平素에도 三年 喪內에 吊問客이 있으므로 집안에서는 喪祭服을 하고 손님을 맞아 對哭人事한다.
出入時 古時에는 平常 喪服에 平素의 「갓」대신 「방일」또는 「피리」를 쓰고 다녔으나 近來에는 白色帽子에 喪表를 하여 쓰고 다니므로 모자를 벗었다면 다시 쓰고 人事한다. 喪主

가 아닐 때는 벗고 人事한다.

◎ 吊問과 慰問 (父母와 承重喪)

吊客은 먼저 凡筵에 哭하고 再拜한 後 喪主와 拜禮하고 鄭重한 言辭로 「喪事말씀 무어라 여쭙오리까」하고 말한다. 喪主는 「罔極하오이다」하고 對答한도 無妨하다. 其他 吊客으로서 人事하는 몇가지를 例舉하면
吊客……病患이 深하시니 回春을 못하시고 喪事까지 當하시니 오죽이나 罔極하오리까
喪主……罔極하기 限이 없읍니다.
吊客……春秋는 눈으셔도 恒常 康寧 하시드니 突然 喪事를 當하시니 오죽 哀痛하시겠읍니까.
喪主……侍湯을 하였으나 百藥이 無效로 作故하시니 罔極하기 그지 없읍니다.

其他 親不親 또는 作故時의 形態에 따라 鄭重한 哀悼와 吊問 人事를 하면 되겠다.
※註解 凡筵……坐席을 모시고 設施한 靈座 苦席……거좌자리(坐상)이 나고 成服後 喪主가 앉은 거좌자리 成服……亡人을 大斂入棺하고 喪服을 完全히 갖추어 입는것을 말함. 購奠……荀子曰 貨財曰購 曰舊儀古者但致奠而已 漢氏以來 設酒食沃糞. 襄禮……葬禮. 相向對哭……가로 마주보고 哭하는것. 排……수신을 맞잡고 水平程度를 리는 禮. 稍顏……숨어 앉아 이마를 고침에 맞도록 숙여있는 것.

(一) 喪冠 (大功)



(小功以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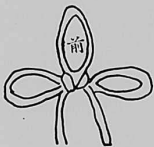
(二) 首經



(三) 腰經



(四) 同心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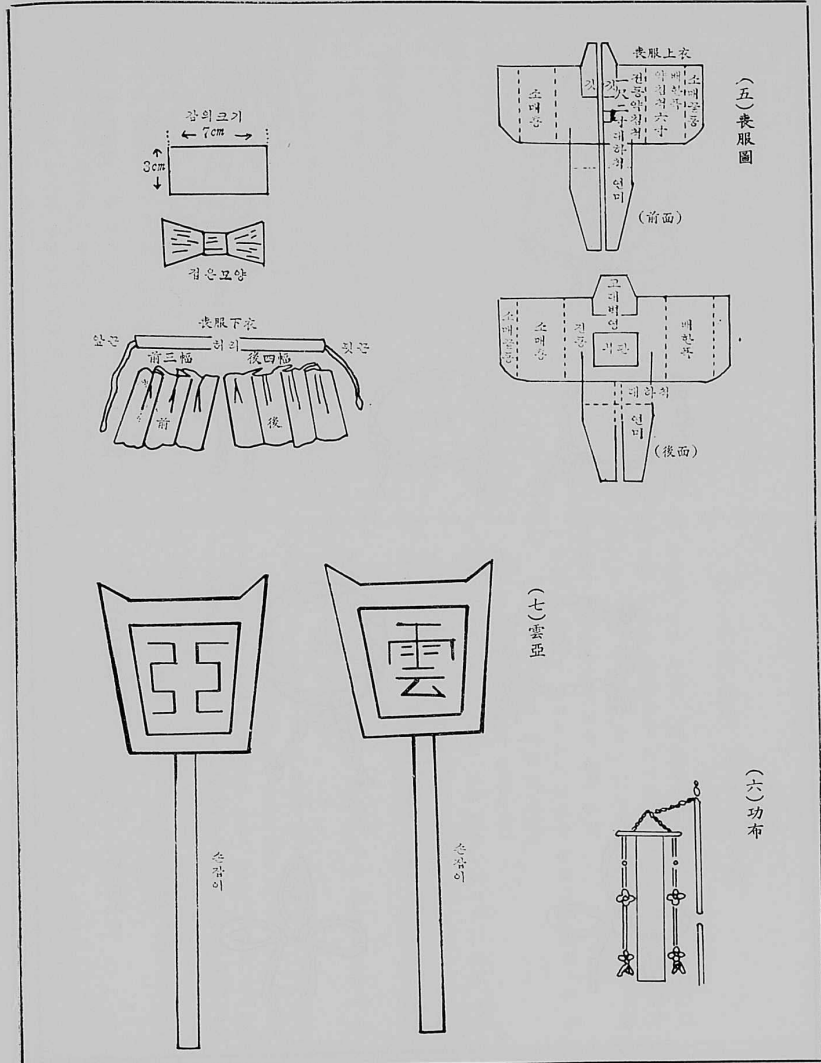
喪服總圖

※斬衰는 重紗로 竹杖
 ※齊衰는 輕紗로 桐杖上圓下方(田三寸)과 杖子等 代用(五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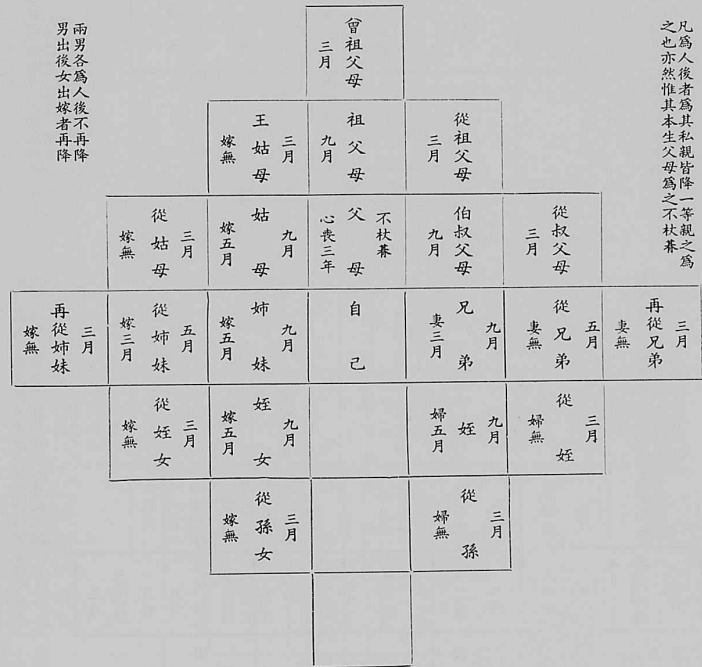
斬衰 三年	
邊下縫不之爲希麻鹿至用 (것말지집 록가 의래야 디하로베삼 은곡)	
齊衰 三年	
不杖邊 一年	杖 一年
杖下縫爲之希麻鹿稍用 (것을집 록가 의래야 디하로베삼 은곡)	
大功 九月	
之爲布熟鹿用 (것을집 록가 의래야 디하로베삼 은곡)	
小功 五月	
之爲布細熟稍用 (것할 이갈 과功大)	
總麻 三月	
之爲布細熟稍用 (것할 로크세 흰곡)	

喪服圖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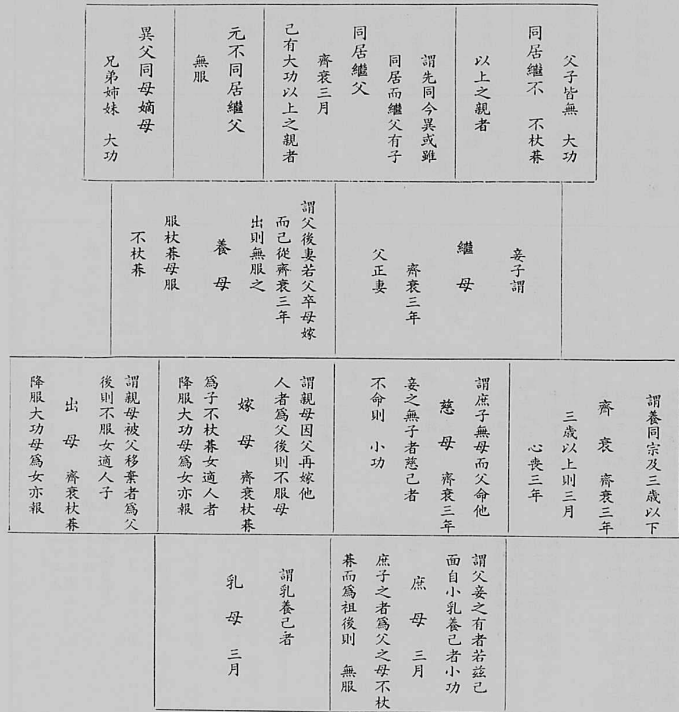
鵝洲申氏鷹巖公派世譜 附錄



養子生家服之圖



三父八母服之圖



三 殤 降 服 之 圖 (喪人成未即殤)

中從下無服	從祖祖母	長三月	姑 七月	長九月	伯 叔父	從祖父	長三月
中從下無服	從祖母	長三月	中七月	長九月	中七月	從父兄弟	長三月
中從下無服	從祖母	長三月	下五月	長九月	兄弟 中七月	從父兄弟	長三月
中從下無服	從祖母	長三月	下五月	長九月	兄弟 中七月	從父兄弟	長三月
中從下無服	從祖母	長三月	下五月	長九月	兄弟 中七月	從父兄弟	長三月
中從下無服	從祖母	長三月	下五月	長九月	兄弟 中七月	從父兄弟	長三月
中從下無服	從祖母	長三月	下五月	長九月	兄弟 中七月	從父兄弟	長三月
中從下無服	從祖母	長三月	下五月	長九月	兄弟 中七月	從父兄弟	長三月
中從下無服	從祖母	長三月	下五月	長九月	兄弟 中七月	從父兄弟	長三月
中從下無服	從祖母	長三月	下五月	長九月	兄弟 中七月	從父兄弟	長三月

大功之上中從上
齊衰之上中從上
小功之上中從下
此丈夫為上者服也

凡為殤服以次降一等
注凡年十九至十六為長殤十六至十二為中殤十一至八歲為下殤應服者長殤降服大功九月中殤五月應服大功以下以次降服下殤男子已娶女子許嫁皆不為殤滿八才為無服之殤

齊衰之上中從上
大功之上中從下
小功之上中從下
此丈夫為上者服也

祭 禮

제례라 함은 돌아가신 先祖와 고조부모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를 위시하여 배우자 기타 친족을 추모 또는 추도하기 위하여 돌아가신 일정한 날에 행하는 의식 절차를 말한다.

一、祭祀의 由來

제사를 지내게 된 동기를 살펴보면 먼 옛날 사람의 머리가 발달하지 못하여 원시적인 생활을 할 때는 천재 지변의 나 또는 사나운 맹수 등의 공격과 질병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늘과 땅, 심수(深水) 거목(巨木), 높은 산, 바다, 조상 등에 제 절차를 갖추어서 빌었던 것이니 이것이 즉 제사가 발생한 근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인간이 자연변화나 어떤 공격체 또는 질병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하여져 온 제사는 종세와 근세에 와서는 차츰 유교적인 조상숭배의 계도로 변화하였으나 그 대신 유교적인 번잡한 절차와 자연 숭배의 미신적인 의식이 혼합됨으로써 가정마다 연간 제사를 지내는 회수는 무려 四十八회 이상이 되었다.

二、祭祀의 種類

전항과 같이 많은 제사의 종류를 적어 보면, 가정마다 역

대조상의 신위를 모시는 사당이 있어서 매월 삭망(一일十五일) 한식(월일) 중상(三월三日), 단오(五월五日), 유두(六月十五일), 추석(八月十五일), 중기(九月九일), 동지(十一月十五일)에 지내는 속절시식(俗節時食)과 춘하 추동의 중월(仲月)에 올리는 사시제(四時祭)와 대대까지 올리는 기제사, 헌식과 추석,十月에 지내는 묘제 등이다.

※우리 가문(家門)에서는 기제는 물론 명절(名節) 제사로서 설(新正) 추석(秋夕) 등이 있고 회당(悔堂) 할아버지(諱元祿)의 不祧位(불조위) 제사가 있다.

◎忌祭(기제)

1. 기제의 대상

기제의 대상은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및 배우자로부터 다만, 그 후한 드흔 이내의 존주 등 함렬 또는 비속의 친족에 대하여는 기제를 지낼 수 있다.

기제(忌祭)는 고인이 별세한 날에 해당한 번석 올리는 제사로서 고인의 죽음을 더듬어 별세한 그 날을 정하여 잊지 못하여 몸과 마음을 정진하게 하고 금기(禁忌)한다 뜻에서 올리는 제사이며 그날을 기일(忌日) 또는 휘일(諱日)이라고도 한다.

기제의 봉사대상을 별세한 부모 조부모 증·고조부모와 배우자로 정한 것은 우리나라의 가족제도에 따른 생활형태로서 이분들은 생시에 한 가족으로써 생활을 같이 해왔고 가

장 친밀한 감정이 남아 있을 것이다. 조부모의 정은 일찍 돌아 가셨다 해도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 조부모이기 때문에 가정 생활에서 항상 귀에 익혀 들게 되고 한 가족으로서의 기억이 생생하여 진실으로 그분의 별세를 슬퍼하며 아쉽게 생각되게 느낄 것이다.

그러나 조부모의 세대(代)로 거슬러 올라가면 조상님들이 관 관념과 인식은 갖게 되나 친밀한 가족 관념으로서는 다소 등한시 되고 멀어지기는 하나 별세한 날이라 해도 추모에 대한 정이 커서 형식에 그치게 되어 봉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다만 자손이 없이 별세한 삼촌이나 숙모, 형제자매, 아들 또는 친조카들에 대하여서는 사정이 허용된다면 기제를 지내야 한다.

삼촌 내외부이나 형제자매, 아들 또는 친조카 등 역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가족 관념으로서 정이 두리할 것이며 인정상 별세한 날을 추모하는 뜻에서 간소하게라도 제사를 지내는 것이 인간으로 친족에 대한 정(情誼)라 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제례는 원시적인 형태로 계속하여 오다가 고려 말기와 이조를 통하여 종족의 유교사상에 의해서 제대로 형식과 절차를 갖추게 된 것이다.

고려 공양왕 2년 2월에 포은(圃隱) 정몽주 선생의 발의에 의해서 반들어진 제례 규정의 큰 바가 이상의 비술자리에 있는 사람이 3대, 6품 이상은 2대, 7품 이하의 일반 서민들은 부모만의 제사를 지내라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 7품 이상의 비술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수는 불과 2할 미만으로서 부모만을 봉사하는 일반 서민들의 수는 국민 전체의 8할 이상을 차지하였으므로 우리나라의 민속화된 기제의 봉사대상은 부모 당대 만이었다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부모 당대만의 기제를 지내 오던 민속이 한말 잠오경장의 여파로 계급사회가 무너지는 덕분에 모든 사람이 사대부의 예절을 좇느라고 4대부사를 하였던 것이다.

2. 기제의 일시

기제는 별세한 날 일몰후 적당한 시간에 지낸다. 기제의 일시는 제사를 지내는 날짜와 시간을 말하는 것이다.

기제는 고인이 별세한 날 저녁 식사 시간을 권속해서 올리는 것이 알맞았다. 저녁에는 직장을 가진 사람이나 기타 사회에 활동하는 모든 사람들이 집에 오는 시간이므로 제관이 들이 모든 모일 수 있는 좋은 시간이기도 하다.

※ 종래의 관례로서는 유교적인 예문에 따라서 명일(命日) 즉 은날(새벽자시(子時)에 지내야 한다고 해서 새벽 0 시부터 1 시 사이에 지냈던 것이다. 그래서 도시가 아닌 시골집은 이대로 계속하고 있다.

또한 이렇게 자시를 기해서 제사를 지내는 이유로는 신은 늦밤중에만 활동하다가 닭이 울기 직 전에 되돌아가야 한다는 미신적인 신도(神道)에서 유래된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근거는 별로하고 오늘날과 같은 사회적 구조로서는 제주의외의 제사 참사자들은 새벽 0 시 이후는 이른날 활동에도 지장이 많으므로 일몰후 적당한 시간을 택한 것이다.

이 경우 제사 日字를 잘못 알면 아니된다. 일몰후에 제사를 지낸다면 그전에 말로하면 破祭日 破되이라야 한다. 조조에 제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해야는 年者의 후일이 되기 때문이다.

3. 제가(祭家)

기제는 제주의 집에서 지낸다. 제가(祭家)라 함은 제사를 올리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서 제주의 집에서 밤이나 마루 등 평면에 따라서 적당한 곳을 깨끗이 청소하고 올리는 것이 좋다.

종래에는 가정에 따라서 생활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제청이라 하여 제사를 지내는 장소를 따로 마련해 두어서 항상 그 장소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었으나 그것은 허식에

불과하며 지나친 것이다.

4. 제주(祭主)

① 제주는 고인의 장자 또는 장손이 되며 장자 또는 장손이 없는 경우에는 차자 또는 차손이 제사를 주관한다.

② 상위한 경우에는 남편이나 그의 자손이, 제주가 되고 자손이 없이 상부한 경우에는 아내가 제주가 된다.

제주(祭主)라 함은 제사를 맡아서 지내는 데 주관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참사자(參祀者)

기제의 참사자는 고인의 직계자손과 근친자로 한다. 다만 부득이 참사할 수 없는 직계 자손은 자기가 있는 곳에서 별도로 고인을 추모하는 시간을 갖는다.

참사자(參祀者)라 함은 제사에 같이 참석해서 지내는 사람을 말한다.

기제는 고인이 별세한 날을 매년 되풀이해서 추모 또는 추도하는 의식으로 준수한 가족적인 행사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행사에서 행하는 제사는 고인의 직계 자손과 근친자들만이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고인의 직계자손으로서 먼 라지방에 출장을 하였거나 또는 기타의 사정으로 제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면 제사를 지내는 시기를 해서 부득이라도 고인을 추모하여야 한다.

장 친밀한 감정이 남아 있을 것이다. 조부모의 정은 일찍 돌아 가셨다 해도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 조부모이기 때문에 가정 생활에서 항상 귀에 익혀 들게 되고 한 가족으로서의 기억이 생생하여 진실으로 그분의 별세를 슬퍼하며 아쉽게 생각되게 느낄 것이다.

그러나 조부모의 세대(代)로 거슬러 올라가면 조상님들이 관 관념과 인식은 갖게 되나 친밀한 가족 관념으로서는 다소 등한시 되고 멀어지기는 하나 별세한 날이라 해도 추도에 대한 정이 커서 형식에 그치게 되어 봉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다만 자손이 없이 별세한 삼촌이나 숙모, 형제자매, 아들 또는 친조카들에 대하여서는 사정이 허용된다면 기제를 지내야 한다.

삼촌 내외부이나 형제자매, 아들 또는 친조카 등 역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가족 관념으로서 정이 두리할 것이며 인정상 별세한 날을 추모하는 뜻에서 간소하게라도 제사를 지내는 것이 인간으로 친족에 대한 정(情誼)라 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제례는 원시적인 형태로 계속하여 오다가 고려 말기와 이조를 통하여 종족의 유교사상에 의해서 제대로 형식과 절차를 갖추게 된 것이다.

고려 공양왕 2년 2월에 포은(圃隱) 정몽주 선생의 발의에 의해서 반들어진 제례 규정의 큰 바가 이상의 비술자리에 있는 사람이 3대, 6품 이상은 2대, 7품 이하의 일반 서민들은 부모만의 제사를 지내라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 7품 이상의 비술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수는 불과 2할 미만으로서 부모만을 봉사하는 일반 서민들의 수는 국민 전체의 8할 이상을 차지하였으므로 우리나라의 민속화된 기제의 봉사대상은 부모 당대 만이었다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부모 당대만의 기제를 지내 오던 민속이 한말 잠오경장의 여파로 계급사회가 무너지는 덕분에 모든 사람이 사대부의 예절을 좇느라고 4대부사를 하였던 것이다.

2. 기제의 일시

기제는 별세한 날 일몰후 적당한 시간에 지낸다. 기제의 일시는 제사를 지내는 날짜와 시간을 말하는 것이다.

기제는 고인이 별세한 날 저녁 식사 시간을 권속해서 올리는 것이 알맞겠다. 저녁에는 직장을 가진 사람이나 기타 사회에 활동하는 모든 사람들이 집에 오는 시간이므로 제관들이 모두 드모일 수 있는 좋은 시간이기도 하다.

※ 종래의 관례로서는 유교적인 예문에 따라서 명일(命日) 즉 은날(새벽자시(子時)에 지내야 한다고 해서 새벽 0 시부터 1 시 사이에 지냈던 것이다. 그래서 도시가 아닌 시골집은 이대로 계속하고 있다.

또한 이렇게 자시를 기해서 제사를 지내는 이유로는 신은 늦밤중에만 활동하다가 닭이 울기 직 전에 되돌아가야 한다는 미신적인 신도(神道)에서 유래된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근거는 별로하고 오늘날과 같은 사회적 구조로서는 제주의외의 제사 참사자들은 새벽 0 시 이후는 이른날 활동에도 지장이 많으므로 일몰후 적당한 시간을 택한 것이다.

이 경우 제사 日字를 잘못 알면 아니된다. 일몰후에 제사를 지낸다면 그전에 말로하면 破祭日 저녁이라야 한다. 조조에 제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해야는 午者의 후일이 되기 때문이다.

3. 제가(祭家)

기제는 제주의 집에서 지낸다. 제가(祭家)라 함은 제사를 올리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서 제주의 집에서 밤이나 마루 등 평면에 따라서 적당한 곳을 깨끗이 청소하고 올리는 것이 좋다.

종래에는 가정에 따라서 생활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제청이라 하여 제사를 지내는 장소를 따로 마련해 두어서 항상 그 장소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었으나 그것은 허식에

불과하며 지나친 것이다.

4. 제주(祭主)

① 제주는 고인의 장자 또는 장손이 되며 장자 또는 장손이 없는 경우에는 차자 또는 차손이 제사를 주관한다.

② 상위한 경우에는 남편이나 그의 자손이, 제주가 되고 자손이 없이 상부한 경우에는 아내가 제주가 된다.

제주(祭主)라 함은 제사를 맡아서 지내는 데 주관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참사자(參祀者)

기제의 참사자는 고인의 직계자손과 근친자로 한다. 다만 부득이 참사할 수 없는 직계 자손은 자기가 있는 곳에서 별도로 고인을 추모하는 시간을 갖는다.

참사자(參祀者)라 함은 제사에 같이 참석해서 지내는 사람을 말한다.

기제는 고인이 별세한 날을 매년 되풀이해서 추모 또는 추도하는 의식으로 근후한 가족적인 행사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행사에서 행하는 제사는 고인의 직계 자손과 근친자들만이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고인의 직계자손으로서 먼 라지방에 출장을 하였거나 또는 기타의 사정으로 제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면 제사를 지내는 시기를 해서 부득이라도 고인을 추모하여야 한다.

※종래의 관습으로는 기제사 날이 되면 멀리 올라왔던 사람도 반드시 집에 돌아와야 하며, 집에 있는 사람은 땅을 타고 가카를 거리라도 올라가지 않을 뿐더러 집에서 손님도 받지 않고 금기 해야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생활환경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사실일 뿐만 아니라 제사를 위해서 공무를 소홀히 하고 가계(家計)에 영향을 미치도록 한다는 것은 고인의 영혼도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을 것이다.

6. 행사 방법

기제는 양위가 모두 별세하였을 경우에는 합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행사 방법은 고인의 내외를 함께 모실 것인가〔합설(合設)이라고도 한다〕 또는 그냥 별세하신 한 분만을 모실 것인가〔단설(單設)이라고도 한다〕한 것을 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부부는 일신이라는 말과 같은 정념을 보더라도 당연히도 합설하는 것이 원칙이다.
※종래에는 가례문(家禮文)이라 하여 모든 가정의회의 절차와 형식이 조금씩 달랐던 것이다. 그 원인은 이로서 귀의 사색(喪色)〔四色(喪色)으로 각각 파, 갈, 파, 갈에서 파는 절차대로 따라 할 수 없다 하와 그 나름대로 조금씩 바꾸어서 달리했던 것이다. 그 중의사 제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서 봉사 방법이나 제물을 진설하는 형식도 각각 다르게 했기 때문에 유당의 제사의 감응이라 배 놓아라 하고 참전관라 등의 독자적인 말까지

나오게 되었다.

합설할 경우에는 제상을 두 분 따로 차릴 것이 아니고 한 제상에 멧밥과 잔만 두 분 것을 따로 놓으면 된다.

※명절 제사는 4대를 윗분부의 차례대로 지내왔으나 지금은 4대를 합설하고 있다.

그러나 합설하려면 윗어른을 왼쪽에서 차례로 모신다. 후손 아래부터는 무설(曲設)도 두면 된다.

7. 신위(神位)

신위는 고인의 지방으로 하되 부부의 한 경우의는 사진으로 한다.
신위(神位)라 함은 고인의 영혼 즉 신을 모시는 곳을 말한다.

기제의 본뜻이 고인의 별세한 날을 추모하는 의식이 라고 하였으니 그 추모하는 정을 제대로 고취시키려면 고인의 생전 모습이 그대로 나타난 사진용 모시는 것이 좋다.

그러나 별세하신지 오래 되어 사진이 없을 경우에는 지방으로 한다. 사람이 죽은 후에 상례와 제사를 치르는 데는 비용이 최소로 줄이려는 한이 있더라도 생전의 사진 한 장씩은 꼭 적어 두었다가 앞으로 별세하시는 분의 대해서는 상례의 영좌와 제사의 신위만은 여하한 일이 있어도 사진으로 모시도록 해야 한다.

※옛날에는 종족의 수를 세는 첩자(戶口)의 식에 따라서 위호(衛護)라고 하여 사대부가(士大夫家)에서는 집집마다 사당(祠堂)을 짓고 역대 조상들의 신주를 모시고 수많은

8. 지방(紙榜)

제사를 지냈던 것이다.
지방이라 함은 어느 분의 신위표시(정전면)에 맞게 하기 위하여 신장의 표를 써서 붙여 놓는 것을 말한다.
지방은 깨끗한 흰 창호지나 또는 모조지를 적당한 크기로 오려서 기제를 드리지 전 분의 판제(判紙)의(一)아마지 제사의(二)아마지 신위(三)제물(四)사과와 같이 먹갈로써 써서 제상 위의다 정면(正面)을 향하여 붙여 놓는다.
제물로 내외분 양위를 합설할 경우에는 양위를 지방을 각각 따로 써서 나란히 붙인다. 이 경우 양위를 붙일 수 있는 양분은 각각 두가 제상을 정면으로 향해서 양자의 지방을 왼쪽, 오른쪽 양자의 지방은 바른 편으로 붙인다.
지방의 크기는 가로 5cm 길이 15cm 정도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 ※(별표사식)

9. 축문(祝文)

축문(祝文)이라 함은 제사를 지내는데 고인을 추모 또는 추모하기 위하여 고하(高下)를 말한 것이다.
축문은 깨끗한 흰 창호지나 또는 모조지의다 보통으로 써야 하며, 고인의 영혼(신)에게 읽어드리는 것이다.
※(별표사식)

10. 제수(祭需)

제수(祭需)라 함은 제사에 차리는 음식물을 말한다.

11. 제부(祭服)

제사는 고인을 추모하기 위한 정성의 표시라고 할 수 있다. 정성의 표시는 물질로써 가름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수(心)나오는 정성이라야 한다.
그러므로 첫째 제수는 별도로 많은 돈을 들여서 정성으로 차리기 보다는 평상시 사람이 즐겨하는 음식 또는 가정에서 먹는 민생 음식으로 깨끗하게 차리면 좋다.
번거로운 의식 절차로 행하는 것만이 의례로 여겼던 옛날의 상현(喪現)과 「마음은 다한 것이 제사의 근본이라 할 수 있고 물질로만 다한 것은 제사의 실이다」(盡其心者祭之本, 盡其物者祭之末)하였다. ※(陳設圖)신선도(神位圖)
祭需을 장만 할 때는 모두 재가하고 정성을 다하여 장만하여야 한다.

12. 제지내는 順序

제부는 깨끗한 평상복을 정장으로 갖추어야 한다.
제부(祭服)이라 함은 제사를 올릴 때 입는 복장을 말한다.
제부는 평시의 입는 옷이라도 깨끗한 것으로 잘라 입어야 하며 양복을 입을 경우에는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매고 상의를 입을 여야 한다. 한편 복을 입을 경우에는 두루마기를 입어야 한다. 또한 그 위의 도포(道袍)를 입고 후진(後巾)을 쓰면 더욱 엄숙하게 보인다.

12. 제지내는 順序

제사 지내는 順序라 함은 제사를 지내는 절차와 순서를 말한다.
첫째 신위봉안(神位奉安)

고인의 신위를 제청(祭廳)에 모시는 것으로서 앞서 설명한 사전이나 지방을 깃상 후면에 모신다.

※참고... 先祭神 後降神이나 先降神 後祭神이나 祭主를 모시고 祭祀지낼 때는 祭神을 먼저 하고 降神을 뒤에 하며 紙榜을 모시고 祭祀지낼 때는 降神을 먼저 하고 祭神을 뒤에 한다는 말이 있는데 지방도 祭主와 同一하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 어느 편이 옳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때는 自己 祖上들이 傳하여 오던대로 하면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紙榜으로 祭祀한다면 先降神 後祭神에 依함이 妥當하다고 본다.

※묘사(墓祀)에는 먼저 참신하고 뒤에 장신 한다.

① 降神(강신)

祭主가 향을 향로에 피우고 再拜하고 다시 꿇어 앉아서 執事者(집사자)가 올리는 잔을 두손으로 받아 左手로 잔을 들어 술을 모사에 세번에 기울여 다른 뒤에 잔을 대에 받쳐 집사자에 주고 다시 再拜한다. (모사 그릇이 없으면 퇴각 그릇으로 代用하기도 한다.)

술을 피우는 것은 魂을 맞이하는 것이요 모사에 술을 부는 것은 甕을 맞이하는 것이라 한다. 향은 三香을 피운다.

② 參神(참신)

고인의 신위에 인사하는 절차로서 모든 참사자가 일제히 두번 절한다.

헌작(獻酌)... 술을 올리는 절차로서 헌 잔만 드리는 것이 원칙으로 하나 제주가 여러 형제거나 또는 삼손들이 여러분 이 제사서 참사자가 여러 사람일 경우는 석잔(삼헌)三獻(술을 올려도 두방하다.)

단 獻문(祝文)이 있을때 삼헌을 하고 축문이 없으면 아헌(亞獻) 종헌(終獻)은 생략하는 것이 상례다. (無祝單獻 有祝三獻)

※註... 以上은 正禮이나 모처럼 멀리서는 子孫들이 設祭하다면 그 情分上 三獻 卽次를 마친 後 獻酌하게하는 것도 無妨 할 것으로 본다.

③ 初獻(초헌) 첫 잔 올리기

祭主가 神位앞에 꿇어 앉아서 술잔을 올리는 방법으로서는 술을 가득 다른 술잔을 제주가 두손으로 향를위를 통하여 올려주면 집사자가 받아서 「겟」발음 쪽(제주가 심쪽)과 그릇사이에 올려놓는다. 이때 제반케(啓飯蓋)를 연다.

헌작은 단절이면 헌잔을 드리고 합설이면 양위분에 각각 헌잔씩 드려야 한다 따라서 수대로 술잔을 올리는 것이다.

④ 祝文 읽기

祭主의 初獻이 끝나면 參祀者一同이 꿇어앉고 祝은 祭主 左側에서 東向으로 앉아 읽는다. 읽기가 끝나면 參祀者는 조용히 일어나고 祭主는 再拜한다.

⑤ 亞獻(아헌) 둘째 잔 올리기

亞獻은 主婦가 올리는 것이 禮法이지만 主婦가 올리기 어려울 경우에는 祭主의 兄弟나 그 다음가는 最近親者의는 參祀者가 祭主의 初獻과 같이 하나, 모사에 술을 따르지 않는다.

⑥ 終獻(종헌) 끝 잔 올리기

終獻은 亞獻者의 다음가는 親賓者가 亞獻과와 같이 한다. 그러나 終은 終음만 좀 북어서 올린다. (終의 婦 또는 甥姪)

단 亞獻을 第之長이 하였을때는 終獻은 그 弟婦가 하는 것이 禮이다.

⑦ 添酌(첨작)

첨작은 종헌이 끝나 뒤에 얼마 동안 있다가 七음쯤 다른 잔에 제주를 세번씩 더 따북어 잔을 가득 채우고 祭主는 첨작 후 拜禮한다.

⑧ 開飯(개반) 插匙(삽시) 正箸(정저)

호반(입시)라고도 한다. 수저를 깨끗이 치우는 도적위에 치범 머리쪽이 제주의 좌로 가게하여 놓는다.

⑨ 闔門(합문)

祭主와 參祀者一同이 밖으로 나아가 門을 닫고 扃요리가 된다. 밖으로 나가지 못할 곳에서는 扃을 드리우든지 그렇지 못할 때는 걸어앉아 엎드린다.

합문의 본 뜻은 고인의 제수를 응장하는 데 자손들로서 바르지커보기가 송구스럽기 때문에 자의를 피하고 조용히 잠수시라는 것이다.

⑩ 啓門(계문)

祭主가 앉아서 세번 기침하고 門을 열고 祭室로 들어가면 一同이 따라 들어간다. 「이상 후단일 경우 원상 대로 하여 복위(復位)」

그러나 이러한 것은 하나의 허식으로서 당연히 폐지해야 하며 고인이 제수를 많이 응장하게 하기 위해서는 문을 닫고 밖으로 나가지 보라는 그앞에서 마음속으로 비는 것이 조상을 위하는 도리도 될것같은데 禮에 그렇게 되어 있다.

⑪ 獻茶(헌차)

熱冷(즉법) || 醴여서 식힌 물(을)과 바우어 올리고 메(계) 사발(을) 세 손잡이서 물에 막아 놓고 정제한다. 이때 참사자는 잠시 그(을)의 리를 읊(한)하여 무념을 하면서 일의 당.

헌다의 뜻은 햇밤을 뜯어 말아서 많이 잠수시키는 것이다. 헌다는 원래 중국에서 들어온 말로서 말이 아니고 차(茶)를 쓰는 것이 원칙이나 우리 나라의 풍속과 달라서 차를 일 상음료수로 쓰지 않았던 것이다. 이와같이 차를 쓰는 제사를 말 할 때 다례(茶禮) 또는 차음으로 차례라고도 한다.

祝官은 祭祀를 잘 치루었다는 뜻으로 利成을 祭主에 告하면 哭祀일 時는 左右參祀者가 哭을 하고 哭을 마치면 수켜를 내리고 飯개를 덮는다. 그러나 近來哭祀는 없어진다.

12 撤匙(철시) 覆飯(부반)

수반그릇에 놓인 수켜를 지워 본래자리에 놓고 매 그릇의 뚜껑을 덮는다.

13 辭神(사신)

祭主와 參祀者가 一同 再拜하고 神主는 祠堂으로 모시고 사신이라 함은 고인의 영혼과 차별하는 절차로서 참사자가 일제히 신위앞에 두번 절한다.

이로써 제사를 올리는 절차는 끝나는 것이다.

14 撤床(철상)

祭需를 물린다.

15 飲福(음복)

祭需飲食 갓가지를 물고 參祀者에 分配供給한다. 但飲福을 마치고 前에는 祭服을 벗지 않고 담배도 피우지 않는 것이 正禮이다.

◎ 年始祭(년시제)

연시제는 正月元日 아침에 지낸다. (단 양력으로 시행할 때 陽一月一日로 한다.) 연시제는 새해를 맞는 첫날 아침에 돌아가신 부모조상에게 親해의 돌보아 주신 감사와 새해 一年 동안 무사히 지내기를 기원하는 뜻과 새배로서 드리게 사이다.

1. 年始祭의 對象

直系四代로 하고 祭家 祭主 參祀者 및 祭服 등은 위의 기제(忌祭)에 準한다.

2. 봉사방법

봉사 방법은 參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봉사 방법은 봉사 대상이 되는 여의분을 한꺼번에 모시고 제사를 올린다. 그러나 봉사대상이 고조부모,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및 배우자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進선은 고·증·조부모 내외분, 부모 내외분 및 배우자로 제상을 각각 마련

하이드 무방하나 오늘날의 형편이 제상을 따로 마련하기 어려운 점이 많을지언정 오랑해서 알맞게 합설함이 좋겠다.

3. 신 위

신위는 기제사에 증한다.

기제사의 신위항에서 설명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4. 지방

지방은 기제사에 증하되 합사하는 경우에는 봉사대상을 열거한다. 열거의 경우 대(代)의 3간을 가위로 잘라 구별한다. 단, 지방은 高祖父 曾祖父 祖父 父母로 따로 쓰는 것이 좋다.

5. 제 수

제수는 기제사에 증하되 매는 띄우므로 가름한다. 제수는 기제와 같이 평상시의 반상 음식으로 자연스럽게 진설한다. 우리나라의 고유한 민속으로 정초에는 「고근지」 「떡국」을 증하되 「연시제사」는 「대신」 「떡국」으로 차린다. 떡국은 합사하는 경우라도 봉사 대상 자위(各位)에 따라 한 그릇씩 띄워서 차려야 하며 수저도 각각 한벌씩 놓는다.

6. 제식절차

연시제의 절차는 기제에 증하되 증문을 위치 아니한다.

연시제의 절차는 기제와 같은 것이니 설명을 생략한다. 연시제는 돌아가신 어른들에게 새배하는 의식인 것으로 축문의 필요성은 없다. 다만 헌작은 「간원」로 한다.

증조부모	顯 曾 祖 妣 孺 人 某 貫 某 氏 神 位
고조부모	顯 高 祖 妣 孺 人 某 貫 某 氏 神 位
弟 弟 嫂	亡 弟 處 士 ○ ○ 神 位
兄 兄 嫂	顯 兄 處 士 府 君 神 位
夫	顯 辟 處 士 府 君 神 位
妻	故 室 孺 人 某 貫 某 氏 神 位

※ 位만 모실 때는 어느 한 변만 쓰면 되는 것이다. ※ 宗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 제사 지방

현 증조비 정부인 증흥 안씨 신위
顯 曾祖妣 貞夫人 順興 安氏 神位
현 증조고 정헌 대부 관찰사 부군 신위
顯 曾祖考 正憲 大夫 觀察使 府君 神位
... 曾祖父는 官等은 正二品이고 觀察使를 지냈다.
... 曾祖父는 武科 宣德官을 지냈었고 勳은 위에 正三品 司果
의 贈職을 받았던 것이다.

현 고조비 즉부인 동래 정씨 신위
顯 高祖妣 淑夫人 東萊 鄭氏 神位
현 고조고 증정증장군 사과행어정교위 신정관부군 신위
顯 高祖考 贈 折衝將軍 司果 行 勳節 村府 宣德官 府君 神位
참고... 高祖父는 武科 宣德官을 지냈었고 勳은 위에 正三品 司果
의 贈職을 받았던 것이다.

◎節祀(절사)

절사(節祀)는 축석날 가을 햇곡식으로 만든 제수를 마련하여 직계조상에 제 축수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하여 지내는 제사이다.
이 제사는 조상들에 친신(薦新)하는 의식 절차라고 볼 수 있으나 봉사(대신)는 모든 직계조상(四代)을 한 자리에 모시도록 한 것이다.

1, 절사의 일시

절사는 축석날 아침에 지낸다.
햇곡식이 늦어서 음식을 빚을 수 없는 때에는仲陽節(陰九

月九日)날 지내기도 한다.
2, 節祀의 對象
直系四代로 하고 祭家 祭主 參祀者 祭服等은 위의 기제에 준한다

3, 奉祀方法

神位 지방사진 등도 또한 기제와 같다.

4, 제 수

제수는 기제(忌祭)에 준하되 매는 반드시 햇곡으로 한다.
제수는 기제사와 같이 평상시의 간소한 반상 음식으로 자연스럽게 한다.
절사는 선조여러분에게 축수감사의 뜻으로 올리는 제사이기에 배(祭飯) 대신 햇쌀로 만든 떡과 밥으로 올리는 것이다.
진설방법은 앞에서 설명한 기제를 참고하면 된다.

5, 제식절차

제식 절차는 기제에 준하되 先降神後參神으로 한다.
제식 절차는 앞에서 설명한 기제에 준하여 하되 다만 헌작에 있어서는 단편으로 한다.

◎墓祀(묘사)

묘사는 봉묘에 제사를 모시는 것으로 옛날에는 春夏秋冬四時로 행하였다고 하나 지금은 陰十月中에 定日로 하거나 또는 적당한 날을 잡아서 제사를 지낸다.
墓祀對象은 歷代先祖墓所에 祭祀지내며 諸般節次는 忌祭祀에 準하나 祭式順序에 다만 先參神後降神으로 하며 祝文이 忌祭와 다를 뿐이고 茅砂(묘사)그릇은 자연 필요 없다.

莎草(사초)

묘의 벌인을 황생잡초(荒生雜草)를 축석(秋夕)전후인 陰八月에 하거나 늦어도 陰九月以內로 벌초(伐草)하여 청정(淸淨)하게 다듬는다.

神位

羹	餅	食鹽	果
羹	魚	鹽	果
匙筋	炙	湯	沈菜
湯	湯	醫	果
羹	肉	蔬	果
飯	麵	脯	果

嶺南地方 簪纓家 祭禮陳設原圖(單設)

(依松園法在寬編著四禮要選)
祭禮는 家家禮가 달아 집집마다 달리하는 수가 있다
는 것을 알아 두어야 한다.

各黨稱號

父黨(父子間의 호칭)

伯叔(아버지를 일컫는)

자차(자차)

가친 노친(가엾은 노친)

가관(家觀) 家親(자기 아버지를 남에게 말할 때)

촌장(宗長) 宗長(자기 아버지를 남에게 말할 때)

부친(父親) 父(자기 아버지를 남에게 말할 때)

선친(先親) 先親(자기 아버지를 남에게 말할 때)

선부(先夫) 先夫(자기 아버지를 남에게 말할 때)

선친(先親) 先親(자기 아버지를 남에게 말할 때)

선부(先夫) 先夫(자기 아버지를 남에게 말할 때)

선친(先親) 先親(자기 아버지를 남에게 말할 때)

선부(先夫) 先夫(자기 아버지를 남에게 말할 때)

선친(先親) 先親(자기 아버지를 남에게 말할 때)

선부(先夫) 先夫(자기 아버지를 남에게 말할 때)

선친(先親) 先親(자기 아버지를 남에게 말할 때)

선부(先夫) 先夫(자기 아버지를 남에게 말할 때)

선친(先親) 先親(자기 아버지를 남에게 말할 때)

선부(先夫) 先夫(자기 아버지를 남에게 말할 때)

선친(先親) 先親(자기 아버지를 남에게 말할 때)

선부(先夫) 先夫(자기 아버지를 남에게 말할 때)

선친(先親) 先親(자기 아버지를 남에게 말할 때)

선부(先夫) 先夫(자기 아버지를 남에게 말할 때)

선친(先親) 先親(자기 아버지를 남에게 말할 때)

선부(先夫) 先夫(자기 아버지를 남에게 말할 때)

선친(先親) 先親(자기 아버지를 남에게 말할 때)

선부(先夫) 先夫(자기 아버지를 남에게 말할 때)

선친(先親) 先親(자기 아버지를 남에게 말할 때)

선부(先夫) 先夫(자기 아버지를 남에게 말할 때)

선친(先親) 先親(자기 아버지를 남에게 말할 때)

선부(先夫) 先夫(자기 아버지를 남에게 말할 때)

선친(先親) 先親(자기 아버지를 남에게 말할 때)

선부(先夫) 先夫(자기 아버지를 남에게 말할 때)

선친(先親) 先親(자기 아버지를 남에게 말할 때)

선부(先夫) 先夫(자기 아버지를 남에게 말할 때)

선친(先親) 先親(자기 아버지를 남에게 말할 때)

선부(先夫) 先夫(자기 아버지를 남에게 말할 때)

선친(先親) 先親(자기 아버지를 남에게 말할 때)

선부(先夫) 先夫(자기 아버지를 남에게 말할 때)

선친(先親) 先親(자기 아버지를 남에게 말할 때)

선부(先夫) 先夫(자기 아버지를 남에게 말할 때)

◎墓祭祀文

維歲次... 敢昭告于...

◎墓祭祀土地祝

維歲次... 敢昭告于... 土地之神...

아들(을) 일컫는

◎祖孫(조손간의 호칭)

조부(아버지를 일컫는)

조부(아버지를 일컫는)

조부(아버지를 일컫는)

조부(아버지를 일컫는)

조부(아버지를 일컫는)

조부(아버지를 일컫는)

조부(아버지를 일컫는)

조부(아버지를 일컫는)

조부(아버지를 일컫는)

조부(아버지를 일컫는)

조부(아버지를 일컫는)

조부(아버지를 일컫는)

조부(아버지를 일컫는)

조부(아버지를 일컫는)

조부(아버지를 일컫는)

조부(아버지를 일컫는)

조부(아버지를 일컫는)

조부(아버지를 일컫는)

조부(아버지를 일컫는)

선백씨장 선종씨장
先伯氏丈 先仲氏丈(사촌의 남의 형을 호칭 말할 때)

사제 가제 아제 기제
舍弟 家弟 阿弟 幾弟(數次順序)(가기 아아를 남에게 말할 때)

영계씨 현계씨 계방
令弟氏 賢季氏 季方(남의 아아를 말할 때)

망제 亡弟(자기 죽은 아아를 말할 때)

고계씨 고계씨
故季氏 故弟氏(남의 죽은 아아를 말할 때)

인행 雁行(남의 형제를 들일 때)

종숙질 재종숙질즉차
從叔姪 再從叔姪做此

종숙주 宗叔主(당숙(五寸)을 일컬음)

종질 당질
從姪 堂姪(五寸 조카 자기 스스로를 말할 때)

비종숙 비당숙
非宗叔 非堂叔(자기 五寸 숙을 남에게 말할 때)

중원장 중숙장 당원장
從阮丈 從叔丈 堂阮丈(남의 五寸 숙을 말할 때)

선종원장 선종숙장 선당숙장
先從阮丈 先從叔丈 先堂叔丈(남의 죽은 五寸 숙을 말할 때)

비종질 비당질
非從姪 非堂姪(자기 당질을 일컬음과)

영종질씨 영당질씨
令從姪氏 令堂姪氏(남의 당질을 말할 때)

◎從兄제 宗형제
從兄(再從三從도 이에 포함)

종형주 宗형주
從兄主(四寸형을 일컬음)

종제 宗제
從弟(四寸아아가 자기 스스로를 말할 때)

영종씨 영백종씨
令從弟氏 令伯從弟氏(남의 종형을 일컬음과)

비종제 종아
非從弟 從阿(자기 종제(四寸)을 남에게 말할 때)

영종씨 현종씨
令從弟氏 賢從弟氏(남의 종제를 일컬음과)

◎族祖 宗조 손숙질형제 재종이하종족
族祖(孫叔姪兄弟 再從以下宗族)

종조주 계삼사
從祖主(再三四)(종조를 일컬음)※例 再從祖 三從祖 四從祖

중손 從孫(再三四)(종손자 자기 스스로를 일컬음)

종숙주 宗숙주
從叔主(再三四)(종숙을 일컬음)※例 再從叔主 三從叔主 四從叔主

종질 從姪(再三四)(종질을 자기 스스로를 일컬음)

종형주 宗형주
從兄主(再三四)(종형을 일컬음)

종제 從弟(再三四) 종제 자기 스스로를 말할 때

존고숙장 尊姑叔丈(남의 고모부를 말할 때)

◎妹夫 매부

인형 자형
姪兄 姪兄(매부를 일컬음)

귀계 인계
婦弟 姪弟(매부에 대한 자기 스스로를 일컬음)

☐ 모당모 母黨母

모주 자모 모친
母主 慈母 母親(어머니를 일컬음)

자친 노자
慈親 老慈(자기 어머니를 남에게 말할 때)

회당 대부인 자당 태선인
萱堂 大夫夫人 慈堂 大碩人(남의 어머니를 말할 때)

선비 선자 선모친
先妣 先慈 先母親(자기 어머니의 사후호칭)

선대부인
先大夫夫人(남의 어머니 사후호칭)

◎祖母 조모

조모주 祖母主(할머니를 일컬음)

노조모 왕모
老祖母 王母(자기 조모를 일컬음과)

◎姑叔姪 고숙질

고숙주 高숙주
姑叔主(고모부를 일컬음과)

고질 부질
姑姪 婦姪(고모부에 대한 자기 스스로를 일컬음과)

비고숙 비작숙
非姑叔 非作叔(자기 고모부를 남에게 말할 때)

족조주 족대부주
族祖主 族大夫主(족조를 일컬음)

족손 族孫(족손 자기 스스로를 일컬음)

족숙주 宗숙주
族叔主(족숙을 일컬음)

족질 族姪(족질 자기 스스로를 말할 때)

비족조 비족형
非族祖 非族兄(자기 족조를 족형을 남에게 말할 때)

귀족장 귀족숙 영족씨 귀족
貴族丈 貴族叔 令族氏 貴族(라인의 일가를 말할 때)

족장 族丈(나이 많은 일가 자기 스스로를 말할 때)

족씨 族氏(나이 적은 일가 자기 스스로를 말할 때)

족종 족망
族宗 族末(형렬같은 일가 자기 스스로를 말할 때)

종하 종생
宗下 宗生(동종간 소원한 자를 일컬음)

왕대부인 존왕대부인 존조모
王大夫人 尊王大夫人 尊祖母(남의 조모를 일컬을 때)
조비 선조모
祖母 先祖母(자기 조모 사후 호칭)
선왕대부인 선왕대부인
先王大夫人 先王母夫人(남의 조모 사후 호칭)

◎ 백중계모
伯仲叔季母

백모 즉 계모
伯母 仲母 叔母 季母 伯母 仲母 叔母 季母(백중모를 일컬을 때)
백모 즉 모
伯母 叔母(자기 백중모를 남에게 말할 때)
존백모부인 존백모부인
尊伯母夫人 尊叔母夫人(남의 백중모를 일컬을 때)
선백모 선숙모
先伯母 先叔母(자기 백중모의 사후 호칭)

◎ 고모
姑母(종고모 대고모도 이에 준함)

고모 즉
高祖母(고모를 일컬음)
비고모
非高祖母(자기 고모를 남에게 일컬을 때)
존고모부인
尊高祖母(남의 고모를 일컬을 때)
내외종간(의사촌과 고종사이를 말함)

◎ 수
嫂(從再從嫂도 이에 준함)

형수 즉 계수
兄嫂 仲嫂 季嫂(자기 형수 계수를 일컬음)
존수씨부인 영수씨부인
尊嫂氏夫人 令嫂氏夫人(남의 수씨를 일컬을 때)
고수씨 랑수씨
故嫂氏 亡嫂氏(자기 형수씨의 사후 호칭)
과수
寡嫂(답편없는 수씨)
수 즉 간
嫂 叔間(형제의 아내와 남편의 형제사이)

◎ 자매
姊妹

자주
姊 主(년상인 누이를 일컬음)
아매
阿妹(손아래 누이를 일컬음)
자씨 아매
姊氏 阿妹(자기 자매를 남에게 일컬을 때)
영자씨 영매씨
令姊氏 令妹氏(남의 자매를 말할 때)
남매간
男妹間(남녀 형제를 말함)
모실 모성실
某室 某姓室(자매 집너가 성은 즉 본가에서 쓸)※시가의 성
을 뜻함

외조부 즉 외조부모
外祖父 外祖母(외조부모를 일컬음)
의손
外孫(외부모에 대한 자기 스스로를 일컬음)
외조부 외조모
外祖父 外祖母(자기의 외조부모를 일컬을 때)
존외조장 존외조모
尊外祖父 尊外祖母(남의 외조부모를 일컬을 때)

◎ 외숙부모
外叔父母

내숙 즉 외숙 즉 표숙 즉 외숙모
內舅 外叔 表叔 表叔 外叔母(외숙부모를 일컬음)
생질 표질
甥姪 表姪(의숙에 대한 자기를 일컬음)
비외숙 비표숙 비외숙모
非外叔 非表叔 非外叔母(자기 외숙모를 남에게 말할 때)
존외숙장 존외양장 키표숙 존외숙모
尊外叔大 尊渭陽大 貴表叔 尊外叔母(남의 외숙부를 일컬을 때)

◎ 외종형제
外從兄弟

내형 즉 표형 즉
內兄 主表兄 主(의종형을 일컬음)

내종계 의종계
內從弟 外從弟(표종 스스로를 일컬음)

◎ 이숙부모
姨叔父母(姨는 어머니 또는 妻의 姊妹系列)

이숙 즉 이모 즉
姨叔 主 姨叔主(이 부모를 일컬음)
이질
姨姪(이 부모에 대한 자기 스스로를 일컬음)

◎ 이종형제자매
姨從兄弟姊妹

이종형 즉 이자씨
姨從兄 主 姨姊氏(이형 이자를 일컬음)

◎ 귀당 처
妻黨 妻

실인
室人(처를 일컬음)
부
夫(처에 대한 자기 스스로를 일컬음)
형처 종처 세근 노처 병처 내자
荆妻 拙妻 紅君 老妻 病妻 內者(자기 처를 말할 때)
현랑 내상 존랑 현호
賢郎 內相 尊郎 賢壺(남의 처를 일컬을 때)
망실 망처 고실
亡室 亡妻 故室(자기 처의 사망후 호칭)

生日은 관신(誕辰)이라고 한다. 其他 死亡日을 諱日、忌祭日、入祭日(제사 드리는 날) 罷祭日(제사 지내고 난 날) 慘慼、慘喪、冤逝、(子 또는 孫이 父母 祖上에서 죽었을 때 인사 용어)

千支 및 時候

千支

千支는 十干과 十二支로 區別이 되는데 千은 陽에 屬하고 支는 陰에 屬하므로 千은 天이며 支는 地로 通한다. 그리므로 祝文에 五 年月日은 千支로 쓰게 되어 있다. 十干는 甲 乙 丙 丁 戊 己 庚 辛 壬 癸이며, 十二支는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이고 六十千支는 다음과 같다.

- 甲子 乙丑 丙寅 丁卯 戊辰 己巳 庚午 辛未 壬申 癸酉 甲戌 乙亥 丙子 丁丑 戊寅 己卯 庚辰 辛巳 壬午 癸未 甲申 乙酉 丙戌 丁亥 戊子 己丑 庚寅 辛卯 壬辰 癸巳 甲午 乙未 丙申 丁酉 戊戌 己亥 庚子 辛丑 壬寅 癸卯 甲辰 乙巳 丙午 丁未 戊申 己酉 庚戌 辛亥 壬子 癸丑 甲寅 乙卯 丙辰 丁巳 戊午 己未 庚申 辛酉 壬戌 癸亥

千支로 時間을 따지는 법

一 支는 只今 時間으로 二 時間이며 初와 正(中)은 一 時間

이다. 또 支마다 刻이 있는데 一刻은 一五分이며 刻 및 에 分이 있는데 分은 只今 時間의 分과 같다.

- 子時 午後一時에서 午前一時까지
丑時 午前一時에서 午前三時까지
寅時 午前三時에서 午前五時까지
卯時 午前五時에서 午前七時까지
辰時 午前七時에서 午前九時까지
巳時 午前九時에서 午前十一時까지
午時 午前十一時에서 午後一時까지
未時 午後一時에서 午後三時까지
申時 午後三時에서 午後五時까지
酉時 午後五時에서 午後七時까지
戌時 午後七時에서 午後九時까지
亥時 午後九時에서 午後十一時까지

十二支에 該當하는 動物의 이름

- 子는 쥐(鼠) 丑은 소(牛) 寅은 범(虎) 卯는 토끼(兔)
辰은 용(龍) 巳는 뱀(蛇) 午는 말(馬) 未는 양(羊)
申은 원숭이(猿) 酉는 닭(鷄) 戌은 개(犬) 亥는 돼지(豚)
一月 正月 端月 孟春 新元 春寒 新春 新正 春陽 鐸今 孟陬 沐陽 青陽 履元

Table with 2 columns: 千支 (e.g., 二月 令月, 三月 蚤月) and 時候 (e.g., 如陽 仲春 春和 餘寒 春股 仄寒)

古 甲子

- 甲 閏逢(알봉) 子 困敦 (근돈)
乙 旃蒙(전몽) 丑 赤奮若(적분약)
丙 柔兆(유조) 寅 攝提格(집제격)
丁 強圉(강어) 卯 單閼(단갈)
戊 著雍(저용) 辰 執徐(집서)
己 屠維(두유) 巳 大荒落(대황락)
庚 上章(상장) 午 敦牂(둔장)
辛 重光(중광) 未 協洽(협합)
壬 玄默(현익) 申 涿澹(주담)
癸 昭陽(소양) 酉 作噩(작악)
亥 大淵獻(대연현) 戌 閼茂(엄무)

Table with 3 columns: 綱名 (e.g., 君, 臣, 網), 三 (e.g., 君, 臣, 網), 綱 (e.g., 父, 子, 網)

鵝洲申氏鷹巖公派世譜附錄

Table with columns: 年數, 禮紀, 西紀, 新羅, 百濟, 千支. Contains genealogical data for the first family branch.

Table with columns: 年數, 禮紀, 西紀, 新羅, 百濟, 千支. Contains genealogical data for the second family branch.

Table with columns: 年數, 禮紀, 西紀, 新羅, 百濟, 千支. Contains genealogical data for the third family branch.

Table with columns: 年數, 禮紀, 西紀, 新羅, 百濟, 千支. Contains genealogical data for the fourth family branch.

Table with columns: 年數, 禮紀, 西紀, 新羅, 百濟, 千支. Contains genealogical data for the fifth family branch.

Table with columns: 年數, 禮紀, 西紀, 新羅, 百濟, 千支. Contains genealogical data for the sixth family branch.

鵝
洲
申
氏
鷹
嚴
公
派
世
譜
附
錄

年數	禮紀	西紀	新羅	渤海	干支	年數	禮紀	西紀	新羅	渤海	干支
1203	3117	784	5	48	甲子	1263	3057	724	23	6	甲子
1202	3118	785	元聖	49	乙丑	1262	3058	725	24	7	乙丑
1201	3119	786	2	50	丙寅	1261	3059	726	25	8	丙寅
1200	3120	787	3	51	丁卯	1260	3060	727	26	9	丁卯
1199	3121	788	4	52	戊辰	1259	3061	728	27	10	戊辰
1198	3122	789	5	53	己巳	1258	3062	729	28	11	己巳
1197	3123	790	6	54	庚午	1257	3063	730	29	12	庚午
1196	3124	791	7	55	辛未	1256	3064	731	30	13	辛未
1195	3125	792	8	56	壬申	1255	3065	732	31	14	壬申
1194	3126	793	9	元義	癸酉	1254	3066	733	32	15	癸酉
1193	3127	794	10	成王	甲戌	1253	3067	734	33	16	甲戌
1192	3128	795	11	康王	乙亥	1252	3068	735	34	17	乙亥
1191	3129	796	12	2	丙子	1251	3069	736	35	18	丙子
1190	3130	797	13	3	丁丑	1250	3070	737	李成	19	丁丑
1189	3131	798	14	4	戊寅	1249	3071	738	2	20	戊寅
1188	3132	799	昭聖	5	己卯	1248	3072	739	3	21	己卯
1187	3133	800	哀莊	6	庚辰	1247	3073	740	4	22	庚辰
1186	3134	801	2	7	辛巳	1246	3074	741	5	23	辛巳
1185	3135	802	3	8	壬午	1245	3075	742	景德	24	壬午
1184	3136	803	4	9	癸未	1244	3076	743	2	25	癸未
1183	3137	804	5	10	甲申	1243	3077	744	3	26	甲申
1182	3138	805	6	11	乙酉	1242	3078	745	4	27	乙酉
1181	3139	806	7	12	丙戌	1241	3079	746	5	28	丙戌
1180	3140	807	8	13	丁亥	1240	3080	747	6	29	丁亥
1179	3141	808	9	14	戊子	1239	3081	748	7	30	戊子
1178	3142	809	定王	5	己丑	1238	3082	749	8	31	己丑
1177	3143	810	2	6	庚寅	1237	3083	750	9	32	庚寅
1176	3144	811	3	7	辛卯	1236	3084	751	10	33	辛卯
1175	3145	812	4	8	壬辰	1235	3085	752	11	34	壬辰
1174	3146	813	5	9	癸巳	1234	3086	753	12	17	癸巳
1173	3147	814	6	2	甲午	1233	3087	754	13	18	甲午
1172	3148	815	7	3	乙未	1232	3088	755	14	19	乙未
1171	3149	816	8	4	丙申	1231	3089	756	15	20	丙申
1170	3150	817	9	5	丁酉	1230	3090	757	16	21	丁酉
1169	3151	818	10	簡王	戊戌	1229	3091	758	17	22	戊戌
1168	3152	819	11	宣王	己亥	1228	3092	759	18	23	己亥
1167	3153	820	12	3	庚子	1227	3093	760	19	24	庚子
1166	3154	821	13	4	辛丑	1226	3094	761	20	25	辛丑
1165	3155	822	14	5	壬寅	1225	3095	762	21	26	壬寅
1164	3156	823	15	6	癸卯	1224	3096	763	22	27	癸卯
1163	3157	824	16	7	甲辰	1223	3097	764	23	28	甲辰
1162	3158	825	17	8	乙巳	1222	3098	765	惠恭	29	乙巳
1161	3159	826	興德	9	丙午	1221	3099	766	2	30	丙午
1160	3160	827	2	10	丁未	1220	3100	767	3	31	丁未
1159	3161	828	3	11	戊申	1219	3101	768	4	32	戊申
1158	3162	829	4	12	己酉	1218	3102	769	5	33	己酉
1157	3163	830	5	癸	庚戌	1217	3103	770	6	34	庚戌
1156	3164	831	6	癸	辛亥	1216	3104	771	7	35	辛亥
1155	3165	832	7	3	壬子	1215	3105	772	8	36	壬子
1154	3166	833	8	4	癸丑	1214	3106	773	9	37	癸丑
1153	3167	834	9	5	甲寅	1213	3107	774	10	38	甲寅
1152	3168	835	10	6	乙卯	1212	3108	775	11	39	乙卯
1151	3169	836	倍康	7	丙辰	1211	3109	776	12	40	丙辰
1150	3170	837	2	8	丁巳	1210	3110	777	13	41	丁巳
1149	3171	838	閔家	9	戊午	1209	3111	778	14	42	戊午
1148	3172	839	新武	10	己未	1208	3112	779	15	43	己未
1147	6173	840	文聖	11	庚申	1207	3113	780	宣德	44	庚申
1146	3174	841	3	12	辛酉	1206	3114	781	2	45	辛酉
1145	3175	842	4	13	壬戌	1205	3115	782	3	46	壬戌
1144	3176	843	5	14	癸亥	1204	3116	783	4	47	癸亥

年數	禮紀	西紀	新羅	百濟	干支	年數	禮紀	西紀	新羅	百濟	干支
1383	2937	604	真興	武王	甲子	1443	2877	544	真聖	聖王	甲子
1382	2938	605	27	6	乙丑	1442	2878	545	6	23	乙丑
1381	2939	606	28	7	丙寅	1441	2879	546	7	24	丙寅
1380	2940	607	29	8	丁卯	1440	2880	547	8	25	丁卯
1379	2941	608	30	9	戊辰	1439	2881	548	9	26	戊辰
1378	2942	609	31	10	己巳	1438	2882	549	10	27	己巳
1377	2943	610	32	11	庚午	1437	2883	550	11	28	庚午
1376	2944	611	33	12	辛未	1436	2884	551	12	29	辛未
1375	2945	612	34	13	壬申	1435	2885	552	13	30	壬申
1374	2946	613	35	14	癸酉	1434	2886	553	14	31	癸酉
1373	2947	614	36	15	甲戌	1433	2887	554	15	威德	甲戌
1372	2948	615	37	16	乙亥	1432	2888	555	16	2	乙亥
1371	2949	616	38	17	丙子	1431	2889	556	17	3	丙子
1370	2950	617	39	18	丁丑	1430	2890	557	18	4	丁丑
1369	2951	618	40	19	戊寅	1429	2891	558	19	5	戊寅
1368	2952	619	41	20	己卯	1428	2892	559	20	6	己卯
1367	2953	620	42	21	庚辰	1427	2893	560	21	7	庚辰
1366	2954	621	43	22	辛巳	1426	2894	561	22	8	辛巳
1365	2955	622	44	23	壬午	1425	2895	562	23	9	壬午
1364	2956	623	45	24	癸未	1424	2896	563	24	10	癸未
1363	2957	624	46	25	甲申	1423	2897	564	25	11	甲申
1362	2958	625	47	26	乙酉	1422	2898	565	26	12	乙酉
1361	2959	626	48	27	丙戌	1421	2899	566	27	13	丙戌
1360	2960	627	49	28	丁亥	1420	2900	567	28	14	丁亥
1359	2961	628	50	29	戊子	1419	2901	568	29	15	戊子
1358	2962	629	51	30	己丑	1418	2902	569	30	16	己丑
1357	2963	630	52	31	庚寅	1417	2903	570	31	17	庚寅
1356	2964	631	53	32	辛卯	1416	2904	571	32	18	辛卯
1355	2965	632	54	33	壬辰	1415	2905	572	33	19	壬辰
1354	2966	633	55	34	癸巳	1414	2906	573	34	20	癸巳
1353	2967	634	3	35	甲午	1413	2907	574	35	21	甲午
1352	2968	635	4	36	乙未	1412	2908	575	36	22	乙未
1351	2969	636	5	37	丙申	1411	2909	576	興智	23	丙申
1350	2970	637	6	38	丁酉	1410	2910	577	2	24	丁酉
1349	2971	638	7	39	戊戌	1409	2911	578	3	25	戊戌
1348	2972	639	8	40	己亥	1408	2912	579	興平	26	己亥
1347	2973	640	9	41	庚子	1407	2913	580	2	27	庚子
1346	2974	641	10	義	辛丑	1406	2914	581	3	28	辛丑
1345	2975	642	11	2	壬寅	1405	2915	582	4	29	壬寅
1344	2976	643	12	3	癸卯	1404	2916	583	5	30	癸卯
1343	2977	644	13	4	甲辰	1403	2917	584	6	31	甲辰
1342	2978	645	14	5	乙巳	1402	2918	585	7	32	乙巳
1341	2979	646	15	6	丙午	1401	2919	586	8	33	丙午
1340	2980	647	興德	7	丁未	1400	2920	587	9	34	丁未
1339	2981	648	2	8	戊申	1399	2921	588	10	35	戊申
1338	2982	649	3	9	己酉	1398	2922	589	11	36	己酉
1337	2983	650	4	10	庚戌	1397	2923	590	12	37	庚戌
1336	2984	651	5	11	辛亥	1396	2924	591	13	38	辛亥
1335	2985	652	6	12	壬子	1395	2925	592	14	39	壬子
1334	2986	653	7	13	癸丑	1394	2926	593	15	40	癸丑
1333	2987	654	武烈	14	甲寅	1393	2927	594	16	41	甲寅
1332	2988	655	2	15	乙卯	1392	2928	595	17	42	乙卯
1331	2989	656	3	16	丙辰	1391	2929	596	18	43	丙辰
1330	2990	657	4	17	丁巳	1390	2930	597	19	44	丁巳
1329	2991	658	5	18	戊午	1389	2931	598	20	惠王	戊午
1328	2992	659	6	19	己未	1388	2932	599	21	法王	己未
1327	2993	660	7	20	庚申	1387	2933	600	22	武王	庚申
1326	2994	661	文武	2	辛酉	1386	2934	601	23	2	辛酉
1325	2995	662	3	3	壬戌	1385	2935	602	24	3	壬戌
1324	2996	663	3	4	癸亥	1384	2936	603	25	4	癸亥
1503	2817	484	昭智	6	甲子	1502	2818	485	7	7	乙丑
1501	2819	486	8	8	丙寅	1500	2820	487	9	9	丁卯
1499	2821										

鵝洲中氏鷹巖公派世譜附錄

Table with columns: 年數, 禮紀, 西紀, 北宋, 高麗, 千支. Multiple columns of data listing years and corresponding dates in various calendars.

Table with columns: 年數, 禮紀, 西紀, 北宋, 高麗, 千支. Multiple columns of data listing years and corresponding dates in various calendars.

鶴洲申氏鷹巖公派世譜附錄

年數	禮紀	西紀	明	李朝	干支	年數	禮紀	西紀	明	李朝	干支
483	3837	1504	弘治	燕山	甲子	543	3777	1444	正統	世宗	甲子
482	3838	1505	18	11	乙丑	542	3778	1445	10	27	乙丑
481	3839	1506	中宗	2	丙寅	541	3779	1446	11	28	丙寅
480	3840	1507	武宗	3	丁卯	540	3780	1447	12	29	丁卯
479	3841	1508	3	4	戊辰	539	3781	1448	13	30	戊辰
478	3842	1509	4	5	己巳	538	3782	1449	14	31	己巳
477	3843	1510	5	6	庚午	537	3783	1450	15	32	庚午
476	3844	1511	6	7	辛未	536	3784	1451	16	33	辛未
475	3845	1512	7	8	壬申	535	3785	1452	17	34	壬申
474	3846	1513	8	9	癸酉	534	3786	1453	18	35	癸酉
473	3847	1514	9	9	甲戌	533	3787	1454	5	2	甲戌
472	3848	1515	10	10	乙亥	532	3788	1455	6	3	乙亥
471	3849	1516	11	11	丙子	531	3789	1456	7	4	丙子
470	3850	1517	12	12	丁丑	530	3790	1457	8	5	丁丑
469	3851	1518	13	13	戊寅	529	3791	1458	9	6	戊寅
468	3852	1519	14	14	己卯	528	3792	1459	10	7	己卯
467	3853	1520	15	15	庚辰	527	3793	1460	11	8	庚辰
466	3854	1521	16	16	辛巳	526	3794	1461	12	9	辛巳
465	3855	1522	世宗	17	壬午	525	3795	1462	13	10	壬午
464	3856	1523	嘉靖	18	癸未	524	3796	1463	14	11	癸未
463	3857	1524	3	19	甲申	523	3797	1464	8	9	甲申
462	3858	1525	4	20	乙酉	522	3798	1465	9	10	乙酉
461	3859	1526	5	21	丙戌	521	3799	1466	10	11	丙戌
460	3860	1527	6	22	丁亥	520	3800	1467	11	12	丁亥
459	3861	1528	7	23	戊子	519	3801	1468	12	13	戊子
458	3862	1529	8	24	己丑	518	3802	1469	13	14	己丑
457	3863	1530	9	25	庚寅	517	3803	1470	14	15	庚寅
456	3864	1531	10	26	辛卯	516	3804	1471	15	16	辛卯
455	3865	1532	11	27	壬辰	515	3805	1472	16	17	壬辰
454	3866	1533	12	28	癸巳	514	3806	1473	17	18	癸巳
453	3867	1534	13	29	甲午	513	3807	1474	10	5	甲午
452	3868	1535	14	30	乙未	512	3808	1475	11	6	乙未
451	3869	1536	15	31	丙申	511	3809	1476	12	7	丙申
450	3870	1537	16	32	丁酉	510	3810	1477	13	8	丁酉
449	3871	1538	17	33	戊戌	509	3811	1478	14	9	戊戌
448	3872	1539	18	34	己亥	508	3812	1479	15	10	己亥
447	3873	1540	19	35	庚子	507	3813	1480	16	11	庚子
446	3874	1541	20	36	辛丑	506	3814	1481	17	12	辛丑
445	3875	1542	21	37	壬寅	505	3815	1482	18	13	壬寅
444	3876	1543	22	38	癸卯	504	3816	1483	19	14	癸卯
443	3877	1544	23	39	甲辰	503	3817	1484	20	15	甲辰
442	3878	1545	24	40	乙巳	502	3818	1485	21	16	乙巳
441	3879	1546	明宗	25	丙午	501	3819	1486	22	17	丙午
440	3880	1547	26	2	丁未	500	3820	1487	23	18	丁未
439	3881	1548	27	3	戊申	499	3821	1488	19	4	戊申
438	3882	1549	28	4	己酉	498	3822	1489	20	5	己酉
437	3883	1550	29	5	庚戌	497	3823	1490	3	21	庚戌
436	3884	1551	30	6	辛亥	496	3824	1491	4	22	辛亥
435	3885	1552	31	7	壬子	495	3825	1492	5	23	壬子
434	3886	1553	32	8	癸丑	494	3826	1493	6	24	癸丑
433	3887	1554	33	9	甲寅	493	3827	1494	7	25	甲寅
432	3888	1555	34	10	乙卯	492	3828	1495	8	26	乙卯
431	3889	1556	35	11	丙辰	491	3829	1496	9	27	丙辰
430	3890	1557	36	12	丁巳	490	3830	1497	10	28	丁巳
429	3891	1558	37	13	戊午	489	3831	1498	11	29	戊午
428	3892	1559	38	14	己未	488	3832	1499	12	30	己未
427	3893	1560	39	15	庚申	487	3833	1500	13	1	庚申
426	3894	1561	40	16	辛酉	486	3834	1501	14	2	辛酉
425	3895	1562	41	17	壬戌	485	3835	1502	15	3	壬戌
424	3896	1563	42	18	癸亥	484	3836	1503	16	4	癸亥

年數	禮紀	西紀	宋元	高麗	干支	年數	禮紀	西紀	宋元	高麗	干支
663	3657	1324	肅宗	肅宗	甲子	603	3717	1384	洪武	禮	甲子
662	3658	1325	肅宗	肅宗	乙丑	602	3718	1385	11	11	乙丑
661	3659	1326	3	12	丙寅	601	3719	1386	19	12	丙寅
660	3660	1327	4	13	丁卯	600	3720	1387	20	13	丁卯
659	3661	1328	4	14	戊辰	599	3721	1388	21	14	戊辰
658	3662	1329	明宗	15	己巳	598	3722	1389	22	15	己巳
657	3663	1330	肅宗	16	庚午	597	3723	1390	23	16	庚午
656	3664	1331	肅宗	17	辛未	596	3724	1391	24	17	辛未
655	3665	1332	肅宗	18	壬申	595	3725	1392	25	18	壬申
654	3666	1333	肅宗	19	癸酉	594	3726	1393	26	19	癸酉
653	3667	1334	元宗	20	甲戌	593	3727	1394	27	3	甲戌
652	3668	1335	元宗	21	乙亥	592	3728	1395	28	4	乙亥
651	3669	1336	2	22	丙子	591	3729	1396	29	5	丙子
650	3670	1337	3	23	丁丑	590	3730	1397	30	6	丁丑
649	3671	1338	4	24	戊寅	589	3731	1398	31	7	戊寅
648	3672	1339	5	25	己卯	588	3732	1399	32	8	己卯
647	3673	1340	6	26	庚辰	587	3733	1400	33	9	庚辰
646	3674	1341	7	27	辛巳	586	3734	1401	34	10	辛巳
645	3675	1342	8	28	壬午	585	3735	1402	35	11	壬午
644	3676	1343	9	29	癸未	584	3736	1403	36	12	癸未
643	3677	1344	10	30	甲申	583	3737	1404	37	13	甲申
642	3678	1345	11	31	乙酉	582	3738	1405	38	14	乙酉
641	3679	1346	12	32	丙戌	581	3739	1406	39	15	丙戌
640	3680	1347	13	33	丁亥	580	3740	1407	40	16	丁亥
639	3681	1348	14	34	戊子	579	3741	1408	41	17	戊子
638	3682	1349	15	35	己丑	578	3742	1409	42	18	己丑
637	3683	1350	16	36	庚寅	577	3743	1410	43	19	庚寅
636	3684	1351	17	37	辛卯	576	3744	1411	44	20	辛卯
635	3685	1352	18	38	壬辰	575	3745	1412	45	21	壬辰
634	3686	1353	19	39	癸巳	574	3746	1413	46	22	癸巳
633	3687	1354	20	40	甲午	573	3747	1414	12	14	甲午
632	3688	1355	21	41	乙未	572	3748	1415	13	15	乙未
631	3689	1356	22	42	丙申	571	3749	1416	14	16	丙申
630	3690	1357	23	43	丁酉	570	3750	1417	15	17	丁酉
629	3691	1358	24	44	戊戌	569	3751	1418	16	18	戊戌
628	3692	1359	25	45	己亥	568	3752	1419	17	19	己亥
627	3693	1360	26	46	庚子	567	3753	1420	18	20	庚子
626	3694	1361	27	47	辛丑	566	3754	1421	19	21	辛丑
625	3695	1362	28	48	壬寅	565	3755	1422	20	22	壬寅
624	3696	1363	29	49	癸卯	564	3756	1423	21	23	癸卯
623	3697	1364	30	50	甲辰	563	3757	1424	22	24	甲辰
622	3698	1365	31	51	乙巳	562	3758	1425	23	25	乙巳
621	3699	1366	32	52	丙午	561	3759	1426	24	26	丙午
620	3700	1367	33	53	丁未	560	3760	1427	25	27	丁未
619	3701	1368	34	54	戊申	559	3761	1428	26	28	戊申
618	3702	1369	35	55	己酉	558	3762	1429	27	29	己酉
617	3703	1370	36	56	庚戌	557	3763	1430	28	30	庚戌
616	3704	1371	37	57	辛亥	556	3764	1431	29	1	辛亥
615	3705	1372	38	58	壬子	555	3765	1432	30	2	壬子
614	3706	1373	39	59	癸丑	554	3766	1433	1	3	癸丑
613	3807	1374	40	60	甲寅	553	3767	1434	2	4	甲寅
612	3708	1375	41	61	乙卯	552	3768	1435	3	5	乙卯
611	3709	1376	42	62	丙辰	551	3769	1436	4	6	丙辰
610	3710	1377	43	63	丁巳	550	3770	1437	5	7	丁巳
609	3711	1378	44	64	戊午	549	3771	1438	6	8	戊午
608	3712	1379	45	65	己未	548	3772	1439	7	9	己未
607	3713	1380	46	66	庚申	547	3773	1440	8	10	庚申
606	3714	1381	47	67	辛酉	546	3774	1441	9	11	辛酉
605	3715	1382	48	68	壬戌	545	3775	1442	10	12	壬戌
604	3716	1383	49	69	癸亥	544	3776	1443	11	13	癸亥

783 3537 1204 泰宗 神宗 甲子
 782 3538 1205 泰宗 神宗 乙丑
 781 3539 1206 泰宗 神宗 丙寅
 780 3540 1207 泰宗 神宗 丁卯

Table with 12 columns: 年數, 禮紀, 西紀, 清, 李朝, 干支. It contains two main sections of data, each with 12 columns. The first section covers years from 123 to 114, and the second section covers years from 103 to 84. Each row lists a year, a lunar calendar date, a Western calendar date, a Qing dynasty date, a Joseon dynasty date, and a Chinese zodiac sign.

Table with 12 columns: 年數, 禮紀, 西紀, 清, 李朝, 干支. It contains two main sections of data, each with 12 columns. The first section covers years from 303 to 294, and the second section covers years from 283 to 244. Each row lists a year, a lunar calendar date, a Western calendar date, a Qing dynasty date, a Joseon dynasty date, and a Chinese zodiac sign.

紀元早見表

年數	禮紀	西紀	中	大韓民國	干支	年數	禮紀	西紀	中	大韓民國	干支
34317	1984	73	37	甲子	子	634257	1924	13	13	庚辰	甲子
24318	1985	74	38	乙丑	丑	624258	1925	14	16	辛巳	乙丑
14319	1986	75	39	丙寅	寅	614259	1926	15	17	壬午	丙寅
4320	1987	76	40	丁卯	卯	604260	1927	16	18	癸未	丁卯
4321	1988	77	41	戊辰	辰	594261	1928	17	19	甲申	戊辰
4322	1989	78	42	己巳	巳	584262	1929	18	20	乙未	己巳
4323	1990	79	43	庚午	午	574263	1930	19	21	丙申	庚午
4324	1991	80	44	辛未	未	564264	1931	20	22	丁酉	辛未
4325	1992	81	45	壬申	申	554265	1932	21	23	癸酉	壬申
4326	1993	82	46	癸酉	酉	544266	1933	22	24	甲戌	癸酉
4327	1994	83	47	甲戌	戌	534267	1934	23	25	乙亥	甲戌
4328	1995	84	48	乙亥	亥	524268	1935	24	26	丙子	乙亥
4329	1996	85	49	丙子	子	514269	1936	25	27	丁丑	丙子
4330	1997	86	50	丁丑	丑	504270	1937	26	28	戊寅	丁丑
4331	1998	87	51	戊寅	寅	494271	1938	27	29	己卯	戊寅
4332	1999	88	52	己卯	卯	484272	1939	28	30	庚辰	己卯
4333	2000	89	53	庚辰	辰	474273	1940	29	31	辛巳	庚辰
4334	2001	90	54	辛巳	巳	464274	1941	30	32	壬午	辛巳
4335	2002	91	55	壬午	午	454275	1942	31	33	癸未	壬午
4336	2003	92	56	癸未	未	444276	1943	32	34	甲申	癸未
4337	2004	93	57	甲申	申	434277	1944	33	35	乙酉	甲申
4338	2005	94	58	乙酉	酉	424278	1945	34	36	丙戌	乙酉
4339	2006	95	59	丙戌	戌	414279	1946	35	37	丁亥	丙戌
4340	2007	96	60	丁亥	亥	404280	1947	36	38	戊子	丁亥
4341	2008	97	61	戊子	子	394281	1948	37	39	己丑	戊子
4342	2009	98	62	己丑	丑	384282	1949	38	40	庚寅	己丑
4343	2010	99	63	庚寅	寅	374283	1950	39	41	辛卯	庚寅
4344	2011	100	64	辛卯	卯	364284	1951	40	42	壬辰	辛卯
4345	2012	101	65	壬辰	辰	354285	1952	41	43	癸巳	壬辰
4346	2013	102	66	癸巳	巳	344286	1953	42	44	甲午	癸巳
4347	2014	103	67	甲午	午	334287	1954	43	45	乙未	甲午
4348	2015	104	68	乙未	未	324288	1955	44	46	丙申	乙未
4349	2016	105	69	丙申	申	314289	1956	45	47	丁酉	丙申
4350	2017	106	70	丁酉	酉	304290	1957	46	48	戊戌	丁酉
4351	2018	107	71	戊戌	戌	294291	1958	47	49	己亥	戊戌
4352	2019	108	72	己亥	亥	284292	1959	48	50	庚子	己亥
4353	2020	109	73	庚子	子	274293	1960	49	51	辛丑	庚子
4354	2021	110	74	辛丑	丑	264294	1961	50	52	壬寅	辛丑
4355	2022	111	75	壬寅	寅	254295	1962	51	53	癸卯	壬寅
4356	2023	112	76	癸卯	卯	244296	1963	52	54	甲辰	癸卯
4357	2024	113	77	甲辰	辰	234297	1964	53	55	乙巳	甲辰
4358	2025	114	78	乙巳	巳	224298	1965	54	56	丙午	乙巳
4359	2026	115	79	丙午	午	214299	1966	55	57	丁未	丙午
4360	2027	116	80	丁未	未	204300	1967	56	58	戊申	丁未
4361	2028	117	81	戊申	申	194301	1968	57	59	己酉	戊申
4362	2029	118	82	己酉	酉	184302	1969	58	60	庚戌	己酉
4363	2030	119	83	庚戌	戌	174303	1970	59	61	辛亥	庚戌
4364	2031	120	84	辛亥	亥	164304	1971	60	62	壬子	辛亥
4365	2032	121	85	壬子	子	154305	1972	61	63	癸丑	壬子
4366	2033	122	86	癸丑	丑	144306	1973	62	64	甲寅	癸丑
4367	2034	123	87	甲寅	寅	134307	1974	63	65	乙卯	甲寅
4368	2035	124	88	乙卯	卯	124308	1975	64	66	丙辰	乙卯
4369	2036	125	89	丙辰	辰	114309	1976	65	67	丁巳	丙辰
4370	2037	126	90	丁巳	巳	104310	1977	66	68	戊午	丁巳
4371	2038	127	91	戊午	午	94311	1978	67	69	己未	戊午
4372	2039	128	92	己未	未	84312	1979	68	70	庚申	己未
4373	2040	129	93	庚申	申	74313	1980	69	71	辛酉	庚申
4374	2041	130	94	辛酉	酉	64314	1981	70	72	壬戌	辛酉
4375	2042	131	95	壬戌	戌	54315	1982	71	73	癸亥	壬戌
4376	2043	132	96	癸亥	亥	44316	1983	72	74	甲子	癸亥

우리의 文獻에는 中國 및 其他 年號가 많이 쓰여 있다 이것을 우리 年號로 쓰는 西紀 禮紀 年號로 換算하여 보기 爲 하여 다음에 그 早見表를 붙인다

禮君 紀元=西紀+ 2333

佛敎 " = " + 1027

孔子 " = " + 551

回敎 " = " + 621

日本 " = " + 660

天道教 " = " - 1857

堯帝 紀元=西紀+ 2357

泰始皇 " = " + 246

漢高祖 " = " + 206

唐 " = " - 617

宋 " = " - 959

新羅 紀元=西紀+ 57

高句麗 " = " + 37

百濟 " = " + 18

高麗 " = " - 917

朝鮮 " = " - 1391

元 紀元=西紀- 1259

明 " = " - 1367

清 " = " - 1617

中華民國 " = " - 1911

西紀一九八五年 乙丑 十二月 十日 發行
西紀一九八五年 乙丑 十二月 十五日 印刷

發行處 鵝洲申氏鷹巖公派世譜編纂委員會
義城郡鳳陽面花田洞

發行人 申 東 潤
編輯人 申 榮 璧
印刷人 申 基 勳

大田市東區元洞九二番地
農經出版社

電話 二九二二番
二九二二番
二九二二番

(出版登錄番號第卅一號)